

아국의 OECD/DAC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3국의 가입시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

장 현 식

2000.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연구 2000-5-64

我國의 OECD/DAC加入時 期待效果 및 向後 推進方向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加入時 效果分析을 中心으로 -

장 현 식

2000.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序 言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 이후 OECD의 23개 전문위원회중 하나인 DAC(개발원조위원회)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DAC회의에 OECD회원국의 자격으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DAC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 지원과 효과적인 공여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개도국의 빈곤극복에 초점을 두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 문제는 다른 OECD회원국들이 가입여부에 대해 많이 문의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동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ODA규모가 3억불('99년 기준)에 도달한 국가로써 개발협력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90년이후 DAC를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가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비교분석적인 측면에서 아국의 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DAC 가입절차, 가입시 준수원칙 및 각종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입후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동료심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OECD/DAC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보고서 작성자 개인의 견해이며, 협력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0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권 형 기

목 차

I. 검토배경	1
II. OECD/DAC의 성격 및 기능	3
1. DAC개요	3
2. DAC 주요이슈	8
3. DAC 향후 주요 논의방향	10
III. OECD/DAC 가입 조건	12
1.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	12
2. ODA규모	18
3. ODA정책 공개	19
4. ODA관련 각종 통계수치 제출	19
5. 동료심사(Peer Review)	20
IV.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DAC가입 효과 분석	22
1. 스페인	22
2. 포르투갈	25
3. 그리스	28
V.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의 DAC가입 적정성 검토	33
1.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 가입시와 아국('99)간의 양적 비교	33

2. 스페인, 포르투갈 및 한국의 ODA 질적인 측면 비교	34
3.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가입시 준비 상태	36
VI. 아국의 DAC가입에 따른 효과분석	40
1. 긍정적효과	40
2. 부담요인	43
VII. 향후 추진방향	45
1. ODA규모 중·장기 확대방안 수립	45
2. DAC가입 준비반 운영	46
3. DAC의 ODA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 Follow-up 강화	49
4. 국제협력 전문가모임 활성화	50
VIII. 결론	52
참고문헌	56

<부록>

- OECD/DAC 가입 제조건(Aid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 61
- OECD/DAC 제원칙 및 가이드라인(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63
 - 대수원국 원조조정 ('86년 제정) 63
 - 프로젝트 평가 ('88년 제정) 70
 - 기술협력 ('91년 제정) 95
 - 프로그램원조 ('91년 제정) 119
 - 여성개발 ('89년 제정) 148
 - 환경영향평가 ('91년 제정) 163
 - 조달 ('86년 제정) 179
 - 조건부원조 ('92년 제정) 189
 - 원조평가 ('91년 제정) 196
-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208
- DAC 동료심사 가이드라인
(DAC Guideline on the Peer Review) 228

<표 목차>

<표 1> 스페인: 가입전후의 경제지표	25
<표 2> 포르투갈: 가입전후의 경제지표	28
<표 3> 그리스: 가입전의 경제지표	32
<표 4>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3국의 가입시 각종 지표비교	34
<표 5>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증여율 비교	35
<표 6>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타이드원조 비교 (양자간 원조)	36
<표 7>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가입조건 충족여부 및 의회의 역할	39
<표 8>우리나라의 ODA 증액방안	45

I. 검토 배경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흥원조공여국의 하나로써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국제개발 협력영역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각종 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협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개발협력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기관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 및 규칙을 제정하는 조직으로는 OECD/DAC(개발협력 위원회)¹⁾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 이후 OECD의 23개 전문위원회중 하나인 DAC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DAC회의에 OECD회원국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대한 입장표명은 다른 OECD회원국에서 우리의 DAC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 증대 및 국회에서의 DAC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요구와 같은 측면 뿐만아니라 ODA규모가 3억불('99년 기준)에 도달한 국가로써 개발협력의 효율성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필요

1) DAC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창립국), 일본, 네델란드(이상 1960), 노르웨이(1962), 덴마크(1963), 오스트리아, 스웨덴(이상 1965), 호주(1966), 스위스(1968),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아일랜드(1985), 스페인(1991), 포르투갈(1991), 룩셈부르크(1992), 그리스(1999) 및 EC등 22개국, 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 보고서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대분할 수 있는데, 먼저, '90년 이후 DAC에 가입한 3국(스페인, 포르투갈 '91년 가입, 그리스 '99년 가입)을 선택하여 동 국가들의 DAC 가입시 GNP, ODA 규모등을 포함한 관련 통계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의 DAC가입에 필요한 경제적 역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한 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가입 후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분석코자 하며, 또한 최근에 DAC에 가입한 그리스('99년 가입)의 DAC 가입배경과 가입준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보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는 우리의 DAC 가입을 대비하여 DAC 가입절차를 살펴보고, 가입시 준수원칙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입후 3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하는 동료심사(Peer Review) 절차등에 관한 소개를 통해 가입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코자 한다.

II. 개발원조위원회(DAC) 성격 및 기능

1. DAC 개요

가. 조직개요

DAC는 1961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으로는 22개국 및 EC 이며, 한국, 멕시코, 아이슬랜드 등 7개국이 비DAC OECD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의장은 Mr. J. C. Faure (프랑스) 이며, 부의장은 Mr. L. Bage(스웨덴), Mr. H. Domichi(일본), 그리고 Mr. K. Kammere(미국) 3인이 맡고있다.

나. 성격 및 특징

DAC는 OECD²⁾내에서 저개발국과의 협력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전세계의 지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DAC의 특징으로는 OECD 여타 위원회보다 회의개최 빈도수가 많고, 본 회의만 연 15회 이상을 개최하고 있다.

DAC는 회원국 및 이사회에 해당내용을 직접 권고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 활동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발간

2) OECD는 규약 제1조에서 OECD의 3대목적중의 하나로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ODA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다. 기 능

DAC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이며 상호 조화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국제사회가 저개발국들을 어떻게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참여케 하며 또한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들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셋째,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조프로그램의 DAC지침과의 부합 여부, 원조정책관리상태, 원조규모, 여타 개발정책과의 공조(coherence)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개발정책관련, 회원국 상호간의 경험교환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consensus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개발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원조흐름에 대한 통계보고서 발간 등을 발간하고 있다.

라. 위원회 조직

1) 산하작업반 활동체계

DAC 산하에는 다음의 작업반이 활동하면서 개발정책 관련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동 작업반의 mandate는 매 3~4년 주기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의개최는 각 작업반별로 상이하나 보통 연 1~2회 개최되고 있다.

가) 통계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Statistics)

- 창 설 : 68년
- 수혜국에 대한 공공 및 민간자본흐름과 부채에 대한 통계의 전파·수립
- DAC 산하회의에 통계정보 수립

나) 재정측면에 관한 작업반회의

(WP on Financial Aspects)

- 창 설 : 75년
- 수혜국에 대한 untying aid 제공문제, 개발재원 동원, 수혜국 금융체제 등 논의

다) 원조평가작업반회의(WP on Aid Evaluation)

- 창 설 : 82년
- 원조공여국 프로그램 평가·빈곤감소를 위한 개발원조 평가 시행

라) 남녀평등에 관한 작업반회의(WP on Gender Equality)

- 창 설 : 84년
- 개발정책 및 과정에 있어서 남녀평등요인 고려
- DAC 회원국의 남녀평등에 대한 개발관행의 강화

마) 개발협력 및 환경에 관한 작업반회의(WP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vironment)

- 창 설 : 89년
- 환경친화적 지속개발을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모색

바) 분쟁·평화 및 개발협력에 관한 Task Force(Informal Task Force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창 설 : 95년
- 분쟁·평화 및 개발협력간 연계에 대한 경험 습득
- 분쟁위기가국가내 평화정착을 위한 Good Governance 도모

사) Good Governance에 관한 Informal Network

- 창 설 : 96년
- 수혜국내 민주주의 정착, 부패방지 및 제도개선 등 Good Governance 확립방안 논의

아) 빈곤감소에 관한 Informal Network

- 창 설 : 98년
- DAC 회원국들간 효과적인 빈곤감소정책의 집행 및 경험 공유

2) 개발협력국(DCD): DAC사무국

DAC는 산하에 사무국(DCD)을 두고 있으며, DCD는 국장실, DAC의장실, 4개과 및 출판/행정자료 담당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 원조정책 심사과 (PRPM: Peer Review and Policy Monitoring): 회원국 및 Non-DAC국가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및 원조심사에 관한 사항

나) 개발협력 전략관리과 (SMDC: Strategic Manage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범세계적 이슈, 기술협력, 평가 및 원조수행체제 개선등 광범위한 원조정책 관련 사항

다) 재원동원 및 민간부문 개발과 (RPMS: Resource Mobilization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조건부 원조, 수출신용, 차관, 직접투자등을 포함한 모든 재원의 흐름에 관한 사항

라) 통계관리과 (RSD:Reporting Systems): 전반적인 원조 통계관련 사항

2. DAC의 주요 논의이슈

DAC는 2000년을 맞이하여 '96년에 발표한 "21세기 전략"³⁾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빈곤완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각 회원국들에게 이를 권고하고 있다.

DAC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빈곤완화에 있어서 개발협력의 역할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World Bank Report 2000"을 참고로 하여 개도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 3) 1996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인 원조지침으로, ①향후 20년 동안 경제적 복지, 사회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부문에서의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②경제적 복지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극빈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③사회적 개발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나라에 초등교육 보급, ㉡ 2005년까지 초등·중등교육의 남녀격차를 해소, ㉢2015년까지 영아와 5세 미만의 유아사망을 2/3 감축 및 임산부 사망률 3/4감축, ㉣2015년까지 모든 개인에 성과 생식에 관한 보건서비스(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제공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모든 국가가 자체 환경보존 전략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2015년까지 현재의 환경자원의 감소경향을 역전시킨다는 3개 부문에서의 개발목표 제시 외에도 개발은 개도국 국민 및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갖는다는 점과 개발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와 함께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 DAC는 UNDP와 World Bank와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전략"에 명시한 3가지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빈곤완화에 대한 합동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케 할 예정이다.

다. 또한 공여국간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트너쉽에 관한 Handbook을 만들고 있다.

라. DAC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국내의 무역, 투자 및 개발간의 정책일관성 고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OECD의 무역위원회와 합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칙화하고자 한다.

마. DAC는 최빈국의 원조에 대한 부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언타잉원조(Untying Ai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를 추진하고 있다.

바. DAC는 또한 원조정책에 대한 일관성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동료간의 원조정책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DAC회원간의 원조체제에 대한 비교분석관련책을 출판하였으며, 원조통계에 대한 절차를 단순화하기위해 새로운 보고체제를 도입하였다.

3. DAC의 향후 주요 논의방향

DAC는 위에 언급한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세부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DAC는 2개의 새로운 정책지침서, 즉 "빈곤완화에 대한 개발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지침서가 수립될 예정이며, 또한 "민간기업발전 및 무역 능력개발을 위한 적절한 실시"관련 지침서가 더욱 최신화되며,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관련지침서를 수정.보완예정이다.

나. DAC은 "21세기 전략"에 포함된 2015년까지의 개발관련 목표달성치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하며, 또한 "Good Governance"에 대한 측정치도 수립할 예정이다.

다. DAC는 또한 파트너십 전략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이 동료간의 원조정책심사를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라. DAC는 원조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보고서를 2000년에 완결할 예정이며, 동 이슈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다.

마. DAC는 최빈국에 대한 untied 원조 제공 관련 회원국간에 의견일치가 있을 경우 200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바. DAC는 개도국이 환경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OECD의 환경위원회와 협력하여 OECD의 "지속적개발"관련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사. DAC는 UN에서 개최예정인 "2001년의 개발재원"관련 토의준비를 위해 개발재원에 관한 중·장기시나리오 및 정책/제도구축관련 사항을 수립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 DAC 회원국 원조공여(ODA)현황

㉓ 원조규모 : 560억불('99)

- 92년 608억불을 기점으로 다소 하향세

㉔ GNP 대비 ODA 평균 : 0.24%('99)

- 1970년, 제2차 UN개발 10개년회의시 선진국의 GNP 대비 ODA 목표비율을 0.7%로 설정

- 주요국 ODA 비율

- 덴마크(1.00%), 노르웨이(0.91%), 네덜란드(0.79%), 스웨덴(0.70%)
- 미국(0.1%), 일본(0.35%), 프랑스(0.38%), 독일(0.26%)

III. DAC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권고적 의무)

1.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

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DAC원칙과 권고안 준수

현재 DAC에서는 여러 개의 원칙 및 권고안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원조정책 효율성제고에 힘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칙 및 권고안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종 국제회의나 G-8를 포함한 정상회의등에서 거론된 의제중에서 개발협력에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DAC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의제가 채택되면 DAC는 각종 작업반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DAC의 고위급회의나 혹은 준고위급회의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DAC는 각 회원국의 원조실시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원조 표준화를 통해 수원국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DAC은 '92년에 예전에 제정한 각종 지침 및 권고를 중심으로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로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 대수원국 원조조정 ('86년 제정),

- 프로젝트 평가 ('88년 제정),
- 기술협력 ('91년 제정),
- 프로그램 원조 ('91년 제정),
- 여성개발 ('89년 제정),
- 환경영향평가 ('91년 제정),
- 조달 ('86년 제정),
- 조건부원조 ('92년 제정),
- 원조평가 ('91년 제정)

DAC은 또한 '93년에 “참여적개발과 올바른 통치”에 관한 정향(Orientation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을 채택하였으며, '94년에 “민간분야개발에 대한 지원”관련 정향을 추진하였고, '95년에 “빈곤, 평화 및 개발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98년에 “여성개발”관련 원칙을 개정하였고, 현재 “빈곤완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수립하여 2001년에 DAC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DAC는 각종 원칙에 대한 회원국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DAC는 동료심사 후 발행하는 보고서에 회원국들의 준수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나. 타이드 원조 및 혼합신용에 관한 각종 권고안 및 법적 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재정적인 약속 준수

DAC는 선진국들이 타이드원조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 왜곡, 무분별한 자본재의 과당수출 경쟁을 야기하자 일련의 권고를 통해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추구해 왔다.

특히 1980년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타이드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87년 "혼합 신용과 타이드, 부분 언타이드 ODA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92년에 "공적수출 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여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이드 원조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득국이상의 국가에 대한 타이드원조 전면금지

동 협약서의 34조는 '96년 기준 1인당 GNP 3,115 US\$ 이상 국가에 대한 타이드원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 국가에 대한 원조제공의 유인요소를 약화시켜, 공여국의 원조가 저소득 개도국으로 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 협약서에는 동구권 14개국(Soft-ban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분류에 관계없이 무상원조 및 식량원조나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제외하고는 타이드원조를 최대한 자제키로

합의하였다.

※ Soft-ban 대상국 및 설정 취지

1. 대상국가

Belarus, Estonia, Latvia, Lithuania, the Russian Federation, Ukraine, Slovenia, Bulgaria,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Poland, Romania

2. 설정 취지

- 주로 동구권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비율, 기술수준 및 국민의 구매력이 높은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에 막대한 원조지원이 있을 경우 다른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가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음.
- 타이드원조 지원을 허용할 경우 각국이 수출경쟁 격화로 무역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Soft-ban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ODA통계에서 제외되므로 GNP대비 ODA비율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부담 가중을 방지

자료: 외교통상부(2000),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p.32

2) 상업성 있는 사업(Commercially Viable)에 대한 타이드원조 금지(35조)

동 협약서에는 당해 사업의 소요금액을 시장금리 또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로 차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은 상업성이 인정되어 타이드 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사전통보된 사업중,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위한 요청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서에는 단 상업성이 인정되더라도 양허성 수준이 80%이상인 원조 또는 SDR 2백만(2.8백만 USD)미만인 원조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경우에는 타이드원조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3) 양허성 수준 유지 의무(40조)

동 협약서에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개도국은 35% 이상의 양허성 수준이 유지됨을 의무화하고 있다.

※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C.L)

양허성 수준은 OECD에 의한 공적지원을 위한 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 있어 수출 신용의 질(양허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기준으로 ODA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랜트 엘리먼트(Grant Element: G.E)와 유사한 개념임.

G.E는 차관액과 10%의 할인율로 나눈 차관원리금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 그 비율을 구하는 것으로 원조공여조건의 완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C.L은 같은 산출식에서 10%대신 원조공여국의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를 할인율로 사용함.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는 매년 1월 변경되고 전년도 8월부터 1월까지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산출되므로 원조공여국의 시중금리수준에 상응하는 양허성이 산출되게 되며 OECD의 수출신용가이드라인은 C.L을 기준으로 타이드원조를 규제하고 있음

4) 사전/사후 통보 의무 (55조, 56조)

또한 동 협약서에는 다음의 경우 지원방침 결정 30일(영업일) 전에 모든 OECD 가이드라인 회원국에 통보해야하지만, 단 지원금액이 SDR 50백만(US\$ 70백만) 초과시에는 상업성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 사전통보: 지원여부 결정 30일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보
- 사후통보: 지원여부 결정후 2일내에 모든 회원국에 통보
- 대상사업의 요건

Tied 원조	SDR 2백만(28백만 USD)이상	SDR 2백만(28백만 USD)이하
양허율 80% 이상	사후통보	-
양허율 80% 미만	사전통보	-
양허율 50% 이상	-	사후통보
양허율 50% 미만	-	사전통보

자료: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2000, 외교통상부), p33참조

동 협약서에는 사전통보 의무 대상 원조지원은 사전협의를 의무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전통보를 받은 회원국은 당해 원조지원 대상사업이 상업성이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 당해사업의 상업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원조를 공여할 회원국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원조공여예정 회원국은 사전협의를 응해야 한다.

2. ODA규모

개도국에 대한 원조제공은 OECD 협정문(제 1조)상 3대 목적의 하나로서 DAC의 ODA 공여권고 수준은 GNP의 0.7%이지만, 이러한 원조의무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⁴⁾

DAC에 가입하기 위한 Memoir에는 가입하는데 있어서 최소 수준의 원조규모를 정하는 어떤 명확한 원칙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조건으로 ODA규모가 GNP대비 0.2%이상이거나, 혹은 향후 자국의 원조규모를 DAC의 평균 비율 정도로 확대하기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공표여부를 들고 있다.

최근에 DAC을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DAC가 입당시 GNP대비 ODA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ODA 대 GNP 비율 0.7% 목표는 1964년 제1차 UNCTAD에서 자금의 흐름 총액 대 국민소득 비율 1% 권고를 발단으로 하여 1969년 피어슨보고서 ODA 대 GNP 비율 0.7% 권고에 따라 1970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 후 1980년 UN 총회에서 “ODA의 GNP비율 0.7%를 ‘85년까지, 늦어도 ‘80년대 후반중에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 후 대 GNP 비율 1% 목표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원조의 국제목표로서는 이밖에도 1978년 DAC 조건권고중의 ‘총 grant element 86% 이상’, 1981년 LLDC UN 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몇 년내에 LLDC에 대한 ODA의 대 GNP 비율 0.15% 이상, 또는 배증 이상’ 등이 있다.

- 스페인 ('91년 가입: 0.24%)
- 포르투갈 ('91년 가입: 0.30%)
- 그리스 ('99년 가입: 0.15%, 5개년 원조규모 확대계획 수립)

3. ODA정책 공개

DAC는 일년에 OECD의 23위원회중에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DAC에 가입하게 되면 DAC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원조관련 이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또한 매년마다 자국의 원조정책, 조직 및 특기사항을 포함한 비망록(Memorandum)을 DAC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데, DAC사무국은 이를 통해 관련 회원국의 원조정책 기조 및 최우선 협력대상국, 우선순위 분야등을 알게된다.

4. ODA관련 각종 통계수치 제출

DAC는 매년 각국의 ODA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원조에 관한 모든 통계치를 비망록과 함께 DAC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상업성여부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해야한다.

5. 동료심사(Peer Review)

가. 심사목표

DAC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은 자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동료심사(Peer Review)를 3년에 한번씩 받게된다. 이를 통해 DAC회원국은 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 및 이의 효율성, 사업 실시에 있어서 투입, 산출, 그리고 효과에 걸쳐한 심사를 받게 된다.

DAC회원국들은 동료심사를 통해 자국의 ODA에 대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원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권유받게 되며, 다른 회원국과의 원조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원조실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 심사방법

심사방법을 살펴보면 심사팀⁵⁾은 먼저 피심사국이 DAC가 설정한 광범위한 전략과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이 실제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또한 피심사국의 원조정책중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5) 심사팀은 DAC사무국과 다른 회원국 2국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8명 정도이다.

또한 심사팀은 피심사국의 대개도국 정책의 일관성 및 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여 이를 전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다. 심사기준

동료심사의 심사기준⁶⁾을 살펴보면 다음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 수원국의 능력배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제
- 원조조정, 개발전략과 국별원조계획실시
- 원조능률, 효과 및 결과
- 원조관리분야
-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정책의 적합성과 일치성
- 여론, 정보 그리고 원조에 관한 국민교육

6) 심사기준은 DAC의 3대 성명서, 즉 '89년에 발표한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95년에 발표한 "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 그리고 '96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Shaping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IV.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DAC가입 배경 및 가입 효과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DAC의 조직 및 역할, 그리고 DAC에 가입하기 위한 제조건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DAC가입의 적합성 및 적시성을 알기위해, '90년 이후에 DAC에 가입한 3국(스페인, 포르투갈 '91년 가입, 그리스 '99년 가입)을 선택하여 동 국가들의 가입시 GNP, ODA 규모등을 포함한 관련 통계치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가입 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정립코자 한다.

1. 스페인

가. 가입배경

스페인은 '83년까지 DAC의 원조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85년에 라틴아메리카지역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무국(SECIFI)를 설립하고 최초로 원조사업을 실시하였다. 스페인은 '86년에 EC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에 국제협력 부처간 위원회(CICI)를 설립하였고, '87년에 개발협력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92년까지 ODA규모를 GNP대비 0.36%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스페인정부는 '88년에 무상 및 기술원조를 위한 원조기관

AECI를 설립하여 NGO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91년에 원조 공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DAC에 가입하였으며, '92년에 스페인 의회는 '95년까지 GNP대비 0.35%, 2000년까지 0.7%에 ODA규모가 도달될 수 있는 시나리오(timeframe) 수립을 명하였다.

나. DAC가입 효과분석

스페인의 DAC가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DAC에서 채택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DAC의 "21세기 전략"에 입각하여 빈곤완화를 원조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Environment, WID, 교육, 제도구축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DAC의 스페인에 대한 가입후 최초의 동료심사(Peer Review)는 '94년에 개최되었는데, 동 심사시 DAC는 스페인에게 무상 원조실시 기관인 AECI에 대한 기술협력을 담당하기 위한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권고하였으며, '97년에 실시된 두번째 심사에서 동 분야에 있어서 많은 향상과 진전이 있었음을 관찰하였다.

DAC는 또한 동료심사를 통해 스페인의 유상원조(FAD)가 주로 스페인 수출진흥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스페인에게 유상원조 비중을 감축하기를 권고하였는데 바 스페

인은 자국의 원조중 FAD의 비율을 '92년 56%에서 '98년에는 15%로 크게 축소하였다.

스페인의 DAC가입에 따른 또 다른 효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에 EC회원국들이 도입한 프로젝트 심사 및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원조사업수준을 한단계 격상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스페인은 DAC가입을 통해 자국의 비교우위분야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발한 ODA사업 참여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또한 NGO에 대한 지원금을 '89년에서 '92년 사이 2배이상 확대하였고, NGO로 하여금 정부가 실시하기 힘든 빈곤완화, BHIN분야, 여성개발분야를 위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다. 가입전후 ODA 현황

스페인의 경우 '89년 이전까지는 GNP대비 ODA비율이 0.1% 이하였지만, '89년에 0.14%를 기록하였고, 가입해인 '91년에 0.24%를 제공하였다.

<표 1> 스페인: DAC 가입전후의 경제지표

(단위: 백만\$, (%))

연 도	1983	1990	1991	1992	1993
ODA/GNP	0.09	0.20	0.24	0.27	0.25
ODA	152	965	1,262	1,518	1,213
총 GNP(US\$ bil)	1,689	4,825	5,258	5,622	4,852
양자간 ODA	110(72.4)	633(65.6)	761(60.3)	1,100(72.5)	846(69.7)
-무상(증여)	45(29.6)	227(23.5)	244(19.3)	250(16.5)	192(15.8)
-유상(차관)	65(42.8)	407(42.1)	517(41)	849(55.9)	654(53.9)
다자간 ODA	42(27.6)	332(34.4)	501(39.7)	419(27.6)	367(30.3)
-무상(분담)	-	263(27.3)	357(28.3)	383(25.2)	309(25.5)
-유상(출자)	-	69(7.1)	144(11.4)	36(2.4)	58(4.8)
민간원조(NGO)	-	70(7.3)	87(6.9)	70(4.6)	71(5.9)

자료 :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1995),
p. 174

2. 포르투갈

가. DAC 가입 배경

포르투갈은 '61년 DAC의 창립멤버였지만, '74년에 탈퇴하였
다. 그러나 '80년대 말 포르투갈의 구식민지 5국(Angola,

Cape Verde, Guinea-Bissau, Mozambique, Sao Tome & Principe)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관계 정립에 외교적 역점을 두고 포르투갈 사용자 협의체(PALOP)를 구성하였으며, 동 국가들과의 원조공여확대를 포함하는 경제 협력을 통한 각 분야 협력증진을 도모하였다.

포르투갈은 '80년 중반까지 국내의 정치적불안으로 다른 유럽 국가와의 접촉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86년 EC의 가입으로 다른 유럽국가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외교노선이 다른 EC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는바⁷⁾,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91년에 DAC에 가입하게되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원조에 대한 효율성고양을 위해 '93년까지 외무성협력국(DGC)과 재무성산하 경제협력단(IEC)에서 실시해왔던 원조조직을 '94년에 외무성산하 포르투갈 협력위원회(IPC)로 통합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DAC가입 효과분석

포르투갈 정부는 DAC가입을 계기로 ODA를 대폭 확대하였으며(GNP대비 ODA규모를 0.25%에서 0.31%로 증대), 또한 DAC가 제정한 제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자국의 원조정책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원조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

7)EC는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태평양지역의 69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75년에 발효된 Lome협정에 따라 개발원조를 회원국들로 하여금 일관되게 공여하게끔 만들었다.

한 제도적인 준비를 실시하였다.

DAC는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포르투갈 정부내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조정강화를 권고하였으며, 포르투갈 정부는 원조정책의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위원회(ICC)를 설치하였다.

포르투갈 정부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PCM(Project Cycle Management)기법과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DAC의 권고에 따라 포르투갈정부는 구식민지 5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원조행정의 분권화를 달성하였다.

포르투갈 정부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심사 및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라. 가입전후 ODA 현황

포르투갈의 ODA규모 증대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포르투갈의 구식민지 5국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관계 정립에 외교적 역점을 두고 포르투갈 사용자 협의체(PALOP)를 구성한 후 ODA 규모는 거의 20배로 확대되었다. ('83년:8백만불, '90년: 148백만불),

<표 2> 포르투갈: 가입전후의 경제지표

(단위: 백만\$, (%))

연 도	1983	1990	1991	1992	1993
ODA/GNP	0.04	0.25	0.31	0.36	0.29
ODA	8	148	213	302	246
총 GNP(US\$ bil)	200	592	687	839	848
양자간 ODA	2(25)	109(73.6)	166(78)	243(80.5)	189(76.8)
-무상(증여)	2(25)	73(49.3)	82(38.5)	97(32.1)	108(43.9)
-유상(차관)		36(24.3)	84(39.5)	146(48.4)	81(32.9)
다자간 ODA	6(75)	39(26.4)	47(22.0)	59(19.5)	57(23.2)
-무상(분담)	-	29(19.6)	40(18.7)	49(16.2)	48(19.5)
-유상(출자)	-	10(6.8)	7(3.3)	10(3.3)	9(3.7)
민간원조(NGO)	-	2(1.3)	1(0.4)	1(0.3)	-

자료: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19995),
p. 274

3. 그리스

가. 가입배경

그리스는 '96년에 이어 '99년 동위원회에 재가입을 신청한 바,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DAC에 가입하였다. 그리스는 가입

전에는 OECD회원국이지만 비DAC 국가였으며, 우리와 비슷한 원조규모('98년: 1.85억불)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는 '96년 DAC가입이 좌절된 후 그리스의 의회, 행정부등이 DAC가입을 위해 ODA규모 5개년 증액계획을 공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스가 동 위원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의 효율성고양,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지 천명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EU회원국중 유일하게 DA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여러 압력이 그리스로 하여금 DAC가입을 신청케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DCD(DAC사무국)의 그리스 담당직원에 의하면 그리스의 DAC가입동기는 그리스와 적대관계인 있는 터어키에 대한 대외적인 도덕성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 가입 준비

그리스정부는 그리스의 DAC가입을 위해 먼저 원조규모 확대 5개년(1997-2001)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까지 ODA규모를 GNP대비 0.2%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그리스정부는 또한 EU의 원조목표와 동일한 원조의 기

본 정책들을 만들었으며, '99년에 의회에서 개발협력관련 법 (Law No. 2731/99)을 의결하였다. 동 법에는 개발협력 전략, 실시 및 조정체계, 감독 및 평가방안, 통계작성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동 법의 특징은 DAC가입시 신청국이 지켜야 하는 DAC의 제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잘 반영하였으며, 법제정이전에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여왔던 프로젝트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또한 사업실시에 있어서, 책임성, 정당성, 신축성,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는 DAC가이드라인 및 파트너쉽정신에 입각하여 자국의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handbook과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국가 경제청(MNE)으로 하여금 원조 프로그램실시의 모든 권한 및 다른 부처와의 조정기능을 하게끔 하였고, 동 기관이 원조관련 모든 통계를 담당토록 하였다.

다. 가입 효과

그리스가 가입한지 1년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효과분석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그리스 정부가 2000년 9월에 NGO와의 협조음자에 관한 대통령 법령을 발표하여,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전 전체 ODA중 25%('97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던 양자간 원조를 42%까지 확대하였으며, DAC의 권고에 따라 빈곤완화를 개발협력의 기본목표로 하였고, 사회분야에 대한 원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99년 기준으로 원조액의 2/3을 동 분야에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 가입전 ODA현황

DAC에 가입전의 그리스의 원조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리스 원조의 특징은 ODA의 양자간 및 다자간원조간의 비율중다자간 원조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97년 통계는 다자간원조가 총 원조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EU회원국으로써 EU 및 EBRD등에 많이 출자 혹은 출연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이와 같은 기형적인 개발협력 예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협력 5개년 계획중 양자간 원조사업 예산비율을 63%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표 3>그리스: 가입전의 경제지표

(단위: 백만\$,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ODA/GNP	0.13	0.14	0.14	0.15	0.15
ODA	152	168	181	183	194
총 GNP (US\$ bil)	1,169	1,200	1,236	1,220	1293
양자간 ODA	26.9(17.7)	24.1(14.3)	45.3(25.0)	-	-
-무상(증여)	24.2(15.9)	12.8(7.6)	36.6(20.2)	-	-
-유상(차관)	2.7(1.8)	11.3(7.3)	8.7(4.8)	-	-
다자간 ODA	125.4(82.3%)	144.2(85.7)	136.3(75.0)	-	-
-무상(분담)	115.1(75.7)	135.4(80.5)	132.1(73.0)	-	-
-유상(출자)	10.3(6.6)	8.8(5.2)	4.23(2.0)	-	-
민간원조(NGO)	-	-	-	-	-

자료: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for 2000"(2000. OECD/DAC)
 p.15참조. '98년, '99년 양자간 및 다자간 ODA규모, 민간원조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음.

V.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의 DAC 가입 적정성

지금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에 대한 가입배경 및 가입효과에 관해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는 위에 언급한 3국과 우리의 원조현황을 ('99년 기준)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가입 적정성 및 가입시기를 파악코자 한다. 이를 위해 4국의 GNP, ODA/GNP, 총GNP 및 국민 1인당 ODA규모를 적정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 가입시와 아국('99) 간의 양적 비교

표 4를 살펴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3국중 스페인만이 DAC가입시 한국('99년 기준)과 비교하여 ODA규모, 총 GNP 규모가 크며, 포르투갈 및 그리스는 우리보다 낮은 규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GNP대비 ODA비율, 국민 1인당 ODA규모를 살펴보면 3국 모두 우리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GNP대비 ODA비율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GNP대비 ODA비율이 최소한 0.1%정도가 될 수 있는 연도를 가입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3국의 가입시 각종 지표비교

(unit: billion US\$)

국 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한국
가입년도	1991	1991	1999	1999
ODA규모	12.6	2.13	1.94	3.17
GNP규모	5258	687	1293	3968
ODA/GNP(%)	0.24	0.31	0.15	0.079
국민 1인당 GNP(US\$)	13400	6500	11200	8460
국민 1인당 ODA(US\$)	31	25	19	7

자료: "세계비즈니스 정보" (1999, KOTRA)를 중심으로 저자가 작성

2. 스페인, 포르투갈 및 한국의 ODA 질적인 측면 비교

DAC는 '78년 원조공여조건에 관한 DAC권고를 통해 첫째, 원조공여국의 전체 ODA약정액에 대한 증여율 목표수준을 86%로 높이고, 둘째 최빈국에 대한 ODA증여율을 연평균 90% 또는 3년 평균 86%이상을 준수 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표 5에 의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DAC을 가입한 '91년에 비해 '92년에 증여율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DAC의 권고수준인 증여율 86%를 맞추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96년 한국의 증여율은 아직까지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경우 증여율이 DAC의 권고수준에 많이 못미치기 때

문에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여율이 점차 증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상원조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표 5>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증여율 비교

(단위: %)

연도/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DAC평균	한국('96년)
'91년	76.0	93.4	88.3	48.9
'92년	80.3	98.6	90.6	48.9

자료: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경우 "Peer Review Series: Spain, Portugal"('91, '92) 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OECD/DAC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율, 1999), p.52를 참조하였음.

DAC는 또한 선진국들이 타이드원조를 통해 세계무역 질서의 왜곡, 무분별한 자본재의 과당수출 경쟁을 야기하자 일련의 권고를 통해 원조의 언타이드 원조(untying aid)를 추구해 왔다.

DAC는 '87년 "혼합신용과 타이드, 부분 언타이드 ODA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여 타이드 원조시 최빈국지원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35%이상을 양허성수준(C.L)을 유지토록 권고하였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91년 DAC가입시 모든 원조를 타이드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경우 '96년에 모든 원조를 언타이드한 반면, 스페인의 경우 국내분위기가 아직까지 원조를 국익차원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므로 타이드원조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비판과 압력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양허성수준을 DAC의 권고수준에 맞추고 있다.

**<표 6>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의 타이드원조 비교
(양자간 원조)**

(단위: %)

연도/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DAC평균	한국
'91년	100	100	43.3	100
'96년	100	0	26.5	100

자료: "Peer Review Series: Spain, Portugal"('91, '96)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자 작성

3.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가입시 준비 상태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가입시 DAC가입에 필요한 조건충족여부를 알기위해 가입시의 DAC가이드라인 준수, ODA통계계상 체제여부, ODA규모확대 시나리오 준비등의 측면, 그리고 의회의 태도등을 살펴보았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ODA규모면에서는 DAC가입의 비공식 조건인 GNP대비 0.2%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그리스의 경우 가입당시에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0.2%를 달성하기위한 중.장기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이를 가입신청시 DAC에게 전달하였다.

동 3국의 ODA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3국 모두 가입후 자국의 법 및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DAC가입이후 DAC에서 작성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원조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DAC가입시 신청국이 지켜야 하는 DAC의 제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자국의 정책에 잘 반영하였으며, 특히 DAC가이드라인 및 파트너쉽정신에 입각하여 자국의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handbook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DAC에 가입하여 자국의 모든 통계를 DAC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DAC는 가입신청국의 ODA관련 통계계상체제를 가입조건으로 삼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은 가입전에 이미 체제를 완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DAC통계 가이드라인에 적절한 통계치를 DAC에게 보고하고 있다.⁸⁾

DAC의 가입조건은 아니지만 가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가입신청국의 의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경우 의회의 개발협력에

8) 우리의 경우 '94년 이전까지는 ODA관련 통계계상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DAC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94년에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ODA통계관련 관련 기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DAC의 통계기준에 맞게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ODA통계는 재경부에서 수출입은행을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 DAC에 보고하고 있다.

대해 관심과 지지가 동 국가의 향후 개발협력 방향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의회는 DAC가입 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아니라 가입후에도 ODA규모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 의회는 '92년 스페인 정부에게 '95년까지 GNP대비 0.35%까지 ODA 규모를 확대하기를 요청하였으며, 2000년까지 0.7%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포르투갈의 의회는 외교분과위원회를 통해 포르투갈 외교부와 정기적인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의회 내에서 개발협력관련 토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스 의회도 예외는 아니며 그리스의 DAC가입 직전에 그리스 의회는 자국의 원조 전략, 실시 및 조정체계, 감독 및 평가방안, 통계작성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개발협력관련 법 (Law No. 2731/99)을 의결하였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DAC가입을 지지하였다.

**<표 7>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가입조건 충족여부 및
의회의 역할**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ODA규모 확대 시나리오 존재여부	가입시 GNP대비 0.2% 초과달성	가입시 GNP대비 0.2% 초과달성	수립
ODA 가이드라인 및 원칙준수	가입후 준수	가입후 준수	가입후 준수
ODA통계계상 체제 구축	체제완비	체제완비	체제완비
가입시 의회의 역할	적극적 지원	적극적 지원	적극적 지원

자료: "Peer Review Series: Spain, Portugal,('92, 93) 보고서 및 "Aid
Memorandum of Greece" (1999)를 중심으로 저자 작성

VI. 아국의 DAC가입에 따른 효과 분석

지금까지 그리스,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과 우리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의 DAC가입시기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DAC에 가입시 예상되는 긍정적효과와 부담요인을 살펴보고 차 한다.

1. 긍정적 기대효과

가. ODA 공여국가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우리의 DAC가입은 OECD설립의 3대 주요 임무중 하나인 “개도국에 대한 원조”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OECD회원국으로써 DAC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있고, 경제적으로는 개발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및 자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 3국은 DAC가입을 통해 EC 회원국으로서 동료국가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또한 외교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신들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천명

하였다.⁹⁾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자신들의 구식민지 5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나. ODA 효율성제고를 위한 선진기법 도입 기여

DAC가입시 예상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선진 원조공여국들과 ODA정책, 원조방식 등에 대한 정책협의 및 상호정보교환등을 통해 선진국의 비교우위 및 열위분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한국형 ODA모델개발과 원조의 효율성제고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DAC는 회원국들의 원조실시 수준을 높이며 또한 표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료심사(Peer Review)를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91년 가입후 '94년에 동료심사를 최초로 받았으며, 2차 동료심사는 '97년에 진행되었다. '97년 심사시 심사팀들은 '94년에 비해 스페인의 원조조직, 제도 및 정책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관찰하였는바 DAC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게 관련 회의 및 동료심사를 통해 우정어린 충고

9)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협상에서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합의되었고, 조약에도 명시되었으므로 통합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공동 외교도 강화되었다. 이는 그리스로 하여금 DAC 가입을 유도케 만들었다. EU는 현재 저개발 개도국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세계경제에의 점진적 접목, 빈곤퇴치 등 3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 인권 및 기본 자유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Peer Pressure)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DAC는 고위급회의(HLM), 중견관리급회의(SLM)를 통하여 정책수준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작업반(Working Party)을 통해 개발 원조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협의.조정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 DAC가입시 위에 언급한 각종 회의 및 작업반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국의 효율적인 모델과 경험을 접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불리한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수립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 우리의 부담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 ODA공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내인식 제고

우리의 DAC가입시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NGO, 시민단체, 언론기관들의 ODA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ODA공여의 의미, 필요성에 대한 국내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다.

DAC회원국들의 경우 국민들의 ODA사업에 대한 높은 애정과 지원때문에 국민들의 ODA사업에 대한 참여가 높은 편이며, 또한 NGO 및 언론단체에서 주의깊게 사업효과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DAC가입을 통해 ODA에 대한 국내인식제고 및 이를 통한 “국민참여형 ODA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담요인

가. ODA 규모확대

DAC가입시 예상되는 부담요인으로서는 먼저 ODA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DAC가입절차를 규정한 Memoir 7항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있어서 최소 수준의 원조규모를 정하는 어떤 명확한 원칙은 없지만, 회원가입을 신청했던 모든 국가들이 GNP대비 0.2%이상을 원조규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향후 자국의 원조규모를 DAC의 평균비율정도로 확대하기 위한 중기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시 ODA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

반면 ODA규모 확대를 너무 부담적인 요소로 보지말고 이를 잘 활용하여 아국의 장기적인 국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DAC가 ODA를 장기적인 투자로 정의¹⁰⁾하고 있음을 고려시 우리도 ODA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ODA규모 확대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10) DAC는 '95년 고위급회의에서 "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를 채택하였으며, 개발협력이 새로운 무역, 투자 및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파트너를 출현시키기 때문에 개발협력을 미래의 중요한 투자로 간주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ODA정책 공개 의무

DAC는 매년 각국의 ODA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므로 우리의 ODA공여실적을 매년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매년마다 우리의 원조정책, 추진방향등에 관한 비망록을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다른 회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들에게 우리의 원조정책에 관한 대외공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조정책의 신축성을 경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은 우리의 원조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ECD에서 '97년에 채택한 반부패규정¹¹⁾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공정성, 투명성, 부패방지 및 개도국 현지기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경쟁입찰(ICB)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 국산품우선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DAC가 타이드원조와 수출보조성 원조를 규제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원조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특히 EDCF 차관의 타이드원조의 관계, 현물중심의 무상원조의 수출지원 성격문제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11) OECD/DAC는 '96년 고위급회의에서 반부패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에는 회원국들이 양자간 원조조달에 관한 반부패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자국의 조달 규정에 반부패규정을 삽입하였거나, 덴마크처럼 기존의 규정을 강화한 회원국도 있다.

VII. 향후 추진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DAC가입에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관해 다른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ODA규모 중.장기 확대방안 수립

우리의 DAC가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의 GNP 수준이 '99년(3,968억불)이후 연 5% 규모로 성장한다는 측면과 향후 5년(2000-2004)간 ODA규모를 매년 10%정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요소가 충족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의 ODA증액 시나리오는 표 8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고려시 우리의 DAC가입의 적절한 시기는 ODA규모가 GNP대비 0.1%에 도달하는 2004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우리나라의 ODA 증액방안

(단위: 백만불)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ODA규모	317	349	384	425	468	515
증가율	-	10%	10%	10%	10%	10%
총 GNP	3968	4166	4374	4592	4821	5062
대GNP비율	0.079%	0.084%	0.088%	0.092%	0.097%	0.101%

자료: '99년 한국의 ODA통계를 중심으로 매년 경제성장률 5%, ODA증가율 10%를 가정하여 저자가 작성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공표된 ODA규모 확대방안은 가지고 있지않지만 DAC에 가입 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ODA규모 확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적어도 GNP대비 0.2%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시나리오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에 DAC에 가입한 그리스가 DAC에 가입하기위해 자국의 GNP대비 ODA비율을 0.2%로 확대할 5개년 ODA증액 시나리오를 수립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2. DAC가입 준비반 운영

DAC회원국들은 원조업무를 실시한지 4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DAC가 제정한 지침 및 권고를 준수하는 체제도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원조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DAC가입전 가입준비를 위한 준비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준비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DAC가이드라인 준수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파악 및 최소화 방안 모색

DAC은 원조의 효율성임 표준화를 위해 많은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수립하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권고 및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현재 우리의 준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가 DAC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 신청시 동 가이드라인 및 원칙에 대한 우리의 실시여부가 DAC회원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동 지침을 적용하기위한 행동지침의 중.장기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규정의 제정, 내부지침, 또한 필요 시 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전혀 지침이나 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¹²⁾, 또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시 더욱 세심한 협의가 요구되며, 타이드 원조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DAC는 가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실무그룹을 (Working Party)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원조 평가, LLDC국가에 대한 100% 언타이드 원조실시, 여성개발, 환경관련 사항, 좋은 정치 및 민주화 추구, 부패방지, 분쟁방

12) 우리의 경우 혼합신용(mixed credit)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혼합 신용 지원을 위한 적절한 의사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OECD/DAC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율, 1999) p. 58 참조.

지 및 복구, 또한 96년에 제정된 21세기 전략의 구체화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군사비 과다지출 증가, 비민주 국가에 대한 원조정책, 환경 및 여성개발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의 추진방향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타이드 원조 관련 우리의 입장 재검토

DAC에 가입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들자면 타이드 원조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경우 타이드원조의 예외규정(양허성수준 80%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EDCF의 경우 기존의 운영기본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EDCF차관은 선진국의 구매적격국 개방압력이 증가되고 있고 OECD회원국으로서 OECD신사협정 성격을 갖고 있는 OECD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원방식을 수정하되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KOICA와의 연계강화등 다각적인 EDCF 운영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EDCF 차관은 언타이드 운용이 불가피한 데 반하여, KOICA의 무상협력 사업은 국제적으로 자국산 물품 공여와 자국 기업참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 경제적 실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우리의 원조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제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를 들 수 있다. 현재 DAC는 이를 위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의 기술원조 및 식량원조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합의가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DAC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동 합의서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현재 진행방향을 잘 follow-up하여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언타이드 문제등을 포함한 우리의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공정성, 투명성, 부패방지 및 개도국 현지기업 참여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국제경쟁입찰(ICB)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원조조달에 ICB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반면에 다른 회원국의 ICB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의 참여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OECD/DAC의 ODA정책 및 가이드라인등 Follow-up 강화

우리 정부는 현재 비DAC OECD회원국으로서 DAC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DAC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작업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

심도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ODA규모 확대 및 DAC가입을 대비해 서라도 DAC가입전 우리 ODA규모, 정책방향, 집행절차 등을 DAC수준에 맞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DAC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개발원조정책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의 변화추이에 대한 follow-up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DAC사무국 파견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98년에 KOICA에 근무하는 직원이 DAC사무국에 파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케 하였지만, 관련 직원의 KOICA복귀 후 아직까지 DAC사무국에 직원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국제협력 전문가모임 결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의 개발발협력에 대한 짧은 역사 및 적은 ODA규모, 그리고 동 분야에 대한 국내 수요요청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예상되는 DAC가입 및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내의 국제협력,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관련 전문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다. 동 전문가 모임은 현재 진행중인 개발협력 제안 및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심층연구의 경우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며, 첫째, 국제협력의 정책 및 실시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의 측면, 둘째, 지역연구 및 범세계적인 이슈등을 포함하는 DAC의 새로운 원조방향에 대한 연구로 나눌수 있다. 특히 범세계적인 이슈가 '90년에 들어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AC는 동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를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연구기반 조성도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먼저 개발협력에 관련된 전문가 풀제 도입 및 세미나, 워크샵등 관련 모임이 정례화되어야 하며, 둘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특히 정보체제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NGO, 대학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문가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더 심도있게 국제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의와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DAC는 개발협력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조직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 및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DAC가입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 이후 OECD의 23개 전문위원회중 하나인 DAC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DAC회의에 OECD회원국의 자격으로서 참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DAC(개발협력 위원회)가입에 대한 적절성 및 적시성을 알기위해 '90년이후 DAC를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가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추진방향도 살펴보았다.

먼저 OECD/DAC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DAC에서 제정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준수해야하며, 둘째, 일정한 수준의 ODA규모를 가져야 하고, 셋째, 자국의 ODA조직 및 정책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넷째, DAC에게 자국의 ODA관련 각종 통계수치를 제출해야하고, 마지막으로 3년마다 한번씩 동료심사(Peer Review)를 받아야 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 3국의 DAC가입배경을 살펴보면, 3국 모두 원조사업의 효율성고양이라는 명분외에 EU회원국으로서 DAC가입의 필요성을 강하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스

페인 및 포르투갈의 경우 자국의 구식민지에 대한 강한 지원 의사를 밝히는 계기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DAC가입시 각 국의 ODA규모를 살펴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은 가입시 ODA규모면에서 가입의 비공식 조건인 GNP대비 0.2%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그리스의 경우 가입당시에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0.2%를 달성하기위한 중·장기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대내·외에 공표한 것을 알 수 있다.

동 3국의 ODA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3국 모두 가입후 자국의 법 및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DAC가입이후 DAC에서 작성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자국의 원조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또한 3국 모두 DAC가입전에 이미 통계계상체제를 완비하였고 이를 통해 DAC통계 가이드라인에 적절한 통계치를 DAC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우리의 DAC가입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ODA 공여국가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둘째, 우리의 ODA 정책수립시 선진기법 도입이 가능하며, 셋째, ODA 공여증대 필요성에 대한 국내인식이 제고되고 공감대가 확산되어 국민적 합의에 의한 ODA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입시 부담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ODA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ODA정책을 공개해야하고, 셋째, DAC가이드라인 및 원칙 준수로 인해 우리의 기존 정책들을 어느정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이드원조관련 가이드라인은 DAC가입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EDCF의 경우 언타이드운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시 기존의 운영기본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KOICA의 무상협력 사업은 타이드원조의 예외규정(양허성수준 80%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으로 자국산 물품공여와 자국 기업참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향후 추진방향도 무상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OECD는 공정성, 투명성, 부패방지 및 개도국 현지기업 참여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국제경쟁입찰(ICB)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의 원조조달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으로 향후 ICB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반면에 다른 회원국의 ICB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의 참여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ODA규모 및 우리의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시 우

리의 DAC 가입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ODA규모가 GNP대비 0.1%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2004년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9년에 DAC에 가입한 그리스의 경우 가입의 비공식조건인 GNP대비 ODA규모 0.2%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우리의 입장에서 동 수준으로 높이기위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 대.내외에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동 기간동안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DAC가입 준비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면, 동 준비반에서 DAC가이드라인 준수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또한 타이드 원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OECD/DAC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개발원조정책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수집치 분석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의 변화추이에 대한 follow-up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조기관 근무 직원의 DAC 사무국 파견도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DAC가입 및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내의 국제협력,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관련 전문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 율. 199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학수(1991),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대외경제 연구원
- 서병철(1996), "유럽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 외교통상부(2000),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OECD의 권고이행 평
가 및 향후 추진과제
- 이창재(1995),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대외경제연구원
- 임홍재(1999),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식산업사
- 장현식(1999), "OECD/DAC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한국국제협력단
- 코트라(KOTRA)(1999), 세계비즈니스 정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 한국국제협력단(1991), 정부개발 원조
- 한국국제협력단(1995),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 한국국제협력단(1999), 국제협력의 범세계적인 이슈와 우리의
정책방향
- 한국국제협력단(2000), 국제협력의 동향과 전망
- 한국국제협력단(2000), 개발협력동향
- 한국수출입은행(2000), 세계각국 편람

- Browne, Stephen(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EUROSTEP ICVA(1998), The Reality of Aid 1997/8,
EARTHSCAN
- Hyun-sik Chang, Arthur M. Fell and Michael Laird(1999),
A Comparis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OECD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Republic of
Korea(1997),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ECD(1989),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
- OECD(1992),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90, '91, '92, '93,
'94, '98, '99년 Report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Series: Greece,
Portugal, Spain
- World Bank(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DAC가입을 위한 제조건 (Aid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

1. DAC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DAC 사무국에게 지난 몇 년간의 원조규모, 내용 및 가입시 DAC 가이드라인준수등 회원국의로써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등 각종 통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동 사무국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원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과 함께 관련 국가에서 송부한 각종 자료를 분석
2. 구두 혹은 문서로 된 정보에 기초하여, 동 사무국은 1페이지 이상으로 된 가입신청 국가의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DAC회원국들에게 송부함.
3. 가입신청국가가 정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면, 동 국가는 사무국에게 가입의사를 알림. 동 사무국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반대가 없는지 문의한 후, 회원국들의 반응을 가입신청 국가, DAC 의장 및 사무총장에게 알려줌
4. 가입에 대한 반대가 없을 경우, 가입신청국가의 대사는 OECD사무총장에게 자국의 DAC 회원국 가입에대한 의사를 표시함. 가입신청국가는 회원가입에 대한 의사편지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할 시 동 국가의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최근의 통계수치를 포함한 비망록 (Memorandum)을 같이 송부함.
5. 가입여부는 다음 DAC 회의의 의제로 선택되며, 다른

DAC 회원국중 2국의 동의한 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함.

6. 신청 국가는 회원국의 의무준수 의사를 밝혀야하며, 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DAC이 설립된 후 채택한 각종 권고 및 원칙을 준수함
- 타이드 원조 및 혼합신용에 관한 각종 권고안 및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재정적인 약속을 지켜야함.
- 매년 해당 국가의 각종 원조관련 통계를 제공해야함.
- 동 국가의 원조노력 및 정책에 대한 Memorandum을 매년 송부해야함
- 3년에 한번씩 다른 회원국 2국과 사무국으로 구성된 원조심사팀으로부터 원조 심사를 받아야함.

7.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있어서 최소수준의 원조규모를 정하는 어떤 명확한 원칙은 없음. 그러나 회원가입을 신청했던 모든 국가들이 GNP대비 0.2%이상을 원조 규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향후 자국의 원조규모를 DAC의 평균비율 정도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지니고 있음.

부록 2: DAC의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제원칙

1. 개도국과의 원조조정(Aid-Coordination)

가. 조정의 목표

- 이 원칙은 다양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그리고 동 원칙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시해야 하는 개도국에게 적용되어야 함. DAC회원국은 원조정책과 우선 순위조정의 모든 책임과 원조조정 업무는 개도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선진국의 협력으로 개도국의 투자와 공공지출을 위한 정책의 향상과 자세한 평가력의 향상을 도와야함
- 개도국은 그들의 자체 및 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조정된 활용을 위해 잘 고안된 정책과 자세하게 평가된 투자 및 공공지출 프로그램이 요구됨
- DAC회원국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체계화에 있어서 World Bank/IMF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들은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형평과 소득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보건, 인구 및 환경과 같은 이슈가 예산 배분 및 전략수립과정에서 고려되기를 원함. 그리고 동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민간자본이 개도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만드는데 일조함을 의미.
- 회원국들은 자세하게 평가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동 원칙의 계속 실시의 필요성 인지. 이 프로그램이 국제재정기관의 충고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조배분의 소중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정기적 심사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교환과 진행사항의 점검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원조조정
 정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회원국들은 현재 정책향상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에게 이에 필요한 적당한 재정적 도움의 중요성을 인지함. 이것은 필요한 분야의 도입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위해 신속히 제공되는 기금을 요구함. 공여국들이 개도국에게 중.장기 자금 제공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그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함.
- 기존의 관리 능력의 향상과 재활은 바로 앞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시보다는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함. 회원국들은 동 프로그램의 경상비와 정비에 필요한 것들의 실질적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해야함.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개도국의 자조능력을 향한 진일보에 대한 합의와 함께 같이해야함.
-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분야별 프로그램의 협조응자시 많은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특별한 장점이 존재함을 인지. 이와 같은 경우 양자간기구나 다자간기구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에 의한 평가작업이 주도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됨.
- 수출신용은 특별한 경우에는 최빈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원조의 목적과 원칙이 지켜져야함.

- 외부적으로 갇아야 하는 외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개도국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침. 파리클럽이 주도하는 외채 경감에 있어서 개도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과 요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함.

나. 원조조정의 향상된 기획을 위한 후속 조치들

- 회원국들은 진정한 의견일치에 기초하여 작동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적 원조조정노력에 개도국, 다자간 원조기구 및 다른 원조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회원국은 개도국과 국제기구간의 밀접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양기관간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에 회원국들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함.
- 공여국간 그리고 공여국 및 개도국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솔직한 정보교환이 성공적인 원조조정이나 효율적인 원조집행의 필수적임을 인지함.

다. 상담그룹과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s:CGRT)

- 회원국들은 CGRT의 최근의 향상노력을 격려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원조기관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구하기를 원함.
- 가능한 개도국그룹을 이용하여 CGRT전에 상담회의에 양

자간 원조기관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함.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회의에의 참석은 개도국에 대한 진정한 발전계획과 사업을 도출케 하기 때문임.

- 핵심 사업이나 문제점에 관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달성하기 위해 CG의 형태를 수정함. 이에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개도국의 개발분야와 투자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신중한 검토실시,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위한 원조의 의미에 관한 토론 및 개도국의 무역추세 및 외채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개도국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함.
- 재정적지원과 함께 중요한 사업으로 기술원조를 강조하며 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기술원조에 관심을 높임.
- CGRT에서 논의된 결론을 기록하고 개론(Summary)을 좀더 구체적이고 행동 지양적으로 하며, 그리고 개도국의 조정에 참여하는 그룹을 포함한 이에 관심을 가진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
- CGRT에서 도출되는 행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실천하며, 특히 분야 및 개도국 내부에서의 자체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정책개혁의지의 천명과 원조제공에 대한 공여국의 명확한 의도가 나타나야 함.
- 회원국들은 특히 UNDP가 최근에 주도한 Round Table의 강화,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조정역할을 위한 UNDP의 능력고양에 관한 진행에 고무됨. 여기에는 개도국이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이를 담당하는 UNDP 직원의 강화, 그리고 개도국 및 참석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접근법사용, 그리고 향상된 분석 및 개도국자체의 향후 조치, World Bank와의 좀더 가까운 협력을 통한 RT회의의 준비 및 조직을 발전시킴, 그리고 이 회의에 개도국 및 공여국의 적절한 인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 회의에서 UNDP에 의한 회의 주도를 주요 분야로함.

- 또한 RT의 두번째단계인 당사자급의 회의를 강화하여 개도국이 자신들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라. 지방별,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 회원국들은 개도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단체간의 강력한 연계를 설치하기위해 또한 이들간의 조정력을 강화할 필요성 인지. 중앙조정장치는 지방 및 분야간의 조정을 지방/분야별로 인지되는 이슈를 확인함에 있음. 정책대화는 지방 및 분야별 원조조정의 내재된 요소임. 개도국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 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분야별 원조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기획담당직원의 참여가 중요함.
- 최근에 수원국내에서 원조조정의 확대가 이뤄짐. 이를 통해 정보교환, 중복프로젝트의 회피, 그리고 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짐. 그러나 자세히 심사되고 검토된 투자사업 그리고 분야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실시해야함. 회원국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조정기구의 설립을 환영함. 그리고 이와

같은 수원국내의 조정기구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함.

- 회원국들은 아주 자세히 검토된 투자 및 지출 사업에의 지지와 준비를 포함한 향상된 분야별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효율성을 고양하기위해 분야별 원조의 나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 이를 달성하기위한 도구로 협조음자장치의 활용임.
- 회원국들은 지역개발은행이 정책대화와 개혁과정, 특히 분야별로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이 은행들이 UNDP나 World Bank와의 밀접한 협력이나 거시적 경제 정책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아프리카에서 CILSS/Club du Sahel 과 SADCC와의 틀에서 지역별 원조조정이 국별조정 과정에의 중요한 추가분임.

마. 조직별 그리고 직원별

-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행정능력의 과부화를 피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함. 원조의 행정을 유연하게 하는 행동은 쉽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수원국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된 여러 보고서 및 연구자료를 기초로하여 수원국의 원조수행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의 기회를 찾고자 함. 이것은 의회 및 행정부의 절차의 수정까지도 포함됨.
- 회원국은 동 과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책의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수원국에서 정책대화 및 원조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여국 원조기관직원

의 참여가 필요. 이는 원조기관의 현지직원들에 의해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조기관들은 현지에 자체 직원들의 증원, 직원들의 재훈련 및 직원충원 그리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의 효율적인 활용도 필요함을 의미.

- 회원국들은 수원국이 스스로 효율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고안 과 실시 및 그들의 발전과정의 관리를 위한 수원국의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지함. 능력있는 중앙정부기관의 존재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임. 또한 이를 위해 광범위한 제도발전노력이 정부 및 분야 그리고 지방단체별로 요구됨. 민간분야의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제도발전을 위해 민간분야의 역할이 중요함.

바. 실시 및 후속조치

-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정한 원칙을 실시하기위해 자체의 조직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실시해야 함.

2. 프로젝트 심사에 관한 원칙(DAC Principles for Project Appraisal)

가. 개요: 프로젝트 선택과 고안의 중요성

- 개도국에서 좀더 나은 투자관리와 자원활용이 그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것임. 프로젝트의 선택, 좀더 명확한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설정, 고안 및 준비에 많은 노력경주, 고안 및 실시시 영향권에 있는 그룹의 완전한 참여, 그리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고양시킴. 공여국은 프로젝트선택 및 준비시 개도국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성과 개발 효과에 관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함.

나. 원칙의 범위

- 다음에 열거한 원칙은 우선 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함. 회원국들은 동 원칙을 향후에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수단별원조에 적용가능. 모든 종류의 원조는 일관성 있는 선택기준과 높은 수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원조의 적시성은 특히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

다. 투명성

- 프로젝트가 평가되는 기준과 표준, 그리고 공여국에서 적용하는 승인과정과 정보요구는 명확히 서술되어야함.
- 지금까지 이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원조기관들은 이를 수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에게 발표하기를 바람.

라. 공여국-수원국과의 협조관계(Recipient-Donor Partnership)

1) 수원국의 심사 및 실시능력고양

- 프로젝트의 재정에 관한 결정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하지만, 프로젝트 확인, 고안, 그리고 실시에 관한 책임은 수원국에 있음. 그러나 프로젝트 심사, 고안을 위한 제도 구축, 그리고 예산, 회계를 포함하는관리에 관한 수원국의 능력강화는 기술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함.

2) 필수적인 요구사항과 가정에 관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의견일치

- 프로젝트심사와 실시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기여 및 직무는 완전히 공개되고 합의되어야함. 양측간의 상이점은 프로젝트의 실시중간보다는 시작단계에서 해결되어야함. 또한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과 과정은 실질적이고, 완전히 알려져야 하고, 그리고 수원국과 의견이 일치되어야함.
- 양측은 또한 모든 주요행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간과 필

요한 구체적 단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함. 예를 들면, 자문, 훈련, 충원, 조달, 법적사항, 제도변화, 공여국의 과정상의 필수사항등임.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일정은 실질적이어야함. CPP(Critical Path Programming)의 활용이 유리함.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프로젝트 고안자들은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3) 타당성조사를 위한 일치된 기준표(Term of Reference)

- 양측은 서로에게 중요한 사항이 인지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분명한 기준표를 준비해야 함. 이는 이 원리에서 반영된 고안과 지속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타당성조사는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함.

마. 프로젝트 확인(Project Identification)

1) 최초의 프로젝트확인(의 중요성)

- 최초의 프로젝트 확인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경험적으로 보면 주요한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최종결정이 프로젝트심사와 준비단계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프로젝트의 확인 비망록의 활용이 관련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과정은 좀더 자세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기위한 목적임

2) 목표의 구체화

- 프로젝트의 목표에 관한 구체화는 효율적인 심사와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목표의 명확한 구체화는 사후평가에도 필수적임.

3) 분야별 분석과 조정의 기여

- 지금까지의 경험은 정부의 분야별 목표를 설정한 분야별 프로그램과 전략의 유효성이 분야별정책과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그리고 공여국이 지원가능한 분야를 확인시켜줌.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주어진 분야와 연결시킴으로서 제도 구축시 경험을 활용케 하는 것임.
- 수원국정부의 분야별전략의 틀안에서 양측의 조정은 정보와 경험을 교환케하고, 프로젝트의 중복을 피하며, 양측의 협조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그리고 분야별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함.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한 타 공여국의 사업과 계획은 가능한 한 프로젝트의 자료취합과정에 반드시 알려져야함.
- 프로젝트 최초의 정책은 잘 고안된 분야별 프로그램 및 전략과 일치해야함. 이때는 PIPs(Public Investment Programmes)와 PEPs(Public Expenditure Programmes)가 중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잘 고안된 수원국의 분야별 전략과 투자/지출프로그램이 없을경우 프로젝트 정책과 고안과정에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함. 이때에는 공여국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분야별 틀속에서 프로젝트를 조화시키는 노력

에 도움을 주어야함. 특히 프로젝트 심사시 과도한 수입보
호, 수출관련 세금, 행정비용(이자율포함), 그리고 비효율
적인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주요 가격 왜곡현상이 고
려되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소의 이득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수원국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4) 민간분야 관련 프로젝트

- 양측은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이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중
어떤 단체가 더욱 효과적인지 고려해야함. 공여국이 민간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는 이들이 수
원국의 광범위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프로그램과 일치해야함.

5) 주요한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 관련 프로젝트가 수원국의 경제, 재정, 사회 및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면 관련 프로젝트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함. 관련 프로젝
트는 이의 분석에 기초한 경제적 자료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심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야기함.

6) 논리적인 틀 (Logical Framework)

- 이 틀은 프로젝트의 체계적 분석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
에 프로젝트 고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임.
이 틀은 우선 프로젝트의 계획도구로 또한 후속의 평가시
에도 사용됨. 이 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가설의

명확성과 분석인데 이것은 프로젝트의 고안가 평가에 주요한 기능을 함. 가설에 대한 분석은 이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음. 이 틀은 프로젝트의 확인과 같은 초기부터 사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하면 이의 준비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목표를 수정하게 함.

바. 심사: 일반적 고려(Appraisal: General Considerations)

1) 선택과 고안시 심사의 중요성

- 심사의 주요한 목적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합리적 프로젝트의 선택을 가능케하고, 좋은 프로젝트의 고안으로 기여케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두가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 심사 과정과 고안과정이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음. 기술적인 전문가가 프로젝트 고안시 주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여러 형태의 심사가 프로젝트고안의 한 분야임. 프로젝트 고안시 대안의 고려는 고안과 심사의 상호작용의 한 표본임. 결정단계에서, 심사는 관련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적합성,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장점이 많은 대안의 선택, 그리고 실행의 준비를 가능케 함. 다음은 심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임.
 - 기술적(Technical)
 - 재정적(Financial)
 - 경제적(Economic)

- 제도적(Institutional)
 - 사회/분배적(Social/Distributional)
 - 환경적(Environmental)
- 지금까지 언급한 형태의 중요성은 프로젝트별로 상이함. 그리고 언급순서는 분석의 여러 형태에 주어진 무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다음에 언급한 원칙은 계산이 가능한 경제적이익과 함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고안에서 부닥치는 문제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있음.

2) 지속성의 중심개념

- 프로젝트의 지속성은 모든 형태의 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함. 이것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아주 유용한 일반 기준임. 프로젝트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가 종료된 후 지속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공여하게 됨을 의미. 다음은 지속성에 필요한 조건임.
- 순기능적인 정책환경. 필요한 정책변화는 실행되기 전에 합의되어야 함.
 -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
 - 수원국의 관리 및 기술능력에 일치하는 프로젝트 고안
 - 경제적 적합성 및 지속성
 - 최초비용과 경상비의 충원
 - 여성을 포함하는 목표그룹과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 수원국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조건에 적합한 기술의 선택

- 실현가능한 일정표
 - 적절한 유지 및 지지체제, 그리고 외부의 원조가 종료된 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수원국의 사회-문화적환경과의 양립성
 - 환경적인 지속성
-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 프로젝트의 상세한 부분 및 이 사업의 환경 그리고 프로젝트의 고안 및 실행에 있어서 신축성의 필요, 계속적인 발전과정으로 야기되는 관리, 기술 그리고 유지능력의 기대되는 향상에 적용되어야 함.

사. 기술적인 심사 (Technical Appraisal)

- 기술적인 타당성조사는 다른 형태의 심사의 기초임. 기술적인 전문가는 이 사업이 실시되는 수원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과 표준을 사용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함. 기술적인 심사는 수원국내 생산능력의 활용가능성, 잘 훈련된 직원의 소유, 재료, 그리고 다른 투입, 또한 이것이 의도하는 시장에서의 산출의 적합성 및 수원국 내의 기관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등을 고려해야 함.

아. 재정적인 심사(Financial Appraisal)

1)재정분석

- 재정적인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 기대되는 수입의 일정표와 자본 및 소비에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는 아주 세심

한 재정적인 분석과 계획이 요구됨.

- 재정분석은 우선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실체에 관련되어야 함. 또한 계획된 사업의 계속성의 재정적의미를 포함하여 동 사업이 수원국의 공공재정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2) 적절한 개념(Appropriate Terms)

- 재정적원조에 있어서 양허성개념은 사업의 재정적 성격보다는 개발을 위한 적절한 외환자금의 동원능력에 있어서 수원국의 한계성과 경제적 상황과 관련됨. 최종사용자의 개념정리시 자원활당과 수입배분에의 왜곡된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필요함. 두 단계의 재정절차는 이와 같은 왜곡을 피하는 유용한 도구임.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자국내의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고 양허성 요소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함. 이것은 특히 수입을 도출하는 사업 즉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요함. 프로젝트의 심사는 사회적이거나 혹은 이제 시작하는 산업기반에의 최종사용자의 개념에서 양허성의 개념을 전부 혹은 일부를 정당화하게 하기 때문임.

3) 재정적인 지속성

- 비용분담을 사용자분담으로 하는 것은 수원국에 계속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지속성의 유지와 재정적인 분담을 해결하는 방안임. 그러나 사용자 부담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에는 재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제공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관한 원칙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원조조정의 주요

한 주제임.

-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자체 조달되기 힘들 경우, 이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이와 같은 지원이 수원국정부의 공공재정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가끔 프로젝트에의 수원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 과장된 면이 있었음.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면에서 그리고 이로 인한 수원국 정부의 지원능력을 고려해야함. 그리고 이를 위해 공여국 및 수원국정부의 재정담당자들간의 조정이 필요함.

4) Local cost 및 경상비에 대한 지원

- 어떤 경우에는 수원국정부는 자신들의 예산으로는 Local cost 및 경상비를 지원할 여유가 없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여국들이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동 경비를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때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관한 명확한 일정과 형식이 합의되어야 하며, 또한 경상비의 종료단계에 대한 합의도 포함.
- Local cost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여국의 신축성은 프로젝트의 고안이 local cost재정의 한계때문에 수입지향적 기술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음.

자. 경제심사 (Economic Appraisal)

1) 계량화된 경제적이득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제심사

- 경제적 이득과 비용의 계량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에는 체계적인 비용/이익분석이 행하여져야 함. 여기에는 산업, 농업, 전력, 교통, 통신과 같은 시장화 산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의미. 그러나 다른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도로건설, 상수도, 병원, 대학연구소와 같은 프로젝트에는 계량화가 힘들지만 가능한 편익분석을 하여야 함. 특히 관련 사업이 수원국에 주요 잠재적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게 실시해야 함.
- 기본적으로 두개의 서로 다른 경제심사적 접근법이 있음. 그러나 여기에도 같은 가설을 사용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첫번째 접근법은 실제가격과 비용과는 아주 다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그림자가격(Shadow Prices)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 방안(Effects Method)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회계를 내에서 실시 사업으로 인한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에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임.
- 프로젝트의 경제적수익이 근본적인 심사기준의 하나임. 그러므로 자원이 부족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희소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이득이 각 대안의 선택에 주요한 요소가 됨. 최소한의 경제적수익은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변함. 최종의 선택은 사회/분배와 환경고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심사의 다른 요소에도 적절한 무게를 실어 주어야함.
- 프로젝트가 경제적심사를 통과할 경우, 실제적요소와 생산가격에 기초한 재정적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프로젝트에의 재정/예산과의 관련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

- 2) 경제적심사시 공여국과 수원국 양측에 적용하는 기본가정과 표준에의 투명성 및 일관성에 중요한 의미를 둠
 - 회원국들은 양측의 중앙 재정관련기관, 국제원조조정기구와의 협조로 프로젝트심사에 적용되는 기본가정과 표준에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함.
 - Sensitivity분석은 개별프로젝트에 관한 상이한 가정하에서 관련 프로젝트의 역동성을 실험하는 중요한 도구임. 분석 초기에 적용하면 이 분석기법은 관련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값비싼 자료채집과 분석이 필요치 않는 프로젝트를 확인시켜줌. 이의 유용성은 경제적분석에 국한되지않고, 관련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해 필요한 기술분석 및 다른 분석에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함.
 - 위험분석은 이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요한 측정변화에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sensitivity분석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음. Scenario testing 은 여러 변수의 동시다발의 가능성의 서로 다른 융합을 체크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임. 이 접근법은 투입과 산출물의 가격이 아주 크게 변화거나 주요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함.
- 3) 경제적이득이 계량화되지않는 프로젝트에의 비용효과분석 활용
 - 경제적 수익율이 계산되지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모든 유효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수원국에게 희소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기 위해 기대되는 효과와 비용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함. 이와 같은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기위해 관련 사업의 실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혜택자당 상대적 비용, 필요한 서비스의 단가 비용, 필요한 서비스와 이득의 표준 및 질적인 측면등을 들 수 있음.

- 동 분석법은 다른 측면 즉 목표와 혜택 수원자에 대한 명확한 세분, 논리틀, 재정적 지속성, 제도적평가와 유지, 그리고 사회/분배에의 영향에도 적용할 수 있음.

차. 제도적심사(Institutional Assessment)

- 관련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관리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야 함. 이것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의미. 또한 관련 사업의 실시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심사도 포함됨.
- 동 심사는 수원국의 실시기관에 필요한 기술의 성격, 형태, 그리고 조직의 능력 및 자극제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함. 껍은 확인되어야 하고, 실행을 강화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동 심사는 프로젝트의 고안시 고려될 수 있도록 초기에 행해져야 함.
- 동 심사에는 기관의 예산, 회계, 기금의 통제, 그리고 기획과정시 고려되는 정도를 포함하는 재정관리능력의 심사도 포함. 특히 자금통제 능력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프로젝트 고안을 통해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동안에의 기관의 재정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회계와 재정관리능력의 유지능력에 관한 실사를 제공함. 동 심사는 기관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관의 재정관리 및 회계능력을 고양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실행기관이나 다른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원조의 기간과 자체기관과 자문관이 제공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직원이 충원되었거나 훈련받았을 때, 그리고 새로운 체제와 시행규칙이 조직에 도입되었을 때, 전체조직이 새롭게 탄생되었을 때, 오랜기간 동안의 지원이 필요함. 어떤 경우에는 잘 운영되는 조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새로운 실행조직의 능력강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있음. 가능한 한 기술협력은 수원국의 기관과 자문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함. 왜냐 하면 그들이 수원국의 사정과 한계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외국에서 기술원조가 제공될 시에는 첫째, 이 협력이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을 때는 종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 기관의 제도구축에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 선진원조기관들은 특히 프로젝트고안을 단순화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의 실시일정표의 작성, 공동제도 평가실시, 그리고 공동체단체 와 NGO를 통한 기획 및 실시에 있어서 능력있는 중간단체를 활용함에 의해 수원국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함.

카. 효율적인 유지제공(Provision for Effective Maintenance)

- 프로젝트고안은 실제적인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함. 직원 충원이나 유지 목적의 운영자금은 장기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유지의 중요성과 수단을 잘 알고 있어야 함. 유지를 위한 직원훈련은 프로젝트관리의 계속되는 기능이 되어야 함. 특히 프로젝트는 유지기술자나 프로젝트의 혜택자를 위해 예방유지를 다루는 정보관련건을 포함함. 훈련은 잘 기획되어야 하고, 또한 수원국의 유지 담당직원이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 훈련은 이를 위한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표에도 일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선택과 고안은 프로젝트의 소유자의 유지 및 운영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유지책임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처음부터 제공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종료 후 이에 관련된 기구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수단과 기술능력의 가용성을 보장하기위해 수원국정부의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와의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어야 함. 프로젝트실시의 기간은 투자기간의 완료를 위해 좀더 실현 가능한 기간을 허락할 정도로 연장할 수도 있음.

타. 목표대상그룹의 확인과 참여 그리고 사회 및 배분분석
(Identification and Involvement of Target Groups and
Social and Distribution Analysis)

1) 비용과 편익분배

- 목표대상그룹은 동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의도됨.
그리고 실행시 주요기관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자세하게 분류되어야 함.
- 의도된 목표대상그룹에 대한 초기의 분류는 동 프로젝트
의 배분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어야 함. 가능한 한
배분분석은 여러 관련그룹에의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함.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의도된
혜택자와 참여자의 필요와 능력과 양립됨을 확인해줌. 이
분석은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혜택을 받는 그룹이나
개인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룹을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이 필요. 이 분석은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나 최대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분석해야함.
- 목표대상그룹의 개념은 시장화된 산출물이나 전체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한된 적
용성을 가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분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함.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
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하는 것이 요구됨.

2) 사회-문화적분석

- 사회문화적 조건, 구조 및 전통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실시에 가능한 제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필요성이 존재함. 여기에는 지대 및 상수 관련사항, 재거주, 지방구조 형태등임. 이 분석은 평가 및 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와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함.
- 여성들의 개발 프로젝트에의 참여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 현재까지 개발 행위는 대부분 여성을 정책결정자 혹은 생산자, 혜택자의 개념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성들의 임금이 가족의 생활수준의 고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심사단계 뿐만 아니라 최초의 프로젝트 스크린단계에서 여성이슈가 고려되어야 함. 노동분배, 자원에서의 접근 및 활용, 정책결정과정, 수입과 혜택의 분배, 시간 할당, 여성의 법적신분,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는 영향에 관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3) 인구분석

- 여러종류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상이한 인구총과 이민율등을 포함한 인구관련 정확한 자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특히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때는 인구경향, 지리적분산등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4) 수원국 지역기관과 목표대상그룹의 참여 및 동기부여
 - 양측은 국별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원조에 의한 프로젝트의 고안과 실행에 있어서 수원국 지역의 능력있는 현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함.
 -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그리고 실행과정에 수원국 실시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프로젝트가 실제적인 필요성과 환경에 맞추어 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역기관이나 공통체를 통해 마지막 수여자 와 수요자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련 지역의 힘을 동원케 하는데 필수적임.

파.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 환경요소는 프로젝트의 선택과 고안과정에 고려되어야 함. 특히 까다로운 프로젝트는 85년에 OECD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에 관한 권고서에 잘 정의되어 있음. 프로젝트의 최초심사는 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필요한 개념과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함. 이 평가는 프로젝트의 고안이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초기에 실행되어야 함. 환경적인 문제때문에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프로젝트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요되는 노력의 감소로 혜택의 증가를 가져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양측의 밀접한 협동으로

행하여지는 환경평가는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임. 또한 평가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중이나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되어야 함.

- 평가는 또한 프로젝트로 인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함. 여러 종류의 효과분석과 또한 시간상 효과분석에도 관심을 두어야함. 이 평가에는 또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의 고안이나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야 함. 환경평가는 프로젝트의 실시중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감시과정으로써 전 프로젝트의 사이클에 계속되어야 함. 또한 수원국 관련 기관의 환경관련조치의 시행을 위한 능력배양의 필요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
- 가능하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이 화폐개념으로 표시되고 또한 경제분석에 포함되어야 함. 환경상의 비용/편익이 생산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장기적인 환경지속성, 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현존함.

하. 감시, 평가 및 기존의 경험으로부터의 환류를 위한 규정(Provision for Monitoring, Evaluation and Feedback from Earlier Experience)

1) 감시

- 효율적인 현장감시와 실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열거 규정은 프로젝트의 고안단계에 수립되어야 함. 여기에는 다음

의 사항이 포함됨.

-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능률성, 효과성, 영향, 지속성과 프로젝트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정과정을 소개하기위해 프로젝트의 실행의 효과와 영향을 체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체제의 구축
- 계속되는 감시와 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향상과 효과를 나타내는 계량화된 지침의 수립
- 프로젝트 고안과정에 정보체제와 감시행위를 위한 기금의 제공과 책임의 분담을 포함
- 계속 진행중인 효과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 수집체제구축

2) 감사와 회계

- 회계장부와 기록이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실행에 일치하여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계장부와 기록을 만들고 유지하기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3) 평가

- 광범위한 개념의 평가, 적시성, 그리고 필요한 기금의 제공과 책임의 분포를 포함하는 평가계획이 프로젝트고안시 수립되어야 함. 초기부터 평가가 실시되는 목표와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성격과 중요성은 자료취합의 정도와 구체성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에의 합법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4) 기존경험으로부터의 환류

- 프로젝트의 심사와 고안과정에 체계적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하는 과거 행위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다음은 효과적인 환류를 위한 방안임.
 - 과거 프로젝트로부터의 평가시 관찰된 사항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선택이나 고안과 같은 초기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진행중인 평가시 관찰된 사항은 이것들이 프로젝트의 관리과정에 빠르게 반영되면 될수록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제공함.
 -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금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적절한 관찰사항이 고려된 경우에 평가의 관찰사항은 공식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무시되지 않음.
 - 고위급으로부터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이의 환류과정의 제도화의 가장 중심요소임.
 - 경험상 교훈이 실제 담당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체제구축의 고안 필요성이 있음. 인적 그리고 재정적인 배포를 위한 자원이 필수적인 요소임.
 -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최근 문제되는 이슈에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형태와 우수한 내용을 보유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시 결정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공여국과 수원국의 적절한 경험과 평가결과의 사용이 필요.

가. 협조융자와 조건부원조 경우의 특별한 고려사항들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Case of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id)

- 회원국들은 50%이하의 증여율을 가진 부분조건부원조나 협조융자나 조건부원조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개발우선순위의 검토시 87년에 채택된 원칙에 있는 것처
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수원국의 중앙재정 및 기획담당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투자 및 공공재정 프로그램의 부분이어야 함.
 -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 원조조정에서 검토나 혹은 일반적
인 추인을 한 경우 국제 개발재정기구와의 협조융자의
경우
 - 이미 국제개발기구나 DAC회원국으로부터 낮은 개발우
선순위 때문에 거절되었거나 고려되는 증거가 있는 프
로젝트의 심사에는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함.
- 능률적인 구매는 프로젝트의 가격과 뒤따르는 운용 그리
고 유지면에서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 조달
이 조건부일 때, 이것은 공여국이 능력있고 효율적인 구매
품의 선택등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됨. 또한 효율적인 가격
및 품질 통제가 있어야 하고, 특히 수원국에서의 조달이나
다른 제3 세계에서 구매가 필수적일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해야 함.

나. 프로젝트 승인(Project Approval)

- 프로젝트 선택이나 고안에 관한 최종의 결정은 정책결정 레벨에서의 판단사항이지만,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재 고려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것 즉 기대되는 비용과 효과 그리고 의미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공되어야함. 최종 승인은 모든 것이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함.
- 각 기관들은 정책결정 권한의 분산화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승인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프로젝트의 준비에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선택을 위한 정치적결정에는 아주 다른 행정구분이 있음. 이와 같은 행정적인 구분이 권한의 집중화 및 분권화의 구도에서 명확히 되어야 함.

다. 공여국의 조직적인 측면(Donor Organizational Aspects)

- 원조기관들은 프로젝트에 관한 심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을 보유해야 함. 그리고 이들이 외부에 용역을 준 심사자료를 잘 감독할 수 있어야함.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직무는 참고개념에서 세분화되어야하고 그리고 명확히 정의된 심사기준속에서 세분화되어야 함.
- 실제 업무집행 직원들은 최대한 심사규정과 표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주어진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함. 원조기관들은 업무수행 직원들의 참고사항으로 DAC가 정

한 심사규정을 사용함이 가능함.

- 현장과의 밀접한 접촉은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 직원의 적절한 해외사무소 배치는 바람직함.

라. 수원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국 요구사항과의 조화를 달성(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Recipients and Harmonization of Donor Requirements)

- 수원국의 과도한 행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함. 원조의 행정을 효율화하기위한 조치는 쉽지 않지만 수원국이 따라야 하는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거나 단순화하는 기회는 지금까지 연구된 보고서와 자료를 잘 활용하여 추구되어야함. 기획과정에서의 사려깊은 고려를 통해 좀더 적절한 프로젝트의 기회과 불필요한 연구 및 자료 취합을 피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선택, 실시, 회계 및 평가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나 보고서는 수원국의 자체의 행정실시와 요구사항과 가능한 한 관련되어야 함. 수원국의 행정이 효율적인 프로젝트 준비와 선택의 강화가 요구되면, 개도국의 정보취합 능력과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측의 합동노력이 행하여져야 함. 공여국은 특수한 정보에의 요구가 수원국에 가해질 때의 그들의 부담을 알아야 하고, 그들 자신의 행정기구를 통해 그들 자신의 특별한 필요를 맞추도록해야 함.
- 과정의 단순화의 한 방법으로 분야원조의 확대나 효율적인 과정의 채택이 요구됨. 이를 통해 특히 중소규모의 프

로젝트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그룹화되는 것이 가능함. 이와 같은 절차는 승인과정, 프로젝트관련 보고서의 정도와 세분화 및 조달방법등에 적용가능 함. 또한 협조유자 원조가 조화와 업무분담에 의해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지는지에 관해 다른 공여국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자료취합을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에의 철저함이 실시의 뒤따르는 속도와 효율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더라도 수원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분량과 목표의 정확성 및 비용추산에 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됨. 심사시 업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여국이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활용이 고려되어야함.

3. 기술협력에의 새로운 정향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New Orientations in Technical Cooperation)

가. 변화의 필요성(The Need for Change)

- 기술협력은 개도국 주민의 기술, 지식, 기술적노하우, 생산의 태도의 수준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포함함. 기술협력의 중요한 목표는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발전에 있음. 여기에는 지속적발전에 필수적인 여러 제도의 향상된 기능도모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정부부처, 지방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병원, 학교에서의 경제나 사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가능함. 인적자원의 개발은 제도구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주요한 정부기관의 발전된 관리와 향상된 정책분석을 위한 능력배양은 특히 주요함.
- 기술협력의 주요 도구는 훈련에의 접근, 국내.외 전문가 제공, 정책, 그리고 기술적자문, 조사와 연구준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의 기여등이 있음.
- 기술협력의 메카니즘은 공적원조의 주여한 도구의 하나로써 30년 이상 사용되어왔음. 이는 개도국의 여러 기관의 능력강화와 수원국정부의 담당자들을 훈련시킴과 같은 주요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함. 기술협력을 통한 양측의 문화교류는 관계된 사회를 부유하게 하는 반면 매우 다른 관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 동시에 많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사용되어온 도구는 그 자체가 문제점으로 바뀌었음. 여러 실패의 경우를 살펴 보면 이는 기술협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조건에 기인함. 기술협력은 정책이나 수원국의 수원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됨. 그러므로 기수협력이 이들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짐. 이와 같은 내재적인 어려움외에 부적절한 기획과 관리, 세밀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에 대한 개념부족, 프로젝트 실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나친 강조, 국외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반대로 국내전문가에 대한 낮은 의존, 공여국간의 사업중복과 경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경우가 많았음.
- 더욱이 비용지출의 규모와 사업에 관여한 외부전문가의 숫자는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체제에 심대한 압박을 행사함. 7개의 아프리카국가에는 공여국 원조기관에서 지원한 외부전문가예의 임금은 그 국가전체의 공무원보수보다 더 높았음.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업체의 기득권을 만들었음. 이 결과 기술협력은 공급의존 경향을 띄게 되었고, 반면에 수원국의 역할은 수동적으로 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유능한 인적자원과 효율적인 기관이 부족한 개도국에게는 아주 높았음. 90년에 개발장관과 원조기관장들은 개발협력의 정책성명서에서 현재의 기술협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였음. 동 성명서에서 그들은 기술협력의 성격과 품질은 개도국의 장기적인 제도구축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창하였음.

- 다음에 열거한 원칙들은 개도국의 장기적인 개발문제를 풀기위해 개도국을 효율적으로 돕고자 하는 희망에서 선진원조기관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기술되었음.
 - 기술협력의 전략적목표는 단기적 기술협력의 성과에 있기보다는 장기적인 제도구축에 두어야 함.
 - 기술협력의 기획, 고안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개도국의 중심역할을 강조함.
 - 분야별목표와 정책에의 조정에 대한 지지 그리고 특별히 프로젝트별 접근법보다는 프로그램원조의 사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원조의 향상된 기획에 중요성을 부여함.
 - 수원국내 NGO 의 참여를 포함하는 참여접근법을 통해 의도된 혜택자들이 기술협력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강조함.
 - 특별히 정책분석과 개발관리분야에서 장기적인 제도구축에의 지속적 발전과 자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민간분야의 기술협력에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고려함
 - 수원국내의 전문성과 기존 구조의 좀더 많은 활용에 인식을 같이함.
 - 투입보다는 달성한 결과의 개념에서 목표를 설정함.
 - 기술협력에 관한 비용과 비용효과분석에 많은 강조를 함.
- 동 원칙들은 개도국의 기술협력에 적용함. 특히 외부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구축을

요구하는 나라에는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함. 그리고 제도적으로 발전한 선발개도국에게도 아직 인적자원개발에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리고 특수분야에 기술능력을 이전하는 필요성을 인지함.

**나. 기술협력원칙: 수원국의 중심역할과 파트너십개념
(Technical Cooperation Principles: The Central Rol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Partnership Concept)**

- 수원국이 기술협력과정에 참여해야 함. 그들은 단순히 공여국으로 부티의 요청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성을 정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해야 함.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수원국, 혜택수혜자, 그리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의 지속성과 자족을 향상시키는 기초이고 이와 같은 것은 공여국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 기술협력은 최소한의 개입원칙을 유지해야 함. 이것은 국내의 대안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을 의미.
- 제도적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통의 기술협력이 제공한 양측간의 열등관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대신에 양측간의 진정한 협조자 정신이 형성되어야 함.
- 기술협력시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함. 기술협력 고안자는 관련한 사회-문화, 경제, 정치 및 제도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유능하고 감각있는

전문가와 적절한 기술의 선택은 기술협력의 효율성에 긴요한 역할을 함.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환경을 평가하기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확인하기위한 연구가 필요함.

다. 참여 개발

- 기술협력을 비롯한 각종 개발원조관련 프로젝트의 확인, 기획, 실시,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혜택수혜자의 참여는 공여국이 사업을 종료한 후 이 사업의 책임과 지속성 및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기술협력프로젝트의 고안시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가 요구됨. 이것은 효율성측면만 아니라 수혜의 동등한 접근을 위해선도 필수적임. 공여 원조기관은 이를 이용하는 관리기법을 사용해야함. 가능한한 기술협력 고안시 이로 인한 사용자 및 수혜자들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법규가 마련되어야 함.
- 기술협력은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민주화과정 지지에 적합해야함. 선하고, 열린 그리고 책임있는 정부의 향상, 법률제도의 강화, 법치 및 재정회계를 이용하여 제도화를 강화함으로써 인해 부패해소는 전통의 기술협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자문 그리고 훈련의 확대에 많이 의존함. 민주사회의 근간인 인권향상조직은 고무되어야 함. 기술협력 관련 인적자원은 인권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

- 기술협력의 기획자, 실행자 그리고 혜택자로서 여성의 완전한 포함은 지속적 참여적발전의 달성하는데 긴요하고 모든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빈곤층들이 교육, 훈련, 기초보건의 접근 그리고 영농민과 사업가들에게 대부 및 자문과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에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기술협력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을 통한 비용분담에 관한 광범위한 참여는 수혜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용이하게 함.
- 좀더 많은 분권화에 대한 진행은 기술협력으로 하여금 지방 개발은행, 전문가집단 그리고 무역조합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정부, 및 시도단위조직의 강화를 돕는데 새로운 역할을 하게 함을 의미.

라. 제도발전

- 지속적, 동등하고, 자체발전의 향상은 그 국가의 제도적 그리고 조직의 능력의 힘과 질적이 측면에 많이 의존함.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는 개발협력의 전반적인, 그리고 특히 기술협력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 인적자원개발은 제도발전의 필수적임. 원조는 이것이 기능하는 수원국 제도의 장기적측면에서의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효율적인 제도구축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장기적 다

집이 요구됨. 이것은 또한 분야별목표와 요구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맥락에서 기획되어야 함. 그러므로 기술협력의 선호도는 기술협력의 자체 연속성에 유도되어 단순한 기술상의 갭을 채우기보다는 관련 국가의 장기적인 능력배양에 두어야 함.

- 기술협력은 그것이 공공기관이든지 민간기관이든지에 상관없이 기존의 제도와 능력위에 구축되어야 하고, 원조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그 비슷한 기능의 조직의 발전은 피해야 함.
- 기술협력을 통해 능력배양을 해야 하는 기관의 선택은 관련 국가의 다양한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기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기관의 종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야 함. 즉 공공분야 관련기관, 재정기관, 법적, 교육기관, 사업체, 지방단체 및 봉사기관등을 의미. 이 모든 기관들이 각종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개인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어 사회 전체분야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중앙, 그리고 지방 및 분야별 수준의 정책결정 및 자원관리 능력의 배양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고안과 시행은 효율적인 제도에 의존함. 이것이 기술협력의 주요한 한 부분임. 지방기관은 위에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교우위를 줄수 있을 때만 기술협력이 실시되어야 함.

마. 정부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향상된 기능

- 능력있는 공무원과 공공관리는 발전의 필수적임. 이것이 기술협력의 제도구축, 기획 및 훈련의 핵심을 구성함.
- 자질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부족이 개도국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로 유도하는 가장 핵심 문제점임. 공여국은 개도국 공무원의 임금을 매꾸어주기보다는 개도국이 자체 공공서비스분야의 개혁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공여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개도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수반될 때 효과적임.
- 공공서비스 개혁이나 보수문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한 면인 안정과 구조조정노력의 한 부분인 공공비용 지출의 강한 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내포함.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공분야 개혁에는 아주 세심한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 이를 위해 효율적인 개도국 발전전략,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에 기초한 조정된 여러 원조기관들의 합동지원전략이 개별적인 원조기관에 의한 지원보다 우수함.
- 원칙적으로 봉급지원 실시는 피해야 함. 이것은 임금왜곡을 심화시키고, 옅은 수원국의 행정기술에의 공여국의 경쟁을 강화시킴. 예외적으로 양측이 상호 이와같은 실시가 불가피하다도 의견일치시, 봉급지원 및 프린지혜택은 지원될 수있음. 그러나 이때에도 이 실시는 시간적인 기간이 명백하고, 뒤따르는 규정이 투명하며, 양측이 의견 일치하는 중앙행정 기관을 통해 공여국의 실시가 조화되어야 함.

개혁조치는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상호 약속의 일부분이 되어야 함. 예외적인 경우는 공공서비스 개혁과정의 완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

바. 종합 프로그램 접근법

- 기술협력의 기획, 선택, 그리고 고안은 프로젝트별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프로그램원조는 분야별, 주제별, 다기능적, 그리고 다수의 공여국 합동형식에 기초해야 함. 기술협력을 기획시, 지방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함.
- 90년 개발협력의 정책성명에서 회원국의 개발협력장관과 원조기관의 장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원칙을 표명함. 즉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원조사업을 분야별 프로그램,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조정된 지원의 맥락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임. 이 원칙은 특히 기술협력에 적용하게 함. 기술협력은 개별적 접근법에 의해 피해를 보고있음.
- 기술협력은 거시적, 분야 그리고 소분야별 전략, 그리고 개도국의 자체 발전프로그램과 밀접히 관련됨. 이것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여국 의존방식의 기술협력을 피하고, 그리고 수원국 자체지원비용을 적절하게 허용하기위해 지원개도국의 기획과 예산속에 포함되어야 함.
-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그들 자체의 기술협력 제안서를 제공하는데 억제력을 가져야함. 그들은 기술협력시 수원국 자체 투자사업의 일부분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국가전체 및 하부분야 전략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양측은 개별 사업의 효율적인 심사, 실시, 감독,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활용되는 기술협력의 목표를 세분화해야 함. 목표는 명확히 정의되어야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제도구축의 개념으로 명확화 되어야하며, 투입의 개념보다는 성공적인 산출의 개념에서 정의되어야 함.
- NaTCAPs(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ssessments and Programmes)와 같은 과정은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기술협력이 필요로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프로그램화 및 수원국의 기술협력에 대한 주인의식을 신장시켜줌. UNDP의 역할이 이와 같은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있지만 기술협력의 목표와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의견일치를 위해 공여국과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몫임. 수원국의 모든 원조활동에 대한 그리고 기술협력에 관한 중앙정보체계의 구축은 이의 목표에 기여함. 그러므로 모든 공여국들은 정책들의 형성 및 정책들이 채택되었을 때 여기에 포함된 원칙을 고수하기위해 수원국이 요구하는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함. 그러나 수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노력도 가해져야함.
- 제도 및 조직발전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잘 정립된 청사진 그리고 단기적인 사업의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함. 공여국은 목표

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관여해야 함. 이와 같은 종합적인 청사진은 기술협력과 자본지원의 종합기획이 요구됨.

- 기술협력의 효율성과 지속성은 적절한 기구와 부품의 공급, 백업 서비스 그리고 병참관련 사항들이 기획과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향상될 수 있음.

사. 비용과 비용/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

- 양측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기위해 모든 대안의 비용을 잘 알 필요가 있음. 비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기술협력은 증여의 형태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님. 이는 이 협력을 지탱하기위한 후속비용과 관련 지역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것은 비용이 꽤 소요됨.
- 어떤 개발행위는 맨 처음 수원국이 경상비를 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측의 의무에 대한 의견일치의 유무, 그리고 수원국 정부 예산내에 관련 비용의 포함여부에 달려 있음. 재정당국은 진행중인 사업에 비용의 관련 사항, 운영 및 유지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함. 그리고 여기에 향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의견 일치해야함.
- 모든 기술협력관련 사업에 있어서 관련 수원국에 주어진 비용이 관련 수원국의 예산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안에 있고, 그리고 관련 기관의 예산에 있도록 조정을 위한 접

근법이 필요함.

- 비용/효과분석에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함. 기술협력을 위한 계량적인 비용/효과비율이 세워지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이 비율은 매우 높을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장 기초차원에서 매우 고비용의 외부 전문가에 많이 의존할 때 이 비율은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질 수 있음.
- 프로젝트심사에 관한 DAC원칙은 기술협력에 유용한 비용/효과분석에 관한 추천을 포함함.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음. 즉 기술협력의 경제적 회귀의 의미를 계산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 모든 관련 요소가 비용 및 효과의 측면에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또한 수원국에 이용가능한 회귀자원이 관련 프로젝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대 효과와 비용에 관한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함. 비용/효과 분석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음.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확인시켜주는 사업 때문에 혜택자의 수, 혜택자 일인당 상대적인 비용,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단가, 서비스와 이로 인한 혜택의 표준 및 질적인 측면을 말함.

아. 민간분야의 필요성 인지

- 좀더 나은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동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 이와 같은 근본태도에 대한 변화는 기술협력 고안시 크게 인지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분야는 효율적인 공공분야의 도움없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술협력의 배분에 있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와의 비대칭성을 종결하려는 데에 새로운 정향이 주어져야함. 공공분야에의 지원은 민간분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교육과 훈련은 민간분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 민간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기위한 기술협력은 거시적 그리고 분야별 모두에 경제정책개혁을 위한 제도발전과 정책자문을 포함함. 여기에는 공공분야와 외국과의 무역에의 탈규제, 민영화를 포함하는 공공분야의 재활을 위한 조언, 그리고 관리자, 회계담당자, 기술자, 엔지니어 그리고 직업훈련 담당자들에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포함됨. 그리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도구로써 공사의 설립에 있어서 공여국의 민간기업의 경험을 이전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함. 또한 이와 같은 지원하기 위한 법적장치와 적절한 대부서비스기관의 설립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공여국의 민간기관과 수원국의 민간 담당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전문가의 상호방문 및 합동사업실시를 포함함.
- 상당한 수준의 기술협력이 민간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 경쟁적인 왜곡을 피해야 함. 프로젝트심사에 관한 DAC원칙은 적절한 개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자. 향상된 조정

- 90년대에 개발협력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향상된 원조조정
에의 지지를 확인함. 특히 수원국 원조조정에 있어서 원조
기관의 현장 근무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실시. 그리고
좀더 큰 규모의 분야별 프로그램, 정책과 목표,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수원국자체의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등이
포함됨.
- 수원국 정부는 기술협력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기위해서
관련 중앙정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이 좋음. 개별 개도국의 국가정책 및 분야별 프로그
램이 조정이 기초를 제공. 수원국정부내의 조정노력은 적
절한 관련 부처나 혹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에 의
해 인도되어야함. 그러므로 개도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하도록 혹은 이 역할을 집단을 지원케하는 것에 우선순
위를 부여해야 함.
- 조정은 양자간 기관이상을 포함해야 함. 즉 기술협력의 조
정시 NGO나 민간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이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것에 많은 주안점이 주어져야 함.
- 관련 수원국에게 매우 큰 규모의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공여국으로부터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UNDP & World
Bank는 현장에서의 기술협력 실시에 있어서 조정과 조화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World
Bank Consultative Group 과 UNDP Round Table은 일반
적인 의제로 기술협력에 관련된 이슈를 포함시켜야 함.○

공여국에 의한 기술협력에의 약속은 다른 공여국이 제공하는 내용과 이용가능한 공동활용 수원국 전문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에 기초해야 함. 양측은 기술협력의 정책, 절차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이용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접근 가능해야 함. 향상된 공여국간의 조정은 중앙조직과 수원국에서 평가서 및 다른 보고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프로그램, 고안,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

- 공여국은 외부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임무나 조건의 흐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수원국이 맞이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함. 공여국들은 그들의 임무의 숫자를 줄이거나 합동임무의 가능성을 추구하기위해 공여국간의 협의를 해야 함. 향상된 조정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공여국이 요구하는 규칙을 잘 지키게하며 그리고 공여국 중심의 기술원조를 경감시키게함.

가. 기술협력 도구와 모달리티 (Technical Cooperation instruments and Modality)

1) 향상된 훈련의 우선순위

- 훈련은 인적자원의 발전과 제도발전의 핵심임. 그러므로 자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어떤 수준에서든지 교육과 훈련에의 필요성이 있음. 기본적인 관점과 자원배분이 기초교육과 직업향상에 주어져야

함. 훈련은 교육제도와 정책분석, 경제적관리 및 민간분야의 발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민간분야는 그 자체가 특별한 훈련필요성을 만족해야 함.

- 공여국은 훈련과 교육행위가 분야별 필요와 경제적현실과 잘 연결된 국가훈련 전략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정부, 민간분야 그리고 NGO들은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국가전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목표의 설정에 함께 참여해야함. 양측의 기존의 훈련시설과 능력이 필요성과 관련하여 세밀히 평가되어야 함.
- 인적자원개발은 광범위한 목표이며, 아주 협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훈련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가 개개인의 이해보다는 국가전체의 필요성에 주어져야 함. 훈련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경험이 최대한 활용되도록하고 어느 기간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분야에 남아 있을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가해져야 함.
- 지속성, 자족, 그리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기술협력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훈련보다는 개도국의 훈련능력의 강화와 훈련생의 훈련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수원국의 기존의 훈련시설의 강화가 새로운시설의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함. 훈련의 질적인 면은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와 훈련교재의 공급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 훈련기관들은 합의된 기초위에서 수원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경상비를 위한 명확히 정의된 예산이 계산된 장기적 재정계획을 고안해야 함.

- 양측은 수원국과 이의 지방에서의 훈련에 특별한 강조를 두어야 함. 수원국에서의 훈련은 공여국에서의 훈련보다 비용도 적게들고, 그리고 수원국의 필요성을 잘 반영함. 이는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의 이전을 방지함.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에서의 훈련이 인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때, 선택된 훈련기관은 성과와 비용/효과면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함.
- 그러나 수원국의 기술능력 강화시 수원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대학수준의 특수훈련과 같은 것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공여국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음. 또한 외국에서의 훈련은 국제적인 이해 및 협력을 고양시키게 하며 정책결정자나 미래지도자로 하여금 다른 개념의 발전에 관한 관점을 제공할 수있음. 동창모임이나 연결이 훈련의 지속성 및 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음.
- 전문성과 사업적인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고양시켜야 함. 공여국들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동등한 접근 및 참여라는 장기적목표에서 여성은 훈련포창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 수원국내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사, 산업 및 상업적인 회사, 통신으로 하는 훈련, 현장훈련과 같은 비정기적인 훈련접근법은 상당한 수준의 잠재력을 제공함.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피훈련대상에게 훈련을 시키는 유용한 도구임. 내부의 훈련은 기존의 직원의 기술의 유지

와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 확대되어야 함.

- 장학금과 각종 보조금은 개발필요를 만족하기위해 아주 신중하게 목표화 되어야 함. 수원국자체나 다른 개도국에서의 연구는 적절한 훈련시설이 활용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함. 외국에서의 낮은 수준의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함.

2) 외부전문가의 역할과 전문가와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

- 외부전문가의 공급(전문가, 자문관, 그리고 자원봉사자)은 기술협력의 주요한 도구임. 기술협력의 성공은 전문가의 지식 및 경험의 전수능력과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기위해 도움을 주는데 많이 의존함. 그러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 까지 외부전문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자족을 달성하는 목표에 반할 수 있고, 소비형태의 원조침투 및 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함.
- 상대방과 전문가 관계의 재검토는 서로가 기능과 책임을 소유하고, 또한 양측이 상호 동등하다는 진정한 파트너쉽의 구축에 목표를 두어야 함. 자문가와 수원국의 상대자간의 진정한 파트너쉽은 외부전문가가 기술지식을 공유하고, 동시에 그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원국의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적맥락을 배움에 의해 양측이 상호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함.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역할, 직무 및 기간은 관련기관에서 정의한 수원국의 필요에 적응해야 함. 상대방에 대한 훈련은 적절한 강조점을 갖게 되어 가장 짧은 시간동안 훈련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양도받을 수 있어야함.

- 수원국내의 기관구축의 기술협력의 목표에서 볼 때, 프로젝트 건축이나 운용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예외적이어야 함.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수원국 담당자가 이일을 맡을때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허용될 수있음. 또한 아주 값지고 복잡한 기구의 운용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면 이같은 조치는 개도국에게도 도움이 됨.
- 운용적인 측면보다는 자문제공의 역할로 장기적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고 수원국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의 훈련종료후 관련기관에의 후속방문을 포함한 짧은 기간의 전문가의 활용에 많은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이 접근법의 잇점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이 수원국 담당직원에 있다는 점이고, 외부전문가는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것임. 이것은 또한 외부전문가의 장기체류에 따른 병참업무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기술협력담당 전문가의 성과는 좀더 신중한 모집,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좀더 나은 설명, 강한 기술적지식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을 때 향상될 수있음. 공여국은 전문가를 선택할 때 그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전달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야 함. 결과에 대한 좀더 빠른 기대 때문에 기술개발의 과정을 좀히게 해서는 안됨.
- 공여국 전문가나 직원들을 위한 수원국에서의 합동 내부 훈련이 고려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수원국의 상대방을 알게 되어 원조절차와 조정이 원활히 될 수도

있음.

- 수원국과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준표(Terms of Reference)에는 이의 목표, 담당협력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시를 위한 시간표를 수립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장기적인 과제의 경우에는 양측은 정기적으로 이 참고사항을 검토해야 함. 계약만료시 외부전문가의 재임에 대한 문제점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기술협력담당자의 선발에 있어서 여성자원의 활용이 중요. 기술협력의 각 분야에의 많은 여성전문가의 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적게 활용되고 있음. 여성전문가의 증대된 활용은 여성과 여성그룹이 프로젝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줌.
- 약간의 회원국가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Large term 에 관한 유보적 입장이 표명됨.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되지않은 한 large term (10-20)명의 전문가집단)은 수원국의 전문성 개발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3) 수원국 자체 전문가 및 제 3국 전문가의 활용

- 회원국들은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 한 그리고 수원국내의 관련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국 자체 전문가나 기관 그리고 자문가의 활용이 요구됨. 이들에 대한 비용은 외부전문가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수원국자체 전문가의 활용은 활용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 전문가충원에서의 신축성, 그리고 증가된 기술협력에의 공여국의 비조건부원조, 그리고 현장직원에게 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 완전한 수원국 자체 전문가의 활용은 수원국 부담 비용이나 다른 적절한 지원에 관한 신축적인 공여국의 태도를 요구함.

- 공여국의 자문회사를 통한 수원국의 자문회사의 활용과 수원국과 공여국 자문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이 촉진되어야 함. 공여국은 이를 위해 첫째 수원국 자문관을 훈련시키는데 지원해야 하고, 둘째, 공여국과 수원국의 자문회사 사이의 상호접촉을 촉진하며, 셋째, 수원국 정부가 자국의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넷째, 수원국의 새로 설립된 자문회사가 국제시장에 알려지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함.
- 공여국은 기술협력을 담당하기 위해 다른 개도국으로부터 자국전문가를 충원할 준비를 해야함.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수원국에게 확대된 재정적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TCDC는 인재유출을 조장하지 않는 한 촉진되어야함. 이와 같은 위험은 지역간의 협력을 높임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음.

4) 조직훈련

- 상호합의는 제도발전과 기술전수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판명됨. 양측은 중앙 및 지방간의 합의, 그리고 상업적목적의 조직과 NGO간의 이와 같은 합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의 효과는 목표와 직무와의 적절한 조화, 상호신뢰,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의 적시성, 공통의 장기적인 약속, 수원국의 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공여국

기관의 의지, 그리고 직원 및 재원의 활용가능성에 의존함. 적절한 관심이 이와 같은 합의를 감시하는데 주어
져야 함.

5) NGO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NGO는 그들이 빈민과의 접촉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원국의 적극적자세 및 참여개발의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가장 낮은 수준의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조직이라 증명됨.
- 수원국정부는 자국의 NGO와 함께 프로젝트 확인, 준비 및 실시에 있어서 협동하는 것에 권장되어야 함. 공여국은 이 같은 그룹이 활용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체의 전문적기술과 훈련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제도적 강화 와 향상된 관리능력배양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함. 또한 공여국은 NGO와 수원국정부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켜야 하고, 내부의 심의조직과 국제네트워크에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양자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UN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모든 다른 기술협력담당자에게 있어서 능력있는 인적자원이 충원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의 자원봉사자는 대개 경험이 많고 동기가 부여된 전문가임. 그들은 특히 수원국과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유용함이 증명됨.그들이 다시 복귀시, 그들은 남-북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함.
- 자원봉사자들은 능력있는 담당자와 대치될 수 없음. 개별

적인 직무묘사는 수원국의 필요와 특별한 재능에 응답하는 기능과 동력자들과의 대화, 수원국의 적극적 자체노력, 자족, 그리고 적응이나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자원봉사자의 이력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야 함. 양측은 수원국의 종합 계획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에 적절한 비용으로 그들의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고위전문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민간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개발되어야 함

나. 감시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 기술협력은 관리자나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 효과적인 실시 및 공공 책임을 위한 모든 정보가 주어지기위해 체계적인 감시기능과 평가기능이 요구됨. 개도국은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함. 공여국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의 제도적 능력배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모든 기술협력 활동에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적절한 평가방법을 고안하거나 그리고 기술협력관련 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가해져야 함. 이를 위해 수원국에 가해지는 비용은 아주 자세히 계산되어야 함.
- 회원국은 기술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평가 원칙을 개발함. 회원국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기술협력을 위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원칙을 보완하기위해 다 함께 협력

하고 있음. 현재 회원국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이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이전된 기술이 잘 확산되고 뿌리를 내렸는지, 혹은 기술협력의 지속성이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발전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의 질문서를 사용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함. 또한 그들은 기술협력, 특히 제도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의 비용/효과를 측정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까지 기술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측정으로는 효율적인 제도구축과 법적장치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존이 궁극적으로는 감소되었는지에 관한 범위의 측정임.

4. 프로그램원조의 원칙(Principle for Programming Assistance)

가. 도입 및 개요(Introduction and Summary)

- DAC은 원조의 프로그램이나 관리등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일련의 정책 원칙을 제안함. 다음의 원칙은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주요노력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원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이 원칙들은 양측이 프로그램원조 제공시 주의를 요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음.

1) 프로그램의 형태와 목표

- 프로그램원조는 일반적인 개발목적으로 수원국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여를 말함. 여기에는 국제수지지원, 특별한 프로젝트활동에 연계되지 않은 일반예산지원 및 상품지원이 포함됨.
- 프로그램원조의 광범위한 접근법은 개도국의 거시적 그리고 분야별 수준에서 잘 정의된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을 지지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다른 원조수단의 활용을 포함함. 상호 관련된 프로젝트원조의 패키지를 포함한 공여국의 분야별지원 사업중에서 기술협력, 분야별 투자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원조는 원조제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회원국들은 좀더 거시적인 분야별 프로그램, 목표 그리고 정책을 위한 조정 맥락에서 원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

- 프로그램원조는 공여국이 거시경제의 요구와 개별경제와 사회분야(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요구 관계에서 향상된 개발에 필수적인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조장하고자 그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 프로그램원조는 또한 적절한 환경에서 개도국의 확대된 일반적인 경제지원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음. 적절한 책임을 보장하고, 자족과 자립에의 유도를 유지하며, 그리고 비적절한 정책에의 지원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원조의 지원과 이에 의한 결과사이의 명확한 연계를 가능한 한 최대로 수립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모든 종류의 원조가 정책향상에 관계되지만 특히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는 정책변화를 조장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모든 프로그램원조는 명목상 그리고 실제상으로 경제 및 개발정책과 관련됨. 그러나 프로그램원조가 세부적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도는 다름. 여기에는 World Bank나 IMF와 연계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원조로부터 특별히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지원 프로그램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나. 기본원칙

- 다음에 정한 프로그램원조의 원칙들은 다음의 필수적인 요소와 합쳐짐. 경험을 통한 교훈 그리고 연계된 광범위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정책의 관심을 합침에 의해 프로그

램원조는 계속적인 주요한 역할을 보유함. 프로그램원조와 기술협력이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에의 재정지원과 같은 다른 원조형태는 보완적임. 이 모든 수단은 그들 자체의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음. 이 수단들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성에 적응해야 하며, 그리고 조정되고 상호 강화의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 개도국은 스스로 그들의 개발프로그램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경제 및 국민들에게의 영향에 궁극적인 책임을 짐. 정책형성, 기획,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원조의 확장은 함께 나아가야 함.

정책관련 프로그램의 원조의 경우 합의된 정책의 고수를 포함한 프로그램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적절한 안전책과 감시체제는 향상된 경제적 성과와 양측의 이익추구에 필수적임.

- 프로그램원조는 수원국과 양자간 원조기구 그리고 적합한 다자간기구간의 강력한 조정을 요구함.
-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부분인 정책대화는 강력한 다자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 양자간 정책대화는 국제적인 원조조정 체계에서 검토된 것처럼 수원국 정책들의 경향과 우선순위와 일치하여야 함. 경제적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의 주요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함.
 - 시장경제정책과 생산적인 민간분야의 조장
 - 무역과 환율체제 및 정책의 자유화 와 합리화
 - 건전한 재정,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관리와 세금제도의 향상

- 공공투자 및 보건, 교육분야 같은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 운영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향상
- 분야별지원에의 프로그램원조는 다음에 열거한 전략적인 정책관심사항과 목표의 진행에 기여함
 - 모든 경제, 사회 및 정치차원에서 참여적개발을 촉진
 - 개발원조의 사회영향을 향상시킴
 -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강화
 -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강화
 - 환경적인 지속성에 기여
 - 역동적인 민간분야의 개발을 조장
 - 지역간의 협력과 경제적통합을 지원
- 원조의 기본적인 장기적 목표는 개도국의 행정적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자립을 강화시키는 것임. 개도국이 자체의 기본 정책환경과 그들의 행정능력의 강화에 전진을 달성했을 때, 실시과정에서 공여국의 관여를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원조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개도국자체의 기관과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의 증대를 달성할 수있음.
- 과거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음. 즉 수원국의 정책 및 행정환경이 부적절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않다는 것임. 물론 긴급원조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때에도 정책 개혁과 제도구축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선정과 민주화, 동원, 그리고 과다한 군비지출억제노력을

포함하는 향상된 자원활용에 대한 진전을 포함한 개도국의 자체 발전노력이 개도국사이에 프로그램원조의 배분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

- 다른 정부간 원조처럼 프로그램원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상황에는 부적절함.

다. 개도국의 중심역할(The Central Role of Developing Countries)

1) 프로그램 고안과 실시에 있어서 개도국의 책임

- 개도국 스스로가 그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책임을 져야 함. 이 원칙은 주요한 정책개혁조치와 관련되고 그리고 경제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원조에도 특히 적용됨. 개도국은 그들 자체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것은 국제적인 조정행위의 기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성명서, 그리고 국제원조조정체제를 책임지고있는 개도국의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함.

2) 능력배양의 결정적인 역할

- 개도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좀더 확고한 노력이 요구됨. 정책,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 그리고 실질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원조의 확대는 같이 나아가야 함. 이것은 능력있는 국제기구나 양자간 원조기관을 통한 강화된 기술협력과 자문역할을 요구함. 회원국들은 기술협력의 새로운 정향의 원칙을 채택하였음. 여기

에는 핵심적인 경제 담당부처를 포함한 개도국행정의 능력배양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음.

라. 효율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The Central Importance of Support for Effective Policies)

- 효율적인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수적임. 많은 개도국이 자체의 지출시 우선순위에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통해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이 과정은 완결될 수 없으며 계속 진행성의 성격을 가짐. 프로그램원조, 특히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는 요구되는 변화로부터 과도기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좋은 정책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도구임.
-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외부와 내부상환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단기적인 안정노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 이것은 또한 사회조건, 고용기회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분야적수준에서 기본적인 구조정책개혁까지도 다루고 있음.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사이에 구분이 없으며, 또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분도 없음. 오히려 구조조정의 목표는 간접자본과 생산능력에 대한 주요한 새로운 투자와 같은 지속적 경제.사회발전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경제조건과 정책환경을 이룩하는데 있음.
- 대규모의 거시적경제에 대한 프로그램원조와 같은 것은

특히 모호한 부분의 원조이기 때문에 공여국은 수원국에게 그들의 종합적인 자원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는 개발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또한 값지고 품위있는 프로젝트나 대규모의 군비지출에 신경을 써야 함. 자세히 심사되고 우선 순위화된 공공지출 프로그램은 이점에 있어서 근본임. 이들은 또한 프로그램원조와 프로젝트원조와의 연계를 제 공함.

- 양측의 프로그램원조를 위한 정책대화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표, 명확히 확인된 구조적인 조치와 함께 요구되는 실행, 그리고 수원국의 정책 및 공여국에서의 기여에 관한 의견일치를 찾기 위함.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감시를 돕기위해 필수적인 정책단계에의 지표와 표징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함.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준비에 있어서 신축성과 선택성에 관한 필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 효율적인 정책의 구체화에는 개별국가의 상황 즉 정치, 사회, 경제상황과 연결되어야 함. 정책개혁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장기적인 개발목표와 일치해야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음.
 - 국가자원의 좀더 확대되고 생산적인 사용에 기여하는 시장가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 및 유도체제
 - 광범위한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전략적요소로서 생산적인 민간분야의 확대를 위한 조건의 창조
 - 성장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로서 물질적이고 인적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에의 활용 과 국내저축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구축

- 외부적인 경쟁을 부추기기위해 자원배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위해 무역구조와 환율정책의 자유화
 - 비지속적인 재정 및 외부적인 불균형, 결과적인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비용 및 임금왜곡을 피하는 경제, 재정정책
 - 보건, 교육,예산제도의 합리성, 공공분야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이의 민영화와 같은 핵심투자분야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의 선택과 감시의 향상된 체제에의 재정관리의 향상
 -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능률성, 접근성 그리고 지속성의 향상
 - 국가의 지속적인 자원동원능력에 맞게끔 적절한 교육, 기초보건,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서비스 및 사회적 안정망을 유지하기위한 세입을 유지하면서 근무, 저축, 투자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도책사이에 어려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세금제도
- 민간기업 발전에의 적절한 재정지원은 정부간에 움직이는 원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임.프로그램원조는 국내저축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민간분야에의 투자로의 배분이나 동원을 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률적이고 역동적인 재정시장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이점에 있어서 감시 및 감독기능의 강화를 포함한 은행 및 재정분야의 개혁과 재정중계기관의 제도적능력의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가장 근본적임.
- 아주 크게 구분되는 개도국 지역에는 강한 경제적 통합이

향상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원조는 지역적분산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시 지역적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함. 그러므로 프로그램원조는 지역적 경제에의 영향에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고, 긍정적인 지역경제환경을 조장하는 지역협력과 지역 인프라의 개발에의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를 찾아야 함. 이것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개도국으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좀더 강하고 좀더 합리적인 경제구조의 창조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다자간무역정책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향한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마. 참여적개발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원조의 역할(The Role of Programming Assistance in Promot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 프로그램원조는 수원국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실시되어서는 수원국에게 많이 의존함. 선한정치와 재정 책임과 같은 참여적개발은 이와 같은 원조에 특별히 의미를 지니며, 이와 같은 요소가 정책대화와 정책의 고안시 고려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수원국들과 다음의 분야에서 참여적개발을 달성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빈곤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원국민을 위한 교육, 훈련,

보건 및 가족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선택, 행정과 재정적지원에 더 많은 참여등과 같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 중앙 및 지방수준에서 부패의 유인책 및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민주화, 선정으로 인도하는 제도, 정책 및 실시를 강화하는 개도국을 돕는 것.
- 개인, 공동체에 의한 이너서티브, 민간기업 및 시장체제의 역할강화, 그리고 생산자본에의 폭 넓은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원조의혜택자와 그리고 원조에 의한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과의 접촉
- 여성들이 정책결정자, 담당자 그리고 기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
-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법적제도를 포함한 인권의 고양. 이는 특별히 양자간 원조기관이 잘 수행해야 할 분야임.

바. 프로그램원조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The Need for Careful Preparation of Programme Assistance)

- 프로그램원조는 신중한 준비를 필요로 함. 이와 같은 신중한 준비가 없이는 이 원조는 비지속적인 공적, 사적소비를 조장하며, 또한 장기적인 개발과 자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비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음. 프로그램원조

에의 가용한 자원은 제한되어있고, 공여국들은 자국민들에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수원국, 공여국 및 다자간 개발기구사이에 대화에 기초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요구점이 접근법은 다를지라도, 프로그램 원조와 프로젝트원조는 그들이 준비되는 노력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음. 프로그램원조는 프로젝트원조만큼 관리능력이 요구됨. 그러나 다른 분석과 교섭을 위한 기술이 요구됨. 과거에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을 강조한 원조기관들은 프로그램원조의 고안을 위한 적절한 경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1) 목표와 책임의 명확한 세분화

- 프로그램원조로 인해 이룩해야 할 목표의 명확한 세분화는 성공적인 실행과 뒤따르는 평가에 필수적임. 정책개혁과 지출에의 새로운 방향 정립은 신중히 정의되어야 함. 관련 수원국의 세부적인 상황과 관계된 핵심목표의 확인은 비세부적인 많은 목표를 가진 사업에 비해 더욱 성공적인 실시를 달성할 수 있음.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목표는 대개 다목표임. 기타의 양자간의 목표는 보완적이고 일치성을 가져야 함.
- 프로그램심사와 실시에 대한 양측의 기여와 책무는 완전히 명확히 기술되고 그리고 합의가 되어야 함. 양측의 상이점은 프로그램이 실시중 보다는 출발하기 전 해결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외부조건과 가정은 수원국과 실현 가능성있게 완전히 명확히 의견

일치 되어야 함.

2) 사회 및 성(Gender)의 영향 관련사항

- 사회적, 정치적 위험성은 프로그램 고안시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이와 같은 위험성을 제거하기위한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이것이 필수적인 경제개혁을 연기하는 합리화가 안되어야 함. 반면에 이것은 구조조정 노력과 관련 정책개혁노력은 분배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야함. 이를 위한 주요한 도구는 공공지출점토임. 이는 공공지출이 사회목표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도시에의 편견을 피했는지, 군비나 다른 비생산부문에의 지출을 최소화했는지를 알게 함. IMF와 World Bank는 이와 같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사회적 프로그램의 목표변경은 길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서 그와 같은 노력이 실제로 교육분야, 보건분야에서 빈곤층에 대한 편견을 경감시키고, 또한 실업자들을 특별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시켰음. 적응과 개혁노력에 맞는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안정망 구축과 같은 프로그램의 강조는 양측에서 요구됨.
- 프로그램원조에 관한 사회영향분석은 남성, 그리고 여성에의 효과에 대한 고려를 포함함.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각 나라마다 한계와 기회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기초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필요함. 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의 동

등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지역그룹 과 제도의 멤버쉽,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구조가 밝혀져야 함. 성에 기초한 한계성과 기회는 나타낼 수 있음.

3) 환경에의 영향 관련사항

- 프로그램원조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감시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함. 여기에는 국별 환경조사와 전략의 기초와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좋은 실천 에 기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함.
- 프로그램원조는 환경친화정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 환경친화정책의 좋은 사례로는 사용자 비용 지불원칙, 전기에 대한 가격보조금의 축소나 제거, 석유 관련 제품, 비료 및 해충, 안전한 토지권의 제공, 자연자원, 특히 산림의 합리적이용을 촉진하는 토지 소작제도와 같은 것임.

4) 제도적 평가

- 프로그램원조를 고안할 때 공여국들은 통치차원을 비롯한 수원국에의 관리적의미를 고려해야 함.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시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제도적 평가는 예산, 회계 그리고 기금의 통제에 관련된 실시기관의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조사도 포함됨.
- 제도적 평가를 통해 갭이 파악된 곳에는 구체적인 기술원조가 실시능력의 강화를 위해 실시되어야 함.

5)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준비

-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고안, 협상, 그리고 실시는 다음을 요구함.
 - 주요개혁에의 효율적인 지원은 경제, 분야, 그리고 국가의 정책, 제도의 구조와 변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분석업무의 준비의 최종 책임은 개도국이지만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원조기관은 이의 분석과 가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본조사업무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시간경과표는 정책활동의 긴급성과 실제로 프로그램의 준비, 협상 및 실시에 요구되는 현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함.
 - 요구되는 개혁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국민들 특히 영향을 받는 계층에의 비용과 혜택에 관해 개도국이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조장해야 함.
 - 개도국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위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 자원 그리고 노력상의 비용이 소요될지라도 행하여져야 함.

6) Tranching

- 합의된 정책개혁의 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여를 실시하는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Tranching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실시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수단임. 그러나 기대치 못한 발전 때문에 신축성이 필요함. 조건성에 대한 신뢰는 많은 횟수의 예외가 일어날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이것은 매우 많은 세부적인 목표의 달성보다는 초기에 특히

핵심 정책개혁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함. 약속한 원조의 공여에 대한 결정시 특히 공여국이 World Bank/IMF가 조정한 구조조정프로그램에의 지원시 다자단 조정이 필요함.

7) 감시의 제공

- 현장에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감독의 제공과 실시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정보 및 감독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프로그램 고안단계에서 행해져야 함. 개도국의 감독 및 평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은 제도구축의 중요한 분야임.
-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가장 민감한 이슈의 하나는 프로그램의 결점, 정책성과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책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임. 효율적인 감독과 계속되는 정책대화는 프로그램의 실패와 수정된 행동을 위해 필수적임. 공여국과 다자간 원조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이 수원국으로 부터의 일관된 반응을 보장하는데 중요함.

8) 조정된 접근법의 필요성

- 정책개혁, 구조조정 그리고 관련된 정책대화의 지지에 프로그램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은 일관성과 협의를 요구함. 거시경제이든지 혹은 분야별 원조이든지 간에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는 삼자 즉 수원국, 적정한 다자간 원조기구, 특히 World Bank나 IMF, 그리고 양자간 원조기관과 EEC

간의 계속되는 대화에 기초한 강력하게 조정된 접근법을 요구함.

- 개개의 개도국이 자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도국, 다자간 원조기구 및 공여국간의 효율적인 정책 및 정책개혁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국별 그리고 분야별 수준에서 프로그램 원조의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용에 필수적임.
-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필수적인 면과 가정에 관한 정책 대화는 강력한 다자간 차원을 포함함. 양자간 정책 대화는 국제원조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정책들과 우선순위의 정향과 일치할 필요성이 있음.
- World Bank/IMF와 공여국간에 경제적 평가 및 요구되는 정책과 프로그램고안에 관한 협의는 더욱 향상되어야 함. 프로그램 고안과정과 계속되는 대화를 위해서 공여국이 초기에 간여에 대한 계속되는 필요성이 있음. 이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위해 공여국은 그들 자신의 행정내에 적절한 전문가와 적합한 조정기구를 지원해야 함. 수원국의 자문기능과 조정기구의 활용은 효율적인 원조에 기여하고 수원국의 참여를 조장함. 이것은 사업초기에 시작되어야 함.

사. 개도국과 강화된 정책의 질 및 행정능력과 원조와의
관계 발전(Evolution of Aid Relation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with Strengthened Policy
Quality and Administrative Capacity)

- 원조의 기본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개도국의 행정적, 궁극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임. 개도국이 그들의 기본 정책환경과 행정능력의 강화에 진전을 보일 때, 실시에 있어서 공여국의 간섭을 줄이고, 또한 원조를 통한 가용자원의 분배를 위해서 자체 국가제도나 시장체제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됨. 프로그램원조는 이 점에 있어서 적절함. 약간의 공여국은 수원국과 광범위한 감시체계에서 합의한 세부분야의 목표,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의 지원에 있어서 분야별 접근법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있음.
-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분야별 투자지원을 포함한 정책 관련 프로그램 및 분야원조, 그리고 일반 경제원조 간의 적절한 결합은 세부적인 국가의 상황에 의존해야 함. 강력한 행정능력과 효율적인 기초 정책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은 분야별 투자지원을 포함한 프로젝트원조나 프로그램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원조관계 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자원배분과 구체적인 고안이나 실시를 위한 자체의 제도 및 체계의 더욱 크게 의존하는만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원조간에 균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임.

아. 경제적 위급상황을 위한 프로그램원조 (Programme Assistance for Economic Emergencies)

- 상당한 부분의 프로그램원조가 절박한 경제위기시 필수적인 수입요구물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됨. 3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긴급상황은 서로 다른 원조 형태를 요구함. 첫째, 홍수, 가뭄, 지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자연 및 인공적인 재난, 둘째, 무역량의 폭락과 같은 기대치 못한 외부적 요소로 부터 문제, 셋째, 정책상의 약점으로 인한 계속되는 국제수지의 적자 및 재정상의 불균형같은 문제등임.
- 위에서의 첫째상황에서의 재난구호나 그리고 심대한 인도적인 고통을 막기위해 제공되는 비슷한 인도적 원조는 이 원칙의 범위의 예외적 상황임. 경제적 긴급구조는 단기적으로 필수적이라도,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외부요소가 정책개혁 노력을 파괴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조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구조조정이나 정책개혁 노력을 연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경험은 수원국의 정책 그리고 행정환경이 원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부적절할 상황에는 프로그램 원조를 오랫동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계속 연장되는 프로그램 원조는 정책개혁을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비지속적인 공적, 그리고 사적인 소비수준을 유지케하고,

그리고 구조조정문제들을 악화시키게 만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제대구축 및 정책개혁 노력에 두어야함.

- 경제적 위급상황시의 프로그램원조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국제적으로 조정되어야함.

자. 프로그램 식량원조 (Programme Food Aid)

-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국내 수요와 국내생산과 상업적인 수입으로 인한 공급사이에 간격의 매꾸에 일조를 함. 이와 같은 식량원조는 상업적인 수입을 대치할 때, 수입을 위해선 사용되는 외환을 저축할 수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에도 지원을 제공함. 또한 이 식량이 수원국내에서 팔릴 때, 개발활동을 위한 여분의 재원을 창출하게 됨. 지금까지 정의된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프로그램원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원칙에 세워진 기준과 내용은 다른 프로그램원조처를 프로그램 식량원조가 구조조정과 정책개혁과의 연계의 정도가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적용해야 함.
-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국내 생산의 유인책, 소비유형, 임금 배분등에의 가능한 영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성격을 보여줌. 그리고 이 원조는 식량원조회의(Food Aid Convention)에서 정한 식량원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일치되도록 고안되고 실시되어야 함. 그리고 이의 가용자원은 공급국가의 과다 생산의 해결의 방법이 되지 말아야 함. 공여국들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하다면 식량원조 프로그램시 개도국의 식량수출을 활용을

촉진해야 함.

차. 외채경감(Debt Relief)

- 외채경감은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 이는 심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도국의 부채상황을 개선시키고 또한 재정적인 갭을 메꾸는데 도움을 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채와 외채경감의 가동은 많은 공여국들과 World Bank/IMF로부터 지원을 받음. 공적인 외채경감은 일반적으로 파리클럽이라고 잘 알려진 다자간 약속에 의해 케이스별로 증여되고 있음. 이 원칙에서 세워진 기준과 내용은 이의 제공시 고려되어야 함.

카. 원조사업으로 인한 카운터파트 기금(Counterpart Funds)

- 프로그램원조로 인한 수입, 즉 상품이나 외환의 판매로 발생하는 기금은 특별계정의 창조와 같은 특별한 관리장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지함. 동 기금은 프로젝트의 틀에 따라 비용지출까지 수원국 화폐의 감독 및 소유권이 공여국에 있는 수원국 부담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원국 화폐와는 다름.
- 프로그램 원조에서 실질적인 재원이전은 프로그램원조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원조에 내포된 상품이나 재정적 자원의 흐름으로 간주해야함. 그래서 이 기금은 수원국의 여분자금이 될 수 없음. 대규

모의 이와 같은 기금의 존재는 거시적 경제 관리상의 문제(잠재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지출 관리(투명성, 공적예산에의 합침, 그리고 전체상의 지출우선순위와의 일치)문제점 같은 중요한 이슈를 불러 일으킴.

- 개도국의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지출의 효과적인 기획이나 실시는 핵심 목표임. 이와 같은 목표에 일치하여, 공여국은 카운터파트 기금을 포함하여 원조를 공여하는 장치나 실행이 정책대화로부터 수립된 개발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전반적인 지출 배분과 같은 공공지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그러므로 카운터파트 기금은 잘 기능하는 예산 형성, 회계 및 평가절차를 가지고 수원국의 국가예산에 통합되어야 함.
- 카운터파트 기금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양측의 실시는 어떤 경우에는 의회차원까지 가야할 정도로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어떤 공여국은 그들 자신의 법적인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통제를 가함. 다자간 기구를 포함하는 다른 공여국은 이와 같은 통제를 하지 않음. 위에서 언급한 조항과 다음에 언급할 5개의 조항에 규정된 목표는 발전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함. 과도기에는 수원국은 예산우선순위와 통제, 그리고 공공 지출의 배분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공여국은 이 기금이 양측의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수원국의 거시경제, 개발목표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 기금은 이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287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실제 운영측면에서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함.
 - 이 기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가지고 다년간 시행합의에 의해 다른 종류의 원조와 연결되어 기획하고 또한 각 사업의 적절한 정책성과를 제공함.
 - 가능하다면 합의된 시간내에 정부가 통제하는 단수의 이자포함 계정이 기록
 -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기금의 계좌로부터 실현 가능한 빠르게 지함. 특히 이 기금의 재빠르고 과도한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지출 해야 함.
 - 가능한 한 정해진 사업에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전반적인 예산에 사용됨.
- 상품과 식량원조는 수입동등가격에 기초하거나 혹은 기존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에 합의된 가격정책에 기초하여 값어치를 매김.
- 이 기금 관리에 대한 양자간 양측의 합의는 외부조정, 비인플레이션 성장, 275조항에 일치하여 공여국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수원국과 IMF/World Bank사이에 합의된 공공지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의 목표에 일치해야 함.
 - 조정지원의 효율성은 공공지출과 관련된 실시된 정책 및 제도개혁에 의존함. 수원국은 공여국과 World Bank/IMF의 도움으로 이 기금이 투자와 경상비측면에서 공공지출프로그램과 일치됨을 확인하기위해, 그리고 공공분

야의 자원이 예산에 정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됨을 확인키 위해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 자세히 감시를 해야 함. 예산집행의 감시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는 적절하게 기술협력의 제공을 통해 갖추어져야 함.

- 이 기금이 오랜기간 적립된 경우, 이 기금의 사용시 거시 경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개도국의 광범위한 예산지출 우선순위에 일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중요함. 회계연도말에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기금 계좌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수지(balance)에 대한 적절한 관심은 매년도 예산과 우선순위의 지출프로그램의 수립시 고려되어야 함. World Bank/IMF와 합의한 비인플레이션 성장과 외부조정이라는 목표에 일치하여 과거에 적립된 기금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기금의 창조이 필요할지도 모름.

타. 조달(Procurement)

- 시장지향 조정과 정책개혁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외환형태로의 프로그램원조는 상업적이고 재정시장과 제도의 발전의 촉진을 도움. 제한적인 조달요구는 행정적인 과정을 통하기보다는 시장제도를 통해 자원배분을 하면서, 민간부문이 이끄는 성장과 능률성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장지향적, 외환 및 무역체제를 만드는데, 그리고 자유화라는 중.장기적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외환의 공급없이는 경쟁적인 시장과정과 제도의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 그러므로 구조조정이나 정책

개혁을 지지하거나, 효율적인 정책들안에 일반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원조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수입에 의한 구입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함. 분야별 프로그램원조와 특별한 수입구입이 연계되는 경우는 있지만 행정과정이 아닌 시장체제에 의존하는 중. 장기적 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경쟁적인 시장과정, 정책, 제도가 특히 소비와 투자관계를 포함하는 외환자원을 효율적, 그리고 능률적으로 배분에 의존하는 점까지 진전되지 못했을 때에 공여국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또한 수원국의 제도적인 약점이 외환을 비생산적, 그리고 비적절한 사용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과 같은 것도 공여국이 가지는 기본적인 고민임. 그러므로 공여국은 원조의 통합의 측면에서 화폐 가치와 책임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성을 원조지출과 연계하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규칙을 적용해야함. 이와 같은 규칙과 요구의 수립은 가끔 시장과정, 민간분야, 그리고 선정을 조장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함. 가장 기본적인 딜레마는 정부통제에 기초한 자세한 구매요구의 유지는 자유화정책의 실현과 경쟁시장과정의 출현을 방해할 수는 것임.
- 다음의 지침은 이와같은 딜레마에 막닥칠 때, 그리고 시장지향 경제체제의 조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공여국 실행규칙을 채택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프로그램원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비조건화되어야함.
 - 조달절차는 수원국의 무역, 외환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수입허가를 제거하는 노력과 일치해야 함. 그리고 수원국의 경쟁적이고 신뢰성있는 상업적, 재정시장과 제도의 발전을 조장해야 함.

- 요구되는 상품의 목록은 시장결정 수입수요의 표현을 허용해야 함. 원조가 주어질 때, 이것은 분야별 요구에 잘 적응해야 함.
- 국제공개입찰과정의 표준은 가능한 한 적용에 있어서 단순해야 함.
- 공공분야 구매와 책임성을 위한 제도구축은 강화되어야 함.

파. 평가(Evaluation)

- 프로그램원조의 평가와 감시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 자원이동의 Fungibility는 대개 매우 높음. 그리고 프로그램원조와 거시경제적 그리고 분야에의 효과간의 인과율을 설정하기가 쉽지않음. 정책의 변화, 범세계적, 그리고 국내의 시장조건, 다른 외부요소, 다른 공여국으로부터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결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정치, 재정 담당국에게 프로그램원조는 아주 효율적인 원조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계획은 프로그램고안시 포함되어야 함. 처음부터 평가시 목표, 표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히 결

정되어야 함. Baseline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가능한 한 양측은 평가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 첫째 즉시 실시 및 영향 목표, 둘째,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경우에 정책개혁의 실시의 경험, 셋째, 거시경제, 분야별 영향, 제도발전 그리고 정책개혁의 개념에서의 실제 달성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 이 원칙에서 채택된 좋은 실시와 표준은 평가시 고려되어야 함.
- World Bank/IMF는 정기적으로 그들이 지원하는 구조조정과 정책개혁활동을 평가해야 함. 여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형태로 제공되는 양자간 프로그램의 상당한 양도 포함됨.
-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원조에 있어서 여러 공여국이 관여할 때, 합동평가는 World Bank의 참여하에 고려되어야 함.
- 프로그램원조의 운영은 가끔 주어진 수원국에의 공여국의 전체 원조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큼. 프로그램원조의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발원조기관은 자세한 프로그램원조의 목표에 참가하여 공여국의 수원국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의 목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하. 원칙과 후속조치의 적용(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Follow-up)

- 회원국들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함.
 - 회원국들의 프로그램원조 정책과 절차에 이 원칙을 검토

하고 필요시 이 원칙들에 적응함.

- 회원국의 원조검토와 다른 DAC의 관련업무의 한분야로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원조기관간의 협조의 경험과 같은 프로그램 원조정책과 절차를 검토함.
- 이와 같은 검토로부터 나타나는 수치로부터 필요시 프로그램원조의 원칙을 수정하고 update 시킴.

참고: 프로그램원조의 정의(Annex: Definition of Programme Assistance)

- DAC에서 상당한 노력이 프로그램원조의 개념과 이의 여러 카테고리를 명확히 하기위해 행하여짐. 프로그램원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것이 특별한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1. 일반 프로그램원조(General Programme Assistance): 국제수지에의 재정지원, 일반 예산지원, 그리고 상품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개발의 목표로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의 배분 없이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원조를 말함.

가. World Bank/IMF에 의한 구조조정 원조: 이 프로그램 원조는 World Bank/IMF에 의해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원조를 말함. 그 예로는 World Bank의 World Bank Special Programme for Africa(SFA)를 들 수 있음.

2. 분야별 프로그램원조(Sector Programme Assistance): 이는 농업, 교육, 공동체 발전 및 교통과 같은 특별 경제 및 사회분야에 주어지는 원조를 의미함.

가. Sectoral Adjustment Assistance with the World Bank:
이의 예를 들어보면 World Bank Sectoral Adjustment Loans(SECALs)와 World Bank Structural Adjustment Loans와 연계된 분야별 원조를 의미함.

3. 프로그램 식량원조(Programme Food Aid)

4. 부채경감(Debt Relief)

- 재난지원은 프로그램원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특별한 성격이며 프로그램원조로 보고되지는 않음.
- 위해서 언급한 개념들은 현재 진행중인 좀더 세부적인 통계보고의 방향의 수정을 위한 기초가 됨.

참고: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와 다른 프로그램원조와의 통계적인 기술

- 수원국의 정책개혁을 촉진하기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원조와 같은 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와 회원국들이 World Bank/IMF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침을 삼는다 하더라도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 경제지원과 같은 원조간에는 중요한 개념 및 정책

에 차이가 있음. 경험으로는 World Bank/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명확히 연계가 되지않는 여러 형태의 양자간 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의 비교 통계보고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음. 통계의 목적으로 단순히 위에 정의된 World Bank/IMF와의 구조조정 원조 만이 DAC보고에서 정책 관련사항으로 나타남.

참고: 프로그램원조와 프로그램접근의 통계적 기술

- 이 원칙에서 지적인 것 처럼 프로그램원조의 광범위한 정의는 상호 연관된 프로젝트원조, 기술원조 그리고 프로그램원조의 패키지, 특히 분야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도국의 잘 정의된 프로그램의 지원에 주어지는 모든 원조를 포함함. 그러나 이 개념은 너무 광범위함. 그리고 통계보고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에서 정의한 분야별 원조개념은 당분간 통계보고 과정에서 보류됨. 단 한번의 계약으로 기술원조와 투자프로젝트에의 재정적지원과 프로그램원조간을 합치는 증여나 연성차관은 Sector Programme Assistance 로 기록됨.

5. 여성개발에의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Women in Development)

가. 도입과 목표(Introduction and Objectives)

- 지속적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는 단지 남성과 여성의 필요성과 이해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시과정에 완전히 인지될 때 얻을수 있음. 이를 달성하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것은 자원, 서비스,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임.
- 이것은 83년에 회원국들이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위한 원조기관의 지침을 채택했을 때임. 회원국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개발의 측면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고안이나 실시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여성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활약하는 역할과 그들의 사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85년에 UN의 여성의 해에 여성개발 관련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범세계적 회의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전략 (FLS)이 157개국의 의견일치로 채택되었음. 회원국들의 FLS에 대한 약속의 결과는 86년 DAC의 여성개발관련 전문가그룹에서 채택된 다음의 From Nairobi to the Year 2000---Actions Proposed for DAC Members Countries to Fulfill their Commitment to the Nairobi Forward Looking Strategies 라는 보고서에 잘 반영됨.

- 다음의 수정된 지침은 맨 처음의 원칙에 기초하였지만, 이 지침의 범위는 다음에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확대됨.
 - FLS에 수립된 새로운 우선순위
 - 83년 이래 회원국에 의해 달성된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DAC의 원칙의 실시정도와 더욱 많은 노력에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기위해 85년과 87년에 발행된 2개의 감시보고서에의 결론
 - 86년 이래 여성개발을 범세계적이슈로 간주하는 회원국들에 의해 수행된 평가결과들
- 회원국들은 그들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여성개발에 관한 수정된 원칙을 실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수정된 원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관심이 개별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주어져야 함. 사실 많은 수원국들이 스스로 여성의 권리를 여성차별에 반한 모든 형태의 제거를 위한 회의에 따라 개발과정에 여성을 참여자로서 여기고 있음. 공여국들은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시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주제를 참여시키도록 격려받고 있음.

나. 목표, 정책지침과 행동계획(Mandate, Policy Guidelines and Plans of Action)

- 모든 회원국들은 여성이 완전히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성개발을 모든 공적원조의 문서

에 서술하고 있음.

- 이에 관한 정책과 목적은 좀더 자세하게 정의된 목표로 강화되어야 함. 이것은 활동지향적이어야 하고, 여성을 개발자원 그리고 특히 개발에 의한 모든 혜택의 동등한 접근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양자간, 다자간차원 모든 원조기관의 운영에 참여해야함. 개발원조의 다른 분야에서 여성의 주요한 역할이 이제 이해되고, 다른 분야와 원조형태에서 회원국들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 프로그램원조 그리고 구조조정차관과 같은 원조에 남.여 평등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여성개발과 관련된 지침과 절차에 관해 아직까지 이를 제도와 하지 않은 원조기관들은 이를 제도화해야함. 기존의 지침과 절차는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계속하여 경제. 사회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함.
- 구체적인 지침은 각 분야 특히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함이 좋음.
- 공여국들은 여성개발에 관한 자신들의 정책들이 다자간 기구의 개발활동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다자/양자간 프로젝트는 유용한 모델에 될 것임.
- 회원국들은 여성과 여성그룹과의 연계를 위해NGOs의 능력을 강화하고 격려해야 함.

다. 행정적조치 (Administrative Measures)

- 원조기관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개발에 관련된 공여국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시, 감시 및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체제가 가동되어야 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그들의 행정속에 적용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여성개발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원조기관의 전체 그리고 개개 담당직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인 조치가 적용되어야 함. 여성개발을 개발과정에 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약속함이 공여국의 고위급 관리지들에 의해 행하여져야함.
- 작업수단과 장치는 정의되어야 하고 그들의 적용은 특별 여성개발 단위, focal Points나 자문그룹과 같은 수단의 지원으로 확인되어야 함. 여성개발관련 책임은 기관의 운영 담당 직원에 의해 전해지고 그리고 담당 직원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여성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전반적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제도화됨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의 감시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DAC의 원칙에 맞추어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여기에는 관련 사업의 승인, 계약 감시와 평가를 통한 운영계획을 통한 초기 확인단계에서부터 여성에의 혜택, 참여, 장애물확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의 개발을 포함함.

- 개별 원조기관이 스스로 자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까지 충분한 자원이 행정조치를 실시하는데 배분되어야 함.
- 수원국내에 현장사무소의 직원을 임명할 때,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여성개발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수원국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 하고, 정책과 프로젝트의 목표에의 조정을 잘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정보의 환류를 하기 위해서 여성개발 전문가가 활용가능 해야함.
- 사회.문화와 성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여성개발 정책을 실시하기위해 담당직원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소양의 하나임. 그러므로 회원국들은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급에서 여성개발의 이슈와 활동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고위관계자나 특히 분야/기술담당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활용 가능해야함을 확신함.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특히 원조의 여성개발 책임자로 임명된 직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은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야 함.
- 원조담당 직원들이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있어서 성의 의미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해야하고 또한 가계를 포함한 미시경제에의 효과를 이해하기위해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DAC의 담당사무국이 그들의 일상업무에 성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한 이 주제가 DAC의 자문을 위한 문서준비에 포함되게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능

력강화를 지원해야 함.

-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성차별 자료의 개발임. 여성개발관련 DAC의 전문가그룹이 수립한 통계보고서의 제안된 방법은 적절한 시험절차를 거친 후에는 실현 가능할 것임.

라. 실시(Implementation)

- 여성개발의 장기적인 효과는 이를 실시하는 수단의 능력성에 의존함. 지금까지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조치나 절차는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함. 긍정적인 결과는 회원국이나 수원국에게 나누어져야함. 혁신적인 절차는 아직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훈련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시험하기위한 예비프로젝트는 여성개발관련 프로젝트의 준비로 추천됨.

1)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절차

- 여성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혜택대상은 남녀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고 자문시 그들의 한계점 그리고 개발활동에의 참여능력 및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동등한 혜택을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 혜택대상으로 여성의 동등한 참여는 프로젝트고안시 그리고 감시체제에 반영되어야 함. 여기에는 여성의 다른 그룹이 혜택대상의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이 프로젝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의 목표를 포함함.

- 필요시 여성의 프로젝트의 전과정에의 참여를 달성하기위해 여성의 기술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이 가해져야 함. 프로젝트에 참여시 여성이 가지는 장애물과 기회는 알려져야 하고, 한계점을 경감하고 반면에 기회를 최대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2) 심사와 실시

- 여성의 상이한 그룹이 당면한 제약점과 기회는 설정된 목표에 그들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위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심사단계에서 아주 자세히 분석되어야 함.
- 프로그램사이클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프로젝트관련 인구의 성별구성을 그들의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상황에 관련시켜 고려되어야 함. 가장 중점적인 이슈는 생선자원과 권리와 책무의 분담에의 상이한 소그룹의 접근임. 전문적인 능력이 이 주제와 관련된 대외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위해 프로젝트의 계획과 예산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원조기관들은 그들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들이 사회.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요소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참여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여성개발-능력배양문제를 포함시키는데 책임을 가져야함.

3) 감시활동

-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는 이로 인한 사회, 정치, 경제 및

가치체계에서의 변화를 계속하여 평가하기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세워진 현지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감시되어야함. 이 감시활동은 프로젝트 실행시의 신축성과 결합하여 기대 혹은 기대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도저히 변경하지 힘들정도까지 가기 전에 부정적 결과를 피하게 만듦.

- 향상과 영향을 체크하는 적절한 지표는 이와 같은 감시활동이 가능케하기 위해 수립되어야함.

4) 평가

- 대상그룹에서의 영향에 관한 모든 평가는 가능한 성차이를 기록하고 분석해야 함. 이를 위해 팀의 여성개발관련 능력을 요구함.

5) 연구

- 성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좀더 많은 강조를 두어야 함.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과거의 연구는 여성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묘사적임. 향후 연구의 방향은 여성을 좀더 동적이고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성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는 개발협력의 적용시 매우 가치있는 시각을 제공함.
- 여성개발의 이슈가 개발과정과의 통합을 달성하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회원국과 수원국이 같이하는 합동연구가 실시되어야함.
-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정보의 제공을 촉진할 목적으로 회

원국들은 사무국에게 모든 회원국에게 분배하기위해 여성 개발에 관한 주요한 매년 연구 활동을 제공해야함. 또한 다른 공여국, NGO 그리고 수원국이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의 여성개발관련 연구자료를 상호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조정, 자문 그리고 개발교육(Coordination, Consultation and Development Education)

1) 조정과 자문

- FLS 문서에서 표현한 것 처럼 불필요한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자원배분을 달성할 목적으로 미리 기획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위한 정기적인 자문이 제도화 되어야함.
- 여성개발의 정책, 지침, 체크리스트, 평가, 및 훈련노력에 관한 정보들은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다음에 열거한 조직 간에 교환되어야 함. 그 기관으로는 다자간 원조기관, 양자간 원조기관, 수원국의 정부부처, 수원국과 공여국의 NGO, 그리고 다른 수원국의 프로젝트 담당자임. 이를 촉진하기위한 자원과 새로운 여성 NGO의 설립이 가능해야 함. 회원국들은 모든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여성개발에 관련된 새로운 분야별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사무국에게 제출해야 함.
- 현장에서 여성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활동을 조정하기위한 비공식 자문장치가 86년에 제정된 DAC의 개도국과의 원

조조정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이의 주제에 관한 경험의 정기적 교환을 위해 설치되어야 함.

2) 개발교육

- 회원국들은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문화체제와 성별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욱 확장을 촉진해야 함. 여성들은 수동적인 수원국 사람, 또한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묘사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개발정보 자료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

바. 수정된 지침의 검토 및 감시활동 (Review and Monitoring of Revised Guiding Principles)

- 회원국들은 DAC에게 제출하는 각국의 연례보고서(Memoranda)에 수정된 지침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리고 각국의 정기적 심사과정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회원국들은 90년 상반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수정된 지침의 적용을 감시하는데 합의함.

참고: 관련분야(Annex: Areas of Concern)

1. 농업생산분야:

- 여성들은 개도국의 특히 시골지역에서 음식용 식품과 같

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임. 회원국들은 아무 성이나 지식, 기술, 토지를 포함한 자원, 그리고 대부 및 시장과 같은 자원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에 점을 맞추기를 요청 받음.

- 농업관련 서비스는 남.여 모두에게 향해야 하고, 접근법과 내용은 서비스나 여성들에게 유용하도록 적용되어야 함.
- 현금가능 생산물이 촉진될 때, 비옥한 땅에 여성들이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여성들이 혜택도 없이 과중한 노동에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분석과 감시활동이 필요함.
- 회원국들은 토지개혁과 토지등록이 여성의 비옥한 땅에서의 접근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해야 하고, 수원국과 함께 이에 대해 토의해야함.
- 회원국들은 토지 생산의 장기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여성 소작농의 처지를 향상할 목적으로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다자간 원조기구의 노력을 지원해야함.

2. 수입과 고용

- 전통적으로 여성들 차지인 분야가 아닌 곳에 여성의 진출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함. 예를 들면 서비스분야와 무역분야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의 고용과 자체고용의 기회가 증대하고 있으며, 공여국들은 수원국과의 협조로 직장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관리직으로의 여성진출을 고양해야 함.

3. 비공식분야

- 대부분의 수원국에서는 공식적인 경제분야는 남성들이 지배하며, 반면에 여성은 서비스와 법적보호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공식분야에 많이 관여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성과 분야간의 차이와 여성으로 하여금 분야별 활동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설득해야 함.

4. 시간배분

- 많은 연구보고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개발사업에의 여성참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과중한 일상 때문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프로젝트 기획은 이와 같은 제약점을 반영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경감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야함. 또한 프로젝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성에의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의 증대없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함.

5. 훈련과 교육

- 대부분의 수원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음. 이의 원인으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물질적인 제약때문임. 회원국들은 다음의 분야에 잘 인지해야함.
 - 양측이 수원국에서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녀, 여성들의 기초,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을 인지해야함.

-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수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다원적인 역할을 묘사케하고
 - 적절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시,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여성의 훈련양식에 제공함
 - 필요시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문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구조를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
 - 위에서 언급한 관여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과 감시활동을 유지하는 것
-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동등한 접근 및 참여의 목표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을 증대해야함. 적절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본국이나 지역에서 훈련이 실시되어야함.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여성들이 참여를 증대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장학금에 이 과정을 취해야함.

6. 대부와 은행시설에의 접근

-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위한 은행융자나 대부의 시작, 유지, 또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담보가 부족함. 회원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법적, 사회적체제를 변경하는데 적극적이어야함. 또한 회원국들은 여성개발 특별프로그램이나 여성개발 통합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제도에의 지원에의 협조를 증대해야함.

7. 환경

- 여성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자원의 첫번째 사용자이자 환경의 관리자임. 지속성은 여성의 지식과 기여에 의해 이룩됨. 그러므로 여성의 참여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형성시 고려되어야 함. 이들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을 고양하고 환경지속성에 기여함과 자원への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함. 환경적에의 관심은 분야 및 공간을 초월함. 지방과 도시상의 프로젝트는 여성의 관심과 필요성을 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함.

8. 보건

- 개도국의 여성의 상황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간에 명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자녀수와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적
 -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보건
 - 여성의 업무량, 가계와 가족의 건강
 - 여성의 건강, 자녀의 수와 공간넓이, 그리고 처음 그리고 마지막 임신시의 나이
 - 남과 여성의 서비스에의 접근 태도와 역할, 그리고 보건 관련 지식의 적용능력
- 기초보건서비스는 여성에게 재임신의 기회를 주기위해 임신시 그리고 출산시의 여성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시 가족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대상 남.여의 협조로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 문화적인 기회와 제약성을

고려해야 함.

- 회원국들은 영양, 보건 그리고 가족계획에 관한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향상하기위한 계획을 지원하고 촉진해야함. 여기에는 남녀의 두 요소가 같이 고려되어야함.
- 개도국의 정부가 건강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재정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단계에는, 돈의 부족 때문에 여성의 이의 접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계속되는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함. 여성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공동체의 재정지원, 사용자 비용부담이나 상호기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지원수단이 고안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함. 기존의 프로그램은 자세히 감시되고 평가되어야함.
- 회원국들은 보건분야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NGO나 국제기구의 노력에 지원해야 하고, 이들로 하여금 보건서비스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가족건강 향상의 책임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함.
- 회원국들은 여성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실제와 성폭력을 막고 그리고 해결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함.

6.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유익한 참고사항

가. 배경(Introduction)

- 회원국들은 개발 원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그들의 특성, 규모 및 장소 때문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85년에 OECD에서 채택한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서에 나와 있는 환경측면에서의 적절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초기에 이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회원국들은 또한 그들의 개발 원조에 있어서 환경평가정책의 공식적인 채택, 기획, 실시 그리고 관리레벨에서 책임을 부여하는 효율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그리고 적절한 인적자원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적시로 그리고 비용-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이는 86년에 채택된 개발원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조치에의 권고사항임)
-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원조시 환경적인 측면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확인, 기획, 실시 및 평가시 고려되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그리고DAC이 프로젝트심사를 위한 제 원칙을 개발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OECD 심사위는 89년에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원조기관의 고위급의 정책 결정자가 사용가능한 환경 점검표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함. 3개의 권고안의 핵심은 이 장에 포함됨.

- 회원국들은 개발원조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다음의
유익한 참고사항을 수립함.
 - 환경측면은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실시시 완전히 통합
되어야 하고, 개발프로젝트의 행정적인 책임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 EIA는 85년 OECD권고안에 의해 확인된 프로젝트에 있
어서 확인작업과 규모확인시 함께 사용되어야 함.
 - EIA는 인간보건, 자연환경 및 재산 그리고 특별한 성 및
특별그룹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변화로 기인하는 토착민
에의 재정착과 영향등 사회적인 효과등과 같은 기대되는
모든 효과를 지적해야 함.
 - EIA는 비활동대안을 포함하는 다른 대안의 프로젝트 디
자인과 요구되는 이전 및 감시조치를 고려해야 함.
 - 프로젝트의 EIA활동시 공여국들은 용인할 수 있는 비이
전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위한 기준을 사용해야함.
 - EIA의 유용성과 적절성은 해당국의 환경조사와 전략의
활용에 크게 의존함. 이들은 가능한 지역 어디에서나 고
려되어야함.
 - 정보접근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영향을 받는 토착민의 관점을 얻기위해 가능한 한
마련되어야함.
 - EIA는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관련 사회영향에 대한 명확히 언
급해야함.

- 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의, 후속영향 및 수집효과를 포함한 현장효과는 알려져야 함.
- 개도국 정부는 그들 국가에 있어서 환경상태에 그리고 개발프로젝트의 고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님. 그러나 초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가 관련 개도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때, 이에 영향을 끼친 정부가 피해를 본 국가의 환경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Basic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제안된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에의 영향에 관해 순기능적, 그리고 역기능적인 양면에서 검토하는 절차이고, 이와 같은 영향이 프로젝트 고안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IA는 인간 보건, 자연환경 및 재산에 관한 기대되는 결과를 평가하고, 성별관련 특별그룹의 필요성, 토착민의 재정착과 영향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을 포함함. EIA는 비활동 대안을 포함한 프로젝트고안의 가능한 대안 및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해서 프로젝트 고안시 고려되는 환경 안전막이나 영향 완화조치 같은 것을 고려함. 이 평가는 원조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하기위해 프로젝트의 고안시 초기에 활용되면 가장 유용함.

1) 정책결정과 실시과정과의 통합

- 회원국의 공식적인 EIA 과정과 규칙은 환경적인 측면이 프로젝트 고안과 실시에 간여하는 수원국, 원조기관 그리고 타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속에 통합된 것을 확인하기위해 의도됨. 환경평가는 프로젝트 선택, 고안 및 실시과정의 통합된 부분이라는 것이 중요함. 이것은 프로젝트 선택 과정에 잘 수립되어야하고, 원조 프로젝트의 환경적인 측면에 관한 행정책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함.

2) 환경영향평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프로젝트

- EIA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머리말로 85년도에 채택된 OECD권고안에 열거되어있음.
 - 재활용자원의 사용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 농업과 어업의 실시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
 - 수력발전의 이용
 - 인프라
 - 산업활동
 - 광업
 - 쓰레기 관리 및 처리
- 심층적인 환경평가가 공기 및 수자원의 공해 때문에 인간 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원조 프로젝트에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노출된 식물, 동물군, 그들의 서식지,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도 실시되어야함. 또한 특별한 관심이 열대림, 습지, 늪, 산호초, 반불모지와 같은 환경에의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의 필

요성에도 주어져야 함.

3) 환경영향의 범위

- 환경영향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인간보건과 복지, 환경적인 미디어, 환경체제 및 농업과 건물에의 영향
 - 날씨 및 분위기에의 영향
 - 자연자원의 이용(재활용 자원 및 광물자원)
 - 쓰레기의 활용과 처리
 - 재정착, 인류학상의 장소, 경치, 기념물과 사회환경 및 적당한 상류, 하류 그리고 초경계 영향

4) 프로젝트 기획시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

- EIA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일어나는 최초의 EIA절차는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프로젝트의 기획의 시간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 경험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상의 연기나 실시상의 비용상의 큰 차이는 적시의 EIA를 통해 피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시간과 비용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획단계동안 최초의 EIA에 요구되는 시간은 이것이 기획절차, 프로젝트의 종류, 수원국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움. 또한 기초자료의 활용여부도 영향을 미침. EIA를 실시하는 규모로부터 완성때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달려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됨. EIA가 통합되어 다른 기획활동(예: 공학, 타당성조사, 비용, 효과분석)과 동시에 진행되기를 권고함. 이것은 공사연기를 피하고 EIA과정이 공동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좀더 능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5) 환경평가분석의 비용

- EIA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제의 복잡성, 의미성, 그리고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도에 의존함. 이 비용은 전체 예산의 투자에서 보면 미미한데 보통 전체 예산의 0.1%~0.2%수준임. 해로운 환경효과 회피와 긍정적인 최대효과 EIA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가 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투자로 유도함. 최초의 EIA는 환경과 사회조건이 알려지지 아니한 지역에 실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절차나 기술이 정착되고 평가담당 인력이 그들의 직무에 익숙해지면 줄어들게됨. 특히 회원국사이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술의 정보교환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추가 감축으로 유도됨.

6) 회원국 경험

- 대부분의 그들의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의 실시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지니지 못함. 어떤 회원국들은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구속하는 개발원조를 위한 절차를 지니고 있으며, 또 다른 회원국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비공식적, 그

리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다. 원조영향평가를 위한 좋은 실시(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일반적 실시

- 이상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EIA 절차는 공여국의 합당한 실천을 기초로 다음에 언급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수원국은 모든 회원국과 다자간 원조기관이 개발프로젝트에 EIA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함.
 -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자문관에게 EIA에 대한 요구가 공여국사이에 의견일치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함.
 - EIA는 충분히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공여국에게도 공유되고 활용됨.
 - 환경체제의 방해가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정도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개념에 기초하여 비슷한 표준이 비교시 사용됨.

2) 기초 요구사항

- EA는 프로젝트의 종류, 이의 기술적인 면, 수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련의 좋은 실시는 이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의 접근을 조화하기위해 수립될 수 있음. 아래의 EIA를 위한 좋은 실시는 특히 3개의 소스인 OECD 권고안, 최근의 기술관련 연구물, 그리고 오랫동안

EIA를 적용해온 원조기관들의 경험을 함께 종합하였음.

- EIA는 프로젝트 기획과정의 통합된 분야로 보아야 함. 이것은 초기에 프로젝트이 대안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와 연결된 잠재적인 환경에의 영향으로 출발해야함. 이 평가는 가능한 장소에서 개도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기획과정을 통하여 계속 실시되어야함. 이상적으로 감시와 사업 후 회계평가로 이어져야함.

3) 환경영향평가의 책임

- 개도국 정부는 자체국가의 환경상태와 개발프로젝트의 고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함. 그러나 원조로 행해지는 프로젝트에의 EIA는 수원국의 환경법과 규제, 그리고 공여국의 개발 협력 표준을 고려하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지 수원국이 아직까지 환경보호에 대한 법적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했을 경우, 프로젝트를 책임자가 EIA를 책임져야함.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련 지역 담당부처의 기술적인 능력에 가능한 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 개도국의 담당상대기관이 자신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경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참여되어야함. 가능한 한 지역 환경전문가들이 이 평가팀에 합류되어야함. 수원국은 요구되는 변화와 수정의 의사와 함께 이를 승인해야함.

4) 절차 원칙

- 적어도 위에 열거된 프로젝트에는 EIA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EIA는 가능한한 초기에 시작되어야하고, 프로젝트이 첫검토에서 함께 실시되어야함.
- 만약 EIA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심사를 뛰어 넘는 경우에는 특별히 EIA를 실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야함.
- 통합시 최초의 EIA는 타당성조사에 비슷하게 시작되어야하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획전에 완결되어야함.
- EIA는 가능하다면 수원국에 있어서 관련 프로젝트와 다른 분야의 측면의 관점에서 그 국가의 환경조사 및 전략에서 나온 사항들을 고려해야함.
다량의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합쳐져 환경영향을 가져오는 경우, 흐름도가 유용할 수 있음.
- 모든 타당성조사는 적어도 환경과 여기에 관련된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장을 만들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기술적인 개요가 마련되어야함.

5) 심사(Screening)

- EIA절차는 먼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심사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과정은 환경검토가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허용함. 확실한 형태의 지원활동이 자동적으로 환경검토로 부터 제외될 수

도 있음.

- 이와 같은 활동으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영양 및 가족 계획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함. 어떤것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인지 심대한 환경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모두 제외시키는 지 말아야함.
-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장착되었을 때, 보건 및 안전에의 가능한 위험이 심사과정에 고려되어야함. 양자 및 다자간 원조기관은 새롭고 확장된 조치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함.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음.
 - 어떤 대안 프로젝트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가
 - 위험성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공공 안전의 적절한 정도는 어디인가
 - 상당한 환경가치를 지닌 지역에 어떤 수준의 환경보호가 보장되는가?
- 심사는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프로젝트 및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큰 프로젝트를 초기에 채택 못하도록함.
- EIA의 질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약하기위해 EIA가 요구하는 종류에 따라 초기에 프로젝트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6) 범위

- 결정이 EIA로 가기로 되었을 때, 범위과정이 프로젝트의 심사후 즉시 시작 되어야함. 이 과정은 프로젝트에 의해 제기된 심대한 환경이슈, 요구되는 분석의 시기와 정도,

적절한 전문성의 소스 및 완화조치에 대한 제안들을 확인
케 만듦. 이 시점에서 EIA를 위한 책임과 계획표가 확인
될 수 있음. 철저한 EIA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범위는 수원국의 적절한 중앙, 지방, 지역기관으로부터,
NGO단체 및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부터, 그리고 EIA를
책임지는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자료, 관심 및 경험을 포
함함.

- 세심한 심사와 범위는 프로젝트의 후기 단계에서의 연기
나 부가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심대한 환경이슈
나 가장 중요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EIA에 도움을 줌.

7) 지역기관과 대상그룹의 참여 및 동기부여

- 양측은 관련 국가의 상황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원조
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고안과 실시를 위해 관련 지역에
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함께 협
조해야함.
- 개도국의 환경관련기관은 가능한 한 큰 범위내에서 포함
되어야 함. 이상적으로는 유능한 기관과 적절한 규제는 프
로젝트의 맨처음 검토시 확인되거나 프로젝트의 제안서에
기록되어야함. 타당성조사의 환경관련 분야에의 목적이나
개별적인 환경평가는 가능한 한 수원국의 환경 당국의 조
언이나 동의로써 행하여져야함. 프로젝트 관련 EIA가 환
경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능력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
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초기에 확인되어야함.
- 영향을 받는 인구의 남.여의 공동참여는 추구되어야 함.

그 결과,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원조프로젝트의 고안, 비관료적인 새로운 개발 협력자의 선택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게 만듦.

- 수원국 NGO의 참여는 수원국의 공적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촉진되어야함. 이 점에서 수원국의 가치나 절차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함.
- 수원국 실시기관이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및 실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는데 좀더 많은 강조가 있어야함. 수많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 이용자 및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관련 프로젝트가 그 지역의 활력을 동원케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환경에 맞게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임.

8)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EIA 보고서에 열거될 특별한 이슈는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범위과정에서 확인되어야함. 일반적으로 철저한 EIA를 위한 목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함.
 - 프로젝트이 환경과 환경의 기초조건을 이 프로젝트로 인한 향후 효과와 견주어 묘사되어야함.
 - 프로젝트가 수질, 에너지, 자연자원에 주는 환경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여성을 포함하는 관련지역 주민에게 프로젝트가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쓰레기 수자원, 일반 쓰레기 및 방류물에 처리에 관한 평가

- 가능하면 비용측면에서 긍정적인 또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 환경정제를 위한 기회 분석
- 수원국의 적절한 환경표준, 이 표준의 필요한 licensing 절차를 포함한 법적 그리고 정책들의 제공
- 환경적으로 적절한 가격정책, 세금 및 보조금에의 영향에 관한 평가
-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을 세분화하여, 결과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결과 혹은 대안에 대한 고려
- 운영 및 감시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제한하는 완화조치나 대안의 고안을 위한 제안
- 프로젝트 대안 및 완화조치를 부정적인 영향의 제거에 대한 가능성, Associated Capital, 경상비, 관련 지역특성에의 적합성, 제도 및 훈련 그리고 감시요구사항의 관점에서 비교
- 영향을 받는 그룹들의 이 제안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이들에 대한 보호나 재정착을 위한 조치의 열거
- EIA에 포함 되지 않았던 관련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한 성명
- 주요한 권고를 포함하는 비 기술적인 개요

9) 외부 검토회의

- 활용이 가능시 외부의 환경영향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회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절차의 성공으

로 인도함. 이 검토회의의 의도는 여러 참여자들의 대립되는 이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또한 불필요한 비용과 연기를 피하는데 있음. 최후의 EIA 보고서가 원조 기관과 상대기관의 고려를 위해 제출되기 전 검토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요청됨.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 이 검토회의는 환경에 정향된 사람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유능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진 혹은 공여국에서 유능한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되어야함. 외부검토회의에 관한 결정은 수원국에게 맡겨 두어야함.

10) 내부검토회의

- 공여기관은 환경평가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그리고 최종 EIA보고서의 적시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것을 책임지는 중심 부서를 설립해야함. 주요한 EIA가 실시될 때 마다 관련 부서는 과학의 여러 명의 전문가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자체 책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동 직원들은 반드시 이 기관의 영구적인 직원일 필요는 없음.

11) 정책결정 과정

- EIA결과는 개발원조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인지 혹은 아니지를 결정하는 때에 완전히 그리고 적절히 고려되어야함. 위에 언급한 중심부서는 적절한 관심이 모두 경우마다 EIA결과에 주어졌는지 확인해야함.

12) 감시와 회계

- 참여하는 공여국이 그들의 공동 책임과 영향을 포기할 때 프로젝트의 실시후 EIA는 계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 적응의 기초를 제공하거나, 평가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거나 혹은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기위해 EIA는 운영하는 동안 감시와 회계를 위한 권고를 포함해야함. 이 권고는 EIA를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재정소스를 지적해야함. 환경영향과 환경회계의 감시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있는 수정 및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환경 감시는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의 업무임. 감시와 회계의 질적이 측면은 EIA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도국의 환경담당 행정기관이나 이 부서의 능력에 달려있음. 그러므로 EIA는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EIA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수원국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검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대신에 양측은 다음에 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해야 함.
 - 프로젝트 계획은 검사와 감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 기관, 및 준비물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감시활동을 위한 조직은 명시되어야 함.
 - 요구되는 감시에 관한 것은 프로젝트 실행자 와 유능한 부서의 책임을 명시하여 약속되어야 함.
 - 특별한 관심이 감시도구의 신뢰성에 주어져야 함.
 - 검사와 감시가 운영요원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함.

- 외부검사와 감시는 수원국의 관련 지역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이 좋음.

7. 공적원조를 위한 효율적인 조달 실시 방안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가. 투명성(Transparency)

1) 조달 규칙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수원국, 공급자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공적원조를 위한 일반적인 조달 규칙을 수립함.

2) 개별적인 공급계약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원조제공 시 적용하는 조달규칙과 구매 가능한 소스에 관해서 관련 수원국에게 알림.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격이 있는 국내의 공급업자에게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적용하는 구매 규칙에 관한 정보에 공평하고 적시의 접근이 허용되어야함.

나. 국제 경쟁입찰(Int 1 Competitive Bidding: ICB)

- 원칙: 회원국들은 그들의 조달정책과 양립되는 수준까지 국제 경쟁입찰의 확대된 활용 범위를 고려해야 함. 특히 회원국들은 국제경쟁입찰에 제공되는 협조융자나 다른 협조 재정계획을 수원국, 다른 공여국 혹은 국제재정기구가

개발하는데 격려해야하고, 또한 이와 같은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함.

다.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

- 원칙: 국제경쟁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조건부원조 조건하에서 국내경쟁입찰의 사용을 격려함. 회원국들은 NCB가 요구되고 적용되는 조건하에서 좀더 엄격한 조달절차를 수립하거나 혹은 좀더 자유로운 조달절차를 만들 수 있음. NCB의 입찰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잠재 공급업자, 내용, 입찰서류의 출판, 입찰심사 및 계약채결등에 관한 정보와 같은 최소한의 국제표준을 따라야함. 조달명세서는 가능한 많이 참여를 유도키위해 비제한적인 형태로 기술되어야 함. 적어도 3사람이상의 공급자가 참여해야함. 그러나 이보다 적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적절시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주어져야 함.

라. 기타 입찰 방법(Other Procurement Methods)

1) 비공식적인 경쟁

- 원칙: 공식적인 경쟁입찰이 규모가 적은 경우, 계속 혹은 아주 긴급한 경우에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경쟁이 가격, 질, 양도시기, 애프트 서비스와 다른 계약관련특징이 적어도 국내 표준비교시 경쟁성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가격제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을 극대화하기위해 회원국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첫째 가격이 위에 언급한 모든 다른 요소를 고려시 적절 함을 확인하여 돈의 가치를 보장함. 둘째, 잠재적인 유능한 공급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상업적인 실시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정 지원함. 셋째, 공급기회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제약, 또한 충분한 수의 공급업자에 의한 의미있는 경쟁을 허용하도록 널리 알려야함.

2) 직접협상

- 원칙: 공여국이나 수원국이 몇 명의 공급업자나 단 한명의 공급업자와의 직접적인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회원국들은 인정함. 이것은 상업적인 수입업자가 등록된 상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래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된 제품 공급이 계속되거나, 보충시 필요한 금액이 원 공급에 비해서 적을 경우, 원 공급이 끝난 후 즉시 재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품이나 예비품의 표준, 단지 한 개의 소스로부터 취득될 수 있는 특허품의 경우에 해당됨. 이때 좋은 상업적인 실시가 수반되어야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계약 요소인 질, 양도 시기 및 애프트 서비스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시 가격이 적절하도록 조치가 마련되어야함.

마. 제품심사(Inspection of Goods)

- 원칙: 회원국들은 구매절차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과 적시의 양도가 되는지 그리고 계약자에게 지불이 심사의 결과에 의존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그와 같은 심사를 위한 적절한 계약조치가 본 공급 계약들에 만들어져 있어야함.

바. 자국 내용규칙과 조건부 혹은 부분 비조건부 규칙의 신축적인 적용(Flexible Application of National Content Rules and of Rules of Origin Under Tied and Partially Untied Aid)

- 원칙: 원산지 규칙이나 최소한 국가 내용 규칙(National Content Rules)을 가진 회원국들은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예외사항을 고려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함.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공여국에서 조달 할 수 없거나, 조달가능하더라도 같은 제품을 다른 장소에서 구입시 필요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일 경우,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이 허용됨. 회원국들은 그들 원조의 수원국, 자격을 갖춘 공급자 및 다른 DAC회원에게 그들의 원산지 규정과 최소 국내 내용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것을 적용하는 기준에 관해 알게 하여야함. 회원국들은 또한 공급자들이 어떤 국별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

구사항을 신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사. 구매 능력과 수원국의 실행을 향상시킴(Improving Procurement and Practices of Recipients)

1) 구매표준의 최소치의 적용

- 원칙: 회원국들은 원조 수원국들이 경쟁입찰 절차의 최소 표준치를 적용하고 그리고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차에 관한 검토권한이 수원국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구매절차의 행정관련 사항에는, 회원국들은 적절하다면 구매자가 입찰 서류의 준비, 입찰 평가, 계약의 준비, 협상 그리고 계약체결에서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는 독립적인 자질있는 자문가나 구매담당자를 고용하기를 요청함.

2) 행정능력의 강화

- 원칙: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개도국에게 그들의 구매 실행과 제도를 향상시키는 범위를 찾아야함. 그리고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여야함.

참고: 효율적인 국제 경쟁입찰을 위한 최소의 조건
(Minimum Conditions for Effectiv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 ICB의 주요한 목적은 수원국이 돈에 대한 가치를 획득하

고, 수입업자가 객관적으로 수출업자들과 비교하는 방법처
를 잠재적인 수출업자에게 입찰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함. 구매절차가 효율적인 국제경쟁 입찰로 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최소 조건이 지켜져야 함.

1. 공고

- 입찰에의 참여는 가능한 한 적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공
고되어야 함. 최소한 자격을 갖춘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들
에게 제안된 조달에 관한 묘사와 자격있는 다른 국가의
명단을 알려주어야함. 또한 입찰서류를 구할 수 있는 장소
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함. 이와 같은 정보는 국제무역
상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개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원국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
는 출판물에도 홍보되어야함.

2. 계약자 규모

- 광범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는 입찰에 초대받은 개별
계약자 규모는 국제기준에서 입찰에 흥미를 끌 정도의 규
모가 되어야 함. 반면에 프로젝트가 특별한 성격을 지닌
계약자별로 차별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차별이 수원국에게
유리하고 광범위한 국제경쟁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프로젝트는 차별되어야함. 그러나 조달은 ICB를
피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의도적으로 분할되어서는 안됨.
엔지니어링, 제품별, 그리고 건설별로 단수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은 이로 인해 수원국에게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이점을 제공하면 바람직함.

3. 입찰자의 기자격

- 입찰에의 참여가 능력있는 공급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기위해 양측은 입찰자의 기자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함. 이것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작업이나 특별한 제품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야함. 기 자격은 동일한 업무, 인적자원, 제품 및 공장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상황 및 능력에 대한 과거의 실적 및 경험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전적으로 기초함.

4. 입찰서류

- 입찰서류는 국제무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 개 이상의 언어로 준비되어야 하며, 해야 할 업무, 공급할 제품과 서비스, 양도장소 및 서리에 관한 직무를 명확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입찰서류를 구입하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넘어서는 안됨. 기술적인 명세서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는 자유롭고 완전한 국제입찰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입찰 서류는 다음에 열거한 과정이 필요함.
 - 계약의 제안서를 마련함.
 - 제품준비물과 재료를 결정하는 국.내외 표준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
 - 표준범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준

비물과 재료에 대한 다른 표준의 수용범위에 관해 상세히 서술해야 함.

- 입찰이 명세서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충분치 못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의 입찰이 이를 증명하는 금액보다 더욱 예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
- 입찰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명시함. 여기에는 가격 뿐만 아니라 양도시기, 건설, 준비품의 능률성, 입찰자의 경험과 신뢰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됨. 이와 같은 요소들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하고, 입찰서류의 평가조항에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화폐가치로 표현되어야 함.
- 입찰시의 통화를 명시하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국내의 통화모두를 포함함. 그리고 비교를 위해 화폐의 기초단위로의 전환을 위한 절차도 명시함.
- 성과능력에 기초한 명세서를 포함. 상표명도 상과나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기위한 기술적인 명세서의 한 분야로써 사용될 수 있음. 만약 사용되는 경우에는, or equal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야 함.
- 자격이 있는 국가들을 명시함.
- 재정소스를 명시함.
- 입찰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입찰검토일도 명시함.

5. 입찰

- 입찰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모든 입찰 응찰자들이 그들의 입찰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규모 그리고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 모든 입찰은 입찰서류에 명시된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이 시간이후에 접수한 입찰은 비공개로 다시 돌려 보내야 함. 입찰자의 명단과 각 입찰에 명시된 가격은 크게 공표되고 기록되어야 함. 입찰서가 공개된 후 어떤 입찰자도 입찰가격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함. 입찰서의 내용이나 가격의 변경이 없는 설명은 수원국에서 요청되고 수용될 수 있음.

6. 입찰서의 평가와 비교

- 입찰의 평가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용어와 조건과 일치되어야 함. 평가는 기술적인 명세서에의 일치를 결정하기 위한, 그리고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요소들에 따른 화폐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과, 입찰서류에 명시된 계약용어와의 일치를 결정하는 분석을 포함해야 함. 산술적 또는 문자상의 실수와 같은 본 내용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실수는 허용될 수 있음.
- 입찰에 적혀있는 가격은 입찰서류에 명시된 상이한 화폐를 비교시 사용되는 공식을 통하여 비교되어야 함. 재료와 준비물을 공급하는 입찰의 비교는 수입에 따르는 일반적인 관세나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어야 함. 입찰 평가 및 비

교에 대한 보고서는 수원국이나 컨설턴트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최저 평가입찰의 결정 기준과 입찰자가 부적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함.

7. 계약체결

- 계약은 이전에 조항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평가입찰로 결정된 입찰자와 체결되어야 함. 이것은 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입찰에 성공한 입찰자는 체결의 조건으로 입찰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찰서류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에의 책임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음.

8.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고용

- 구매절차의 행정사항으로,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계약협상과 계약안 뿐만 아니라 계약시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고, 입찰서를 준비하고 입찰을 평가하기위한 유능한 독립적인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를 요청할 수 있음

8. 조건부 원조의 새로운 조치 (New Measures in the Field of Tied Aid)

가. OECD회원국들은 다음의 일반 원칙에 합의함.

- 수출신용차관과 원조신용차관을 위한 정책은 상호 보완되어야 함. 수출신용차관 정책은 공개 경쟁과 시장의 자율 기능에 기초해야 함. 원조신용차관은 시장 접근이 거의 되지 못하는 국가, 분야,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야 하고, 재정의 가치를 최대화하며,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며, 그리고 이 자원의 개발사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해야함.
- 회원국들은 공적원조가 87년에 제정된 DAC연합융자 (Associated Financing)와 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공적 원조에 관한 원칙 과 88년에 제정된 DAC 프로젝트심사 원칙 을 재확인함.
- 비조건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무역왜곡을 최소화 하며, 또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같은 원조를 격려하게끔 만드는 것과 같은 귀중한 역할에 대한 인정과,
- 원조액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얻고, 반면에 무역왜곡을 최소한 보장하기위한 방향으로 조건부원조를 관리함의 중요성을 인지함.
- 국제경쟁입찰이 원조액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역할상 이점을 강조함

나. 회원국들은 다음의 조치를 실시함

1) 큰 규모의 프로젝트 (Large Projects)

-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수출신용차관을 위한 지침에의 규칙, 정의 및 절차에 따라 80% 혹은 그 이상의 양허성을 가진 신용차관이나, 또는 SDR 50 million보다 높은 액수의 프로젝트의 경우 강제적인 자문을 위한 절차를 위한 규칙에 일치하는 신용차관을 제외하고는 SDR 50 million보다 큰 액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DAC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2) 상호심사

- 아래에 명시된 상호심사의 원칙은 모든 큰 규모에 대한 좋은 실습을 제공함. 그러나 이것은 원조와 무역 왜곡의 위험이 존재하는 조건부 원조성 신용차관에 특히 중요함.
- 회원국들은 큰 규모의 준비나 재정에 있어서 세계은행의 참여의 의미를 인지해야 함.
- 세계은행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흥미가 있는 공여국은 수원국 수준에서 적절한 접촉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세계은행과 수원국이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나 자원의 배분에 관한 대화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장하기위해 세계은행과 조정작업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함.
- 회원국들은 원조금액을 최종적으로 약속하기 전 프로젝트의 합동검토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준비와 심사작업에 대해 수원국과 다른 회원국과 조정하는 것에 합의함. 여기에

는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원칙과 이 원칙에 기초한 원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품질 점검표에 맞추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현장을 포함하여 세계은행과 수원국 그리고 회원국 사이에 협조를 촉진하는 절차를 개발해야함. 이 절차는 비조건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자금과의 조정을 보장해야함.

3) 적절한 재정 조건

- 흥미있는 공여국은 수원국 관련부처와 함께 관련 수원국의 경제 사정과 일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절한 재정 조건에 합의하기위해 서로 상의 해야함. 그러나 공여국들은 관련 국가에게 주어지는 원조에 대해 조건을 엄격하지 않도록 기대됨.

4) 국제 경쟁 입찰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증여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실행에 따라 국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수원국에 달려있음.
- 조건부 원조로 지원되는 계약은 재정조건을 고려하기 전에 가격과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낮게 평가된 입찰자와 체결해야 함. 그러나 재원이 아주 부족한 빈국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양허성 조건으로 재정을 고려해야함. 이때 체결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2번째 혹은 3번째인 공급자에게 혹은 가격 마진이 합리적인 곳에 줄 수 있음.

다. 조건부 원조 차관 제공시 한계점(Limitation on use of tied aid credits)

- 회원국들은 생산분야와 경제인프라 및 적절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러나 이 분야에의 프로젝트로는 시장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끔씩 적절하고 또한 중진국이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원조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좋음.
-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그리고 절차의 규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조건부 원조차관의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에 제약이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SDR 2 million이하거나 절차 규칙 및 정의에 따라 80% 이상의 양허율을 가진 프로젝트이거나 혹은 절차상 상호 합의된 경우는 제외됨.
 - 조건부 원조차관은 LLDC에의 차관을 제외하곤 시장이나 절차 조건으로 지원될 경우 상업적으로 조달 가능한 공적 혹은 사적 프로젝트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함.

이와 같은 원조자격의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는 재원이 가능하게 조달될 수 있는지?
- 다른 참여자와의 의사전달에 기초하여 프로젝트는 시장이나 Arrangement terms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인지?
- 위의 문답은 프로젝트가 원조 혹은 수출 신용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지에 관해 평가 받는 방법에 대해 묘사하고자 의도됨. 협의과정을 통해 수출신용과 원조기관을 위

해 두가지 부류의 프로젝트 사이에 선에 관한 사업전 지침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개발되기를 기대함.

-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및 20년 차관 융자의 자격이 없는 GNP 소득국가에는 조건부 원조차관이 제공되지 말아야 함. Arrangement rule and definitions에 따라 80% 이상의 양허성을 가진 차관이 이들 국가에 허용된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국제수지지원이나 사회분야, 환경, 좋은 정치 및 긴급성원조와 같은 프로젝트의 재원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
- DAC은 arrangement의 모든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리고 협의시 회원국들은 참가국과 협조할 것임.

라. 향후 과제(Further Work)

- 회원국들은 다음의 분야에 업무를 추구하는데 합의함.
 - Associated Financing과 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원조에 관한 DAC지침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회원국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 조건부 원조에 좀더 상세한 정의에 대한 작업실시 및 조건부 원조의 사용시 회원국의 실행을 감시
 - 비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원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의 및 구매결과를 포함한 회원국의 실행을 감시하고 비조건부 원조의 좀더 많은 사용에 관해 연구함.
 - 공적원조의 좋은 구매관행에 포함된 정의와 절차를 조화

하고 향상시킴

- Associated Financing을 포함하여 조건부원조를 위한 조건들에 많은 강조와 함께 회원국의 원조 조건 성과를 감시함.
- DAC은 93년 말까지 위에 언급한 분야에서 행하여진 진행에 관한 것을 축적함.

참고: 원조 프로젝트의 개발지향성에 대한 점검표(Check-List Development Quality of Aid-Financed Projects)

- 공적원조로 전체 혹은 부분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지향적인 품질을 보장하기위해 OECD/DAC에 의해 점검표가 개발되었음. 이는 다음의 원칙이나 지침에 포함된 것임.
 -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원칙(88)
 - Associated Financing과 비조건부 공적원조를 위한 DAC 지침(87)
 - 공적원조를 위한 좋은 구매 관행(86)
1. 수원국의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에의 프로젝트의 일관성
- 관련 프로젝트는 수원국의 중앙재무 및 기획담당 부처에서 이미 승인된 투자 및 공공지출프로그램의 일부분인가?
 - 관련 프로젝트는 국제 개발 재정담당 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 지는가?
 - 관련 프로젝트가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국제 개발 재정담당 기관이나 DAC 회원국에 의해 거부당한 근거가 있는가?

- 사적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수원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인지?
- 관련 프로젝트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에 진행되는 광범위한 원조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간 합의로 진행되는지?

2. 프로젝트 준비와 심사

- 관련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원칙과 일치하는 광범위한 표준이나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고, 고안되고 그리고 심사되었는지?

3. 프로젝트 심사의 적절한 원칙.

- 경제적 측면(조항 120에서 128까지)
- 기술적 측면(조항 112)
- 재정적 측면(조항 113에서 119까지)
- 제도적 평가(조항 130에서 134까지)
- 사회적 및 분배적 분석(조항 137에서 147까지)
- 환경적 평가(조항 145에서 147까지)

4. 구매 절차

- 다음 사항중에 어떤 구매형식이 사용되었는지?
 - 국제경쟁 입찰(조항 411과 419-429: 효율적인 국제경쟁 입찰의 최소 조건)
 - 국내경쟁 입찰(조항412)
 - 비공식적 경쟁이나 직접 협상(조항 413-414)
- 공급업자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했는지?

9. 개발원조의 평가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가. 도입(Introduction)

1) 공여국/수원국 파트너십

- 개발원조는 양측의 협조파트너십의 실천임. 개도국은 그들 자신의 개발에 책임지며 개발원조는 개도국 자체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음. 원조는 개도국이 최종적으로 책임과 소유의식을 지닌 활동을 지원함. 프로젝트의 성과는 양측에 의존함. 양측은 회소성의 공적자금의 최선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책임도 소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양측은 경험으로부터 배운 개발을 위한 자원사용의 향상과 정치권과 일반 국민에게 책임성을 위한 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
- 다음에 열거한 원칙은 원조기관들이 원조로 진행되는 활동을 평가를 위해 준비됨. 그러나 이 원칙들은 개도국 자신들이 원조관련 프로젝트의 자체 평가나 그리고 다른 공공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데 유용함.

나. 기타 원조관리 원칙의 결론과 보완성

- 이 원칙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료된 활동의 평가에 초점을 맞춤. 이것은 특히 DAC의 관리 원칙인 프로젝트

심사 원칙(88)이나 기술협력의 새로운 정향을 위한 원칙을 보완함. 이의 각각의 원칙은 사용되는 여러 구체적인 원조수단의 평가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한 원칙들은 원조관리 과정에서 원조평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다음에 있는 몇 가지 요점으로써 정리하여 제공됨.

- 원조기관들은 명확히 확립된 지침과 방법을 지닌, 그리고 명확한 역할정립, 책임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원조조직내의 위치를 지닌 상황에서 평가 정책을 지녀야 함.
- 평가 과정은 정책결정이나 원조의 제공 및 관리와는 독립되고 공정해야 함.
- 평가과정은 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 평가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되어야 함. 정책결정자나 사업실행자에게 결과가 환원되는 것은 필수적임.
- 원조평가에 있어서 양측의 파트너쉽은 필수적임. 이는 개도국의 제도구축과 원조조정의 중요한 측면이고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케 할 수 있음.
- 원조평가와 필수사항은 원조시작시 전체의 한부분이어야 함. 원조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실체확인인 객관적인 평가의 필수적 부분임.

1) 정의

- 원조는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 고안,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함. 이의 목적은 목표의 적절성과 달성, 개발능력, 효율성 및 영향, 그리고 지속성을 결정하기 위함. 평가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취득한 교훈이 양측의 정책결정 과정에 합쳐져야 함.

2) 평가의 목적(Purpose of Evaluation)

- 평가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한 교훈의 환류를 통해 미래의 원조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향상시킴
 - 대중들에게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책임성의 기초를 제공함.
- 실패와 성공의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가 생산됨. 개발 목표를 위한 자금은 필요성에 비교하여 너무 작고, 양측의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해 가능한 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함.
- 여기에 언급된 평가의 책임성의 개념은 개발결과와 개발 원조의 영향에 관계됨. 이것은 법적으로 회계시 공적자금의 사용을 위한 책임성, 감시기관에 부여된 책임성과는 다른 것임. 개발원조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함.
-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정책의 결점이나 양측의 정책의 엄격성, 부적절한 조정 및 구매와 같은 다른 관행사항의 효율성으로부터 결과되는 개발원조의 성공에의 제약요소를 인지시켜주는 것임.

- 평가는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레벨에서 상호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향상 시킴.
- 3) 공정성과 객관성(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 평가과정은 개발원조의 관리나 공여, 그리고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과정과는 기능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함.
 -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과 자료, 분석 및 결론유도에 있어서 편견을 회피함에 기여함. 독립성은 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결정자와 관리자가 그들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축소함.
 - 객관성과 독립성은 평가 프로그램의 기획, 목표조건의 구성, 평가팀의 선택과 승인을 포함한 평가의 전 단계에서 존재함. 평가의 독립성은 보고서가 저자의 이름으로 출판될 경우에는 더욱 이를 높일 수 있음.
- 4) 평가를 관리하는 제도적 조직
- 평가를 관리하는 제도적 조직은 효율적인 평가과정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조직측면은 이와 같은 필수사항을 나타내야함. 즉 정책, 평가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평가물을 향후 원조활동과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임.
 - 가끔 어떤 조직들은 위에서 언급된 필수사항을 희생하여 다른 필수사항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평가 사항과 정책결정사의 강한 연계를 약화시킴. 그러므로 모든 필수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추구되어야 함.

- 공정성과 객관성은 개발원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부서내 관리레벨에서 평가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음. 이것은 평가 보고를 책임지는 중앙 부서가 직접 원조담당기관장이나 그 조직의 이사회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 어떤 평가기능이 부서관리에 속해있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프로그램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중앙부서나 이를 책임지는 고위층에게 보고해야 함. 이와 같은 경우에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주어져야 함. 어떤 접근법이 결정되는지 상관없이 조직의 구성이나 절차는 평가자료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형성과 연결되는 것이 촉진되도록 행해져야함.
- 원조기관은 위에서 제기된 이슈를 감안하고, 결과의 배포를 포함한 평가과정의 공개를 강조하는 평가에 관한 정책을 필요로함.

5) 신뢰성(Credibility)

- 평가의 신뢰성은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평가과정의 투명성 정도에 의존함. 신뢰성은 평가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 수원국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약속을 조장하기위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 원조기관은 활동의 여러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의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과정의 투명성은 이의 신뢰성과 합법성에 절대적인 요소임. 이를 보장하기 위해
 - 전체 평가과정은 그 결과가 널리 알려지고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함.
 - 평가보고서는 결과와 권고를 분리해야 함. 평가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는 sources를 타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포함되어야 함.

6) 유용성(Usefulness)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는 적절하고 유용하게 인지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나타나야함. 또한 그 결과는 개발과정에 포함된 많은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함. 용이한 접근은 유용성에 필수적임. 평가과정 자체는 목표의 더 많은 명확성을 조장하고, 의사전달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증가하고 그리고 후속조치활동의 기반을 구축함.
- 평가는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한 시간에 활용가능토록 적시성이 있어야 함. 이것은 평가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실시동안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평가는 사후평가(ex-post exercise)만 해서는 안됨. 진행중인 활동이 감시는 운영직원의 책임임. 운영계획에서 독립적인 평가담당 직원에 의한 평가의 제공은 정기적인

감시의 중요한 보완기능을 수행함.

7) 양측의 참여(Participation of Donors and Recipients)

- 위에 언급한 파트너십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하다면 양측은 평가과정에 참여해야함. 평가시 발견사항은 양측에 모두 적절하기 때문에 평가목적은 양측의 주요쟁점을 취급해야하며, 평가는 관련 활동의 효과나 영향에 관한 서로의 관점을 반영해야함. 평가 하는 동안 공정성과 독립성의 원칙은 양측에 동등히 적용해야함. 참여와 공정성은 수원국이 사업 완료후 공여국이 철수한 이후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등 평가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
- 관련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의 관점과 전문성은 평가의 통합된 부분을 형성해야함.
- 사업 관여 당사자의 모든 참여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원국의 기술 및 능력의 강화를 달성하며, 제도적이고 관리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 훈련을 통해 조장될 수 있는 중요한 목표를 강화함.

8) 공여국간 협력(Donor Cooperation)

- 공여국 사이에 협력은 상호간 배우고 중복성을 피하는데 필수적임. 공여국간 협력은 또한 평가방법의 개발하고, 보고서나 정보를 공유하며, 평가 발견사항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진되어야함. 합동 공여국 평가는 서로간의 절차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고,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촉진되어야함. 합동평가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여국들은 체계적으로 실제로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평가계획을 교환해야함.

9) 평가 프로그램(Evaluation Programming)

- 전반적인 계획은 개발원조사업이 평가를 위해 원조기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함. 이와 같은 계획의 수립시 평가받는 많은 활동이 적절한 범주로 나누어져야함. 우선순위는 이 범주의 평가나 시간표를 위해 확정되어야함.
- 이 범주는 개발원조의 여러 분야를 대변함. 평가의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유형은 아마 프로젝트 혹은 제도적인 레벨임.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가 자체적으로 평가 발견사항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함. 필요한 것은 좀더 종합적인 범위에서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집합임. 평가프로그램은 고위관리층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주문을 고려해야 하며 습득한 교훈을 종합해야함.
- 평가능력은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활동 그리고 분야별, 주제별 및 범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광범위한 평가를 위해 필요함. 평가는 원조기관의 절차 및 관리등과 같은 이슈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관리상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로 필요함. 시간표는 평가계획시 포함되어야 함. 평가활동과 시간표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결정에 평가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함. 이를 통해 그들의 필요성이 고려

될 수 있음. 평가계획은 또한 고위층의 지원과 추인을 요구함.

- 이와 같이 하지않은 원조기관들은 평가과정을 위한 지침이나 표준을 만들어야함. 이를 통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실시나 보고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이 정의 될 수 있음.

10) 평가의 고안 및 실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aluations)

- 각각의 평가는 기획되어야 하며 다음을 위하여 목적이 세워져야함.
 - 발견사항의 접수자를 포함한 평가의 목적이나 범위를 정의
 - 평가시 사용된 방법을 묘사함.
 - 어떤 프로젝트/프로그램 성과가 평가되는 기준을 확립함
 - 평가를 완결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을 결정함.
- 평가의 목적은 설명되어야 함. 즉 원조정책, 절차 및 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거나, 특정 진행 활동의 계속여부를 고려하는데 필요함.
- 평가는 평가되는 활동을 정의해야 함. 즉 프로젝트, 제도, 분야 및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의 배경, 목표, 활동, 비용, 기대되는 영향 및 효과와 같은 것을 포함함.
- 평가시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평가의 이슈라고 언급됨. 이 이슈는 평가과정을 위한 관리틀을 제공하고 결론과 권고사항을 명확한 세트의 기초를 제공함. 다음은 평가이슈의 기본 집단임.

- 정당성: 이의 실시는 적절한가? 목표는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대안의 목표는 고려해야 하는가?
- 목표 달성: 달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거나 적절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방안이나 프로젝트 합의 및 적용계획이 만들어 지지 않는 한 평가는 매우 어려움. 본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혹은 달성가능성이 있는가?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는 명확히 정의되었는가? 혹은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계속 시도되어야 하는지?
- 영향 및 효과: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결과 무엇이 발생했는가? 이것은 직접적인 산출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다른 발전 지표에의 기본적인 영향과 효과를 포함함. 이 조사는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않는 결과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기초 정책환경이나 일반적인 경제 및 재정조건과 같은 외부요소에의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해야 함.
-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목적은 평가자들이 정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결론과 권고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 전반적인 결과: 이 사업은 성공여부? 이 사업의 영향이나 효과는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목표는 주어진 예산과 시간내에 달성될 수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가? 주요한 성과가 있는가?
 - 지속성: 이 사업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가에 대

한 질의는 매우 중요함.

- 대안: 이 결과를 달성하는 더 좋은 길이 없는가?

- 취득한 교훈: 일반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미래 프로그램을 실시시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 이 단계는 확인된 이슈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나 기술을 정의해야 함. 개발원조의 습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평가는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기술의 조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활동의 평가시 사용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 평가에도 활용되어야함.
- 많은 경우에 외부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 혹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결정하기가 힘들. 평가과정의 복잡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는 행하여져야함.

11) 보고, 배포 및 환류(Reporting, Dissemination and Feedback)

- 평가 보고는 가능한 한 기술용어를 배제하면서 명확해야 함. 그리고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함. 개요, 평가된 활동의 소개, 사용된 평가 방법의 묘사, 주요 발견사항, 취득한 교훈, 결론과 권고임.
- 평가의 발견사항과 결론은 평가를 위해 채택되고 또한 제기된 질문에 대한 해답임. 취득한 교훈과 권고는 평가결과와 향후 정책 및 프로그램 발전사이의 연계를 제공함.
- 체계적인 배포는 개발 원조 활동의 향상된 기획이나 실시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외에 여러

방법으로 배포될 수 있음. 즉 발견사항의 종합적인 면을 제공하는 연간보고서, 발견사항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개요 같은 것임.

- 환류는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활동간의 연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 평가 결과가 미래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모두가 참여하는 환류장치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 세미나 혹은 워크샵, 자동체제, 보고 및 후속 절차와 같은 조치를 의미함. 네트워킹이나 내부의사전 달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은 아이디어나 정보의 배포를 허용함.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환류과정에 담당직원과 예산 그리고 고위층이나 다른 참여자로부터 지원이 요구됨.
- 배포와 환류는 평가과정의 계속적이고 동적인 부분을 형성해야함.

12) 다른 원칙이나 후속조치의 적용(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Follow-up)

-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 위에 언급한 원칙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평가 정책이나 절차를 검토함. 또한 가능하다면 이 원칙들을 적용함.
 - DAC 원조심사 및 다른 관련된 DAC 업무의 부분으로 평가정책과 과정을 검토함.
 - 가능하다면 좋은 평가 지침서로서 관련 수원국의 협조하에 평가에 관한 원칙들을 제정함.

부록 3: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¹⁾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서 문

<목적 및 적용>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주요 목적은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약은 가장 유리한 공적지원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의 품질과 가격에 기초하여 OECD회원국 수출자들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추구한다.

협약은 재화 및 용역의 수출 또는 금융리스(즉, 실질적으로 판매계약과 소價인 리스)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지원되는 상환 기간 2년 이상의 수출신용에 적용된다. 협약은 또한 무역관련 타이드 및 부분언타이드 원조(이하 "타이드원조")의 형태로 공

1) 각국의 무분별한 혼합신용의 공여로 세계무역질서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혼합신용 및 조건부 원조자금을 규제해 왔다. 1992년 '헬싱키 패키지'까지 6차례의 규제가 있었고, 1997년 11월 "세어러 패키지"에 의해 최종 개정되었는데, 본 내용은 I장 협약의 범위와 ODA와 관련한 III장을 중심으로 번역게재한 것이다.

적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공적수출신용과 혼합하여 타이 드윈조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적지원은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금리차 지원, 원조자금(신용 및 증여), 수출신용보험 및 보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및 금리차 지원은 공적금융지원이라 한다.

협약은 공적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수출신용의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에는 최저 기준프리미엄, 신용기산점 이전에 지급되는 최저선수금, 최장상환기간, 공적 재정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최저이자율이 포함된다. 협약은 타이 드윈조의 제공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한다. 또한, 협약은 이러한 제한사항들에 대한 가능한 예외 및 위배시 취해야 할 절차와 함께 즉시통보 및 사전통보, 협의, 정보교환, 재검토 등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군수장비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박, 핵발전플랜트 및 항공기의 경우에는 특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최선의 노력>

협약은 지원가능한 가장 유리한 상환조건을 정하고 있다. 모든 참가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최장상환기간 및 조

건 등이 정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이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통적으로 어떤 무역 또는 산업부문의 경우 협약에서 허용되는 최상의 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을 수 있다.

참가국들은 그러한 관행적인 조건들을 계속해서 존중해야 하며, 그러한 관행적인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

<협약의 지위>

협약은 OECD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1978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OECD의 기본틀 내에서 발전되어 왔다. 협약은 참가국간의 "신사협정"이며, OECD 사무국의 행정지원을 받지만, OECD의 법규정은 아니다.

I 장 협약의 범위

1. 참가국

- a) 협약의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EU(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미국 등이다.

- b) 참가국은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의 경우, 기존 참가국들의 사전초청으로 참가국이 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협약은 상환기간(8조에 규정) 2년 이상인 재화 및 용역의 수출과 금융리스거래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적용된다. 이는 수출신용에 대한 공적지원이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금리차 지원, 보증 또는 보험 등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불문한다. 협약은 타이드윈조 형태의 공적지원에도 적용된다.

3. 특별부문에의 적용 및 배제

참가국들은 다음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a) 선박

협약은 「선박 수출신용 양해」(첨부 I)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어느 참가국이 동 양해를 적용받는 선박을 지원하고자 할 때(따라서, 이 협약에

따르지 않음), 그 조건이 협약에서 허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참가국들에게 그 조건을 49조의 통보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b) 핵발전 플랜트

이 협약을 적용하되, 협약을 보완하는 「핵발전 플랜트 수출신용 양해」(첨부Ⅱ)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양해상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협약은 핵발전 플랜트의 해체(즉, 핵발전 플랜트의 폐쇄 또는 철거)를 위한 공적지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c) 항공기

이 협약을 적용하되, 협약을 보완하는 「민간항공기 수출신용 양해」(첨부Ⅲ)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양해상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d) 적용배제

협약은 다음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공적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군수장비
- 농산품

4. 재검토

참가국들은 적어도 매년 이 협약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며, 협약의 규정내용은 82조~84조에 정해진 재검토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5. 탈퇴

협약의 효력은 무기한 지속되나, 어느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들 앞으로 OECD 온라인 정보시스템(OLIS), 텔렉스, 팩스 등 신속한 통신수단을 통해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다른 참가국들이 통보를 접수한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6. 점검

사무국은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III장 무역관련 원조에 대한 규정

30. 타이드원조에 대한 일반원칙

- a) 참가국들은 수출신용 및 타이드 원조간에 상호 보완적인 정책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합의하였다.

수출신용정책은 공개경쟁 및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 타이드원조정책은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부문 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부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타이드원조정책은 자금의 최적가치를 보장하고,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며, 개발측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 b) 타이드원조관련 규정은 다국간 또는 지역간 국제기구의 원조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이 원칙들은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의 질적성격에 대한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의견을 구속하지 않는다.

31. 타이드원조의 정의

- a) 타이드원조란 차관, 증여 또는 양허성 수준 0%를 초과하는 혼합금융 패키지로서 이 자금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실제로(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이 자금 공여국 또는 한정된 수의 국가들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 b) 이러한 정의는 "타이드 조건"이 ① 수혜국과 원조공여국간에 공식협정을 통하여 또는 어떠한 형태이건 비공식 양해를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② 또는 금융패키지에 수혜국 및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참가국들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는, 제32조에 열거된 수단들이 포함되었거나, ③ 또는 그 금융패키지에 DAC 나 참가국들이 타이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 이 포함된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 c) 특정 용자관행이 위에서 정의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조공여국은 이 원조가 사실상 "언타이드"임을-즉 그 원조자금이 실질적으로 모든 개도국 및 OECD 국가로부터의 재화와 용역구매에 완전히 자유로운 차관 또는 증여임을-입증하여야 한다.

32. 타이드원조의 유형

타이드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혼합금융, 타이드 및 부분적 언타이드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DAC지침(1987)"에서 정의한 공적개발원조(ODA) 차관
- "혼합금융, 타이드 및 부분적 언타이드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DAC지침(1987)"에서 정의한 ODA증여
- 증여와 차관은 포함하되 이 협약에 부합되는 공적수출신 용지원은 제외한 기타 공적자금(OOF)

-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상기 및 다음 형태중 두 가지 이상이 원조공여국, 대주 또는 차주에 의해 혼합되는 경우
-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접금융, 리파이낸싱, 이자율보조, 보증 또는 보험의 수단으로 공적지원되는 수출 신용
- 시장금리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타자금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선수금

33. 혼합금융(결합금융)

- a) 혼합금융에 의한 지원은 혼합신용, 혼합융자, 합동융자, 평행융자 또는 합성된 단독거래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혼합금융의 주요 특성은
 - 양허적 요소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상업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 금융패키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타이드원조이며,
 - 관련 상업자금의 차입이 양허성자금 도입의 조건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b) "사실상"의 혼합 또는 연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 수혜자와 공여당국간에 비공식 합의의 존재여부
 - 원조공여국이 ODA자금 공여를 통하여 금융패키지

도입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전체 패키지자금을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로 사실상 타이드시켰는지 여부
- ODA 자금의 타이드 상태와 개별융자 거래의 입찰 또는 계약방식, 또는
- 둘 이상의 자금 사이에 사실상의 연계가 있는 것으로 DAC나 참가국들이 확인한 여타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

c) 다음과 같은 관행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혼합 또는 연계로 간주한다.

- 한 계약의 각 부분을 따로 나누어 통보하는 계약의 경우
- 계약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용자되는 경우
- 한 계약의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 하나의 금융패키지 중 일부가 언타이드라는 이유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34. 타이드원조 적격대상국가

a) 1인당 GNP가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만기 조건의 차관을 수혜받을 수 없는 수준의 국가²⁾에 대해서는 타이드 원조자금을 공여할 수 없다. 세계은행은 동 차관 수혜가

2) 예컨대 1997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1인당 GNP가 \$3,125를 초과하는 국가

능국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수준을 매년 재조정한다. 어느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분류가 2년연속 불변인 경우에 한해 동국에 대한 타이드원조자금 수혜여부가 재조정된다.

b) 국별분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적용한다.

- 1) 협약목적상 국별분류는 세계은행이 차관수혜국 분류 목적상 산정하는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한다.
- 2) 세계은행이 1인당 GNP를 공표할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세계은행에 해당국의 추정 1인당 GNP가 현행 타이드원조 적격 분류기준 이상인지 또는 그에 미달하는지를 문의하여야 하며, 참가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국가는 이 추정치에 따라 분류된다.
- 3) 만일 어느 국가의 타이드원조 수혜자격이 위 a)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재분류는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른 당해국에 대한 결론이 사무국에 의해 모든 참가국에 통보된 후 2주가 경과한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수혜자격이 새로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분류 효력발생일 이전에 타이드 원조금융을 통보하여서는 안되며, 수혜자격을 상실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크레딧 라인 하에 지원되는 개별거래들은 동 크레딧 라인의 만료시까지 통보될 수 있다(단,

재분류 효력발생일 이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세계은행이 수치를 수정하는 경우, 이 협약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수치수정은 무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조 c), 72조 a), b), 73조 a), b), d), 74조, 75조 그리고 76조 a)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통방침을 통한 국별분류 수정은 가능하며, 사무국에서 처음으로 수치를 발표한 당해연도중에 수치상의 오기 및 누락이 발견된 경우 참가국들은 이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5) 타이드원조 수혜적격국 또는 부적격국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은 순수한 증여, 식량원조 및 인도적 원조 이외에는 타이드원조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참가국간 합의의 효력이 계속되는 한,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 OECD 각료회의는 1991년 6월 이러한 정책을 승인하였다.

35. 타이드원조 적격프로젝트

- a) 타이드원조가 시장금리조건이나 이 협약상의 조건으로 지원되어도 통상 상업적으로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프로젝트에 공여되어서는 안된다.
- b) 이러한 원조자금의 적격성 여부를 가늠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프로젝트가 금융면에서 실현불가능한 것이냐의 여부, 즉 이 프로젝트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적정가격에 기초하여 운영비용과 투입자본상환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가 여부, 또는
- 둘째, 다른 참가국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가 시장금리조건이나, 이 협약상의 조건으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c) 위 b)의 기준은 어떤 프로젝트가 타이드원조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금리 또는 이 협약조건에 의한 수출신용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서술하기 위함이다. 수출신용기관과 원조기관 모두를 위하여, 62조~65조에 의한 협의과정을 통해 향후 충분한 경험의 축적되어 상업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2가지 범주의 프로젝트의 구분을 좀더 분명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사전적 지침이 점차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36. 적격성규정에 대한 예외

- a) 33조에 기술된 혼합금융패키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타이드원조자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조 및 35조의 규정은 양허성 수준이 80% 이상인 타이드원조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33조에 기술된 혼합금융패키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타이드원조자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5조의 규정은 2백만 SDR 미만의 타이드원조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이 장의 규정들에 위배되는 지원은 71조~77조에 규정된 공통방침 절차를 통하여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가국은 40조 c) dp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34조 및 35조에 위배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d)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최빈국(LLDCs)에 대한 타이드원조자금의 경우에는 34조 및 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7. 타이드원조의 양허성수준에 관한 정의

타이드원조의 양허성수준은 DAC에서 사용하는 "증여요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무상증여의 경우 양허성수준은 100%이다. 차관의 경우 양허성수준은 '자금공여액의 명목가치'와 '차주에 의해 미래에 이행될 채무상환액의 할인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말한다. 이 차이는 이 차관의 명목가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38. 타이드원조의 양허성수준 계산

타이드원조의 양허성수준 계산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DAC에 의해 사용되는 Grant Element 계산방식에 따른다.

- a) 통화별로 차관의 양허성수준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 즉 차등할인률(DDR)은 매년 1월 15일에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평균 CIRR + 마진

마진(M)은 상환기간(R)에 따라 다음과 같다.

상환기간(R)	마진(M)
15년미만	0.75
15년이상 20년미만	1.00
20년이상 30년미만	1.15
30년이상	1.25

- 모든 통화에 대하여 평균 CIRR은 전년 8월 15일부터 당해년 2월 14일까지의 6개월 동안 통용된 CIRR의 월 평균치이다. 마진을 포함한 비율의 계산시 최근사치의 10bp 단위로 반올림한다. 해당통화의 CIRR이 2개 이상이면, 16조 b)에 규정된 상환기간이 최장인 CIRR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양허성수준 계산시 기준일자는 9조에 규정된 신용공여

기산일로 한다.

c) 혼합금융패키지의 전체적 양허성수준 계산시, 다음의 신용공여, 자금공여 및 선수금지급의 양허성수준은 0으로 간주된다.

- 이 협약에 부합되는 수출신용
- 시장금리 수준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타 자금
- 40조 a)에서 허용된 최저 양허성수준에 미달하는 기타 공적자금. 다만 매칭의 경우는 제외함.
- 구매자로부터의 선수금

선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신용공여 기산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양허성 수준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d) 매칭시의 적용할인율: 상대국의 원조자금 공여에 대한 매칭시, 동일한 조건의 매칭이란 상대국이 통보한 양허성 수준을 매칭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수준과 동일하게 매칭함을 의미한다.

e) 현지화비용 및 제3국 구매분도 원조공여국에서 지원된 경우에 한하여 양허성 수준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f) 패키지자금의 전체 양허성수준은 패키지 각 부분의 명목가치에 각각의 양허성 수준을 곱하여 얻어진 합계를 각 부분의 명목가치 합계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 g) 특정 원조자금의 할인율이란 그 통보시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다만 사후통보의 경우에는 원조자금의 지원조건이 확정된 때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차관공여 기간 중에 할인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 차관의 양허성 수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h)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계약통화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때 양허성 수준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동 변경 통지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된다. 다만 최초통지시에 변경통화가 적시되어 있고, 양허성수준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변경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I) 위 g)에도 불구하고, 원조성 크레딧 라인하의 개별거래에 대한 양허성수준 계산시 할인율은 동 크레딧 라인이 최초 통보된 시점의 할인율이 된다.

39. 타이드원조의 유효기간

- a) 참가국들은 타이드원조에 대하여 개별거래에 대한 금융, 원조약정서, 원조크레딧 라인 또는 유사한 협정을 불문하고 통지 후 2년을 초과하여 그 공여조건을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56조에 의해 통지하게 되어 있는 원조약정서, 원조 크레딧 라인, 또는 유사한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기산한다. 크레딧 라인을 연장할 경

우에는 이를 신규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하되, 통지 시 이 크레딧 라인은 기존라인의 연장이라는 것과 연장 통지시점에서 허용된 조건에 따라 갱신된다는 것을 언급하여야 한다.

개별거래에 대한 금융, 원조약정서, 원조 크레딧 라인 또는 유사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55조 및 56조에 의한 약정의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b) 특정국가가 세계은행의 17년 만기 조건의 차관 수혜자격을 최초로 상실했을 때, 기존 및 신규 타이드원조 약정서 및 크레딧 라인의 유효기간은 34조 b)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잠정재분류일 이후 1년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c) 이 같은 원조약정서 및 크레딧라인의 갱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34조 및 3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 국별분류 변경
- 협약규정의 변경

이러한 경우에는 38조에 규정된 할인율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40. 타이드원조에 대한 위배금지

- a)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타이드원조를 지원하여서는 안된다.
- 양허성수준이 35% 미만인 원조자금 또는 수혜국이 최빈국인 경우에는 50% 미만의 원조자금이거나
 - 36조에서 인정한 협약적용 면제경우외에, 34조에 규정된 적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원조자금
- b) 상기 a)의 첫 번째 항에도 불구하고 최저 양허성수준 제한은 58조 첫 번째 항에 규정된 기술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위 a)의 두 번째 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원조성자금 공여를 추진할 수 있다.]
- 71조~77조에 규정된 공통방침 절차
 - 62조 및 6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참가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특정 원조자금 공여의 정당성을 입증
 - 65조의 절차에 따른 OECD 사무총장앞 서신발송, 다만 참가국들은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드문 사안임을 인지해야 함.

41. 매칭

- a) 참가국은 55조 및 56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된 지원조건에 대응하여 매칭할 수 있다. 매칭은 상대방 지원조건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b) 참가국은 매칭을 함에 있어, 당초의 상대방 지원조건이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상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른 참가국이 통보한 지원조건에 대응하여 매칭을 하려는 참가국은 60조 또는 61조 중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c) 비참가국이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매칭을 하고자 하는 참가국은 5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록 4: OECD/DAC회원국의 원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원조심사 절차

가. 목표

- DAC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의 효율성, 사업실시에 있어서 투입, 산출,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
-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원조성과의 고양
- DAC회원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원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원조에 대한 경험의 공유 및 조정역할 수행

나. 회원국의 원조심사방법

- DAC가 설정한 광범위한 전략과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이 실제로 준수하는지 여부
- 원조정책중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함
- 타원조정책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 분석
-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출판

다. 심사의 3대 기본Guideline

-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89)
- 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

(95 High Level Meeting)○ Shaping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96 HLM)

라. 비망록(Memorandum) 작성시기

- 통계관련 설문지를 OECD에 송부하는 시기: 매년 4/15 까지
- 원조심사를 하기위한 비망록작성시기: 매년 7/15까지
- 각종 통계 지표
 - 공적 분야: 7/15까지
 - 민간 분야: 9/15까지

라. 원조심사 실시관련사항

- 원조심사대상국은 일년에 7개국으로 제한. 한 국가의 원조심사는3년에 한번씩 실시
- DAC사무국은 심사대상국과 상의하여 원조심사를 위해 다른 2개 회원국을 심사위원국으로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사무국은 매년 심사시 대상심사위원국을 다른나라로 교체함

마. 심사를 위한 기본자료

- DAC회원국의 비망록(심사대상국이 DCD에 제출하는 Annual Report로 대치가능)
- DAC회원국의 원조관련 각종 통계자료
- 사무국의 심사대상국의 원조심사관련 보고서(Draft)
- 주요이슈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서

바. 자료제출 방법

- 위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각종통계자료는 심사실시 30일 전에 제출되어야함
- 심사 담당국가의 담당자들은 Main Issue Paper를 포함하여 심사자료를 준비하기위해 DCD 사무국과 밀접한 접촉과 협조를 실시
- 심사담당자들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대상국을 방문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심사대상국이 원조를 수행하는 수원국을 방문하여 조사

아. 원조심사 본회의 절차

- DAC의 의장이 회의개최를 선언
- 심사대상국의 대표단장이 자국의 원조관련 중요사항 및 진전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언급한 내용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견해 표명
- 심사담당자들이 주요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시작
- 심사담당자, 사무국 그리고 심사대상국은 상호 의견교환 및 질의실시
- 심사 결론을 도출시에는 의장은 심사과정을 통해 선택된 주요쟁점들을 Summary하고 언론에 공개할 자료를 작성
- 심사대상국, 심사담당국 그리고 사무국관련자들은 회의 직후에 개요와 결론을 도출하기위해 그리고 내용에 대한 수정시간을 가짐

- 수정된 개요와 결론은 DAC에서 의결을 받기위해 회원국에 배포됨
- 최종결과 보고서는 DAC의 최종결론, 개요 그리고 사무국의 보고서 그리고 언론배포서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출판함
- DAC의장은 이 보고사가 출판된후 6개월내에 심사대상국을 방문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해 조사함

2. 심사 기준

가.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 기본정책들과 새로운 정책방향
 - 주요지침
 - 새로운 진행사항이나 접근
 -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주요한 변화사항
 - 정책심사, 백서 혹은 전략적변화
 - 주요한 정책논의사항
- DAC의 guideline 준수여부
 - DAC Shaping 21st Century(96)
 - Development Partnership (95)
 - Principle for Effective Aid (92)- Guideline on Aid and En vt (92-96)의 준수여부와 이들이 심사대상국의 원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파악

나. 수원국의 능력배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제

- 민간섹터의 발전과 적절한 재정정책을 가진 경제정책의 채택여부
- 2015년까지 세계 빈민층의 반을 경감하고자 노력하는 자세
- 기초교육, 기초보건, 그리고 건강출산등을 포함한 사회 개발분야
- 사회불균형을 제거하기위한 여성의 개발참여정도
- 인권과 법치를 포함한 선한 통치여부
- 2005년과 2015년으로 설정한 지속적 환경 목표준수
- 군사비지출을 제한하고 잠재적분쟁의 원인규명 및 평화유지를 위한 지역협력여부

다. 원조조정, 개발전략과 국별원조계획실시

- 원조조정관련 계획이나 자료교환실시
- 수원국과의 원조정책대화
- 원조조정이나 프로그램의 기본절차의 준수여부
- 국별원조계획 실시여부
- 국별원조계획과 광범위한 원조조정노력과의 연계
- 원조조정시 수원국에 파견된 직원의 능력

라. 원조능률, 효과 및 결과

- 원조평가지 DAC의 원칙 준수여부
- 평가실시를 위한 정책틀
- 평가내용의 활용정도
- 평가담당부서의 예산 및 직원수

- 원조실시기관자체의 평가실시능력보유
- 평가시 그 결과의 공개여부와 평가시 독립성, 투명성 및 신뢰성여부
- 평가시 또는 평가결과에 대한 수원국의 역할
- 원조관련 결과보고서 및 국별, 분야별 평가

마. 원조관리분야

- 원조관리, 제도, 조직, 예산 그리고 직원에 관한 사항
- 원조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제초치들(절차, 지침,신축성, 직원의 전문성)
- 국제긴급재난발생시 조치사항
- 예산사용시 신축성과 재원의 이동사항
- 현장중심의 원조실시(권한위임)
- 원조의 일치성(coherence)을 고양하기위한 원조담당부처간의 조정능력

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정책의 적합성과 일치성

- 일치성을 분석하기위한 제도, 절차, 과정의 설치여부
- 무역, 부채, 투자정책에 있어서 수원국에게 긍정적, 부정적요소의 규명, 또한 국방, 이민, 환경, 은행의 비밀유지, 돈세탁여부를 포함하는 외교정책
- 부채, 무역, 국방, GSP에의 적용여부, 농업정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일치성과 관련된 제안이나 조치

사. 여론, 정보 그리고 원조에 관한 국민교육

- 개발원조에 관한 여론조사 및 이에 대한 공여국의 국민여론 및 의회의 의견
- 구소련공화국 및 동구유럽원조에 대한 국민여론
- 원조목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고양을 위한 제조치
- 원조관련 정보체계 및 이에 관련된 자원, 직원
- 개발원조에 관한 교육, 원조규모 및 개발우선순위 사이의 연계여부

3. 기본자료(Basic Profile)

가. ODA 규모와 현황

- ODA에 관한 약속과 실제공여에 관한 경향
- 양자간/다자간 비율
- ODA공여전망, GNP대비 ODA규모, 그리고 ODA목표
- 예산실행계획
- ODA규모에 있어서 CEECs/NIS에 대한 비중

나. Aid Reporting(원조보고 및 재정관련)

- 원조통계 지침 준수여부
- 원조규모의 제공조건과 개념정의에 관한 DAC의 권고에 기초한 재정수준

다. 원조의 구성 및 원조의 분야별

- 원조구성(양자간, 다자간, 기술 및 현금공여, 분야별원조, 국제수지원조, 상업원조, 식량원조, 재난구호원조, 지역협력, 그리고 분야별 경향)의 발전
- 특정이슈(WID,환경, 인구)에의 원조
- 전략적 목표와 원조의 분야별 배분과의 일치성

라. 다자간 원조

- 전략적 협력목표에 관한 다자간 원조관련
-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 다자간 개발은행(MDBs), UN Programme 에 대한 정부내의 다자간 원조 부처사이의 구성
- 제도적 비교우위분야에의 평가절차
- 다자간원조기관에 대한 기여, 현금공여, 또한 연성자금에의 replendishment, 혹은 다른 절차

마. 부채탕감

- 부채탕감에 대한 정책
- 최근의 ODA부채탕감에 관한 적용
- 수원국의 부채를 경감하기위한 다른조치들

바. 국별원조배분

- 지역별원조의 배분에 관한 정책
- 원조집중공여지역
- 지역별 배분을 위한 기획과정

사. 기술협력

- 기술협력실시에 있어서 DAC의 새로운 정향
- 기술협력에 있어서 정책 및 실시
-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직원, 범주와 지역별 관련 숫자
- 제도구축 및 능력배양에의 전환
- 공여국내 혹은 제 3국의 전문가 활용여부
- 기술협력에 있어서 민간 분야에의 참여여부
- 조건부정도

아. 조건부원조와 Associated Finance

- 조건부와 비조건부원조실시에 있어서 정책, 실시지침, 그리고 경향
- Associated Finance를 위한 제도적 구성
- 조건부원조와 Associated Finance의 지리적 배분

자. 조달정책

- DAC의 적절한 조달지침에의 적용여부를 포함한 조달정책, 실시 그리고 경향
- 조달이 공여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차. NGO

- NGO와의 협조재정(Co-financing)을 위한 양태, 정책 그리고 기준
- 수원국NGO와의 협조
- NGO를 ODA의 원조실시수단으로 활용정도